

# 신흥국의 세정연구

## 싱가포르

2020. 12.



· 연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박하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서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변정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경헌

· 책임의 면제(Disclaimer):

각 국가의 세정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 되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보고서는 각국의 세정을 이해 하는 최소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최신 세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의 법령·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합니다.

# 목 차

<b>제1장 총론</b> .....	<b>3</b>
I.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3
1.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3
II. 조세제도.....	7
1. 역사적 배경.....	7
2. 조세체계.....	9
3. 과세권자.....	10
4. 조세법의 규범체계.....	11
5. 세무행정.....	13
<b>제2장 주요 세법</b> .....	<b>21</b>
I. 법인소득세.....	21
1. 서론.....	21
2. 납세의무자.....	21
3. 과세가능 소득.....	22
4. 조세혜택.....	50
5.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56
6. 신고와 납부.....	61
7. 원천징수 의무.....	68
II. 개인소득세.....	78
1. 서론.....	78
2. 납세의무자.....	78
3. 과세대상 소득.....	79

4.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85
5.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	92
6. 신고·납부 및 징수체계.....	94
III. 국제조세.....	104
1. 국제조세의 체계.....	104
2.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104
3. 조세조약의 적용.....	116
IV. 소비세.....	122
1. GST 개관.....	122
2. 납세의무자.....	122
3. 과세대상 거래.....	122
4. 과세표준 및 세율.....	126
5. 영세율 및 면세.....	127
6. 산출세액.....	128
7. 신고·납부.....	131
8. 환급.....	131
9.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132
10. 특례제도.....	135
V. 기타 조세.....	150
1. 개별소비세.....	150
2. 재산세.....	151
3. 인지세.....	155
4. 오락 관련세.....	161

# 목 차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167
I. 외국인 투자정책.....	167
1. 외국인 투자 환경 및 혜택.....	167
2. 투자 진출 형태 및 절차.....	173
II. 진출 확대 방안.....	175
1. 시장 및 소비자 특성.....	175
2. 싱가포르 시장 분석 및 전략 도출.....	178
3. 유관기관.....	182
참고문헌.....	183

## 표 목차

### 제1장 총론

〈표 I-1〉 국세청 조직 및 조세제도 변화.....	8
〈표 I-2〉 싱가포르 주요 세법(의회입법).....	12
〈표 I-3〉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	13
〈표 I-4〉 부가가치세법 주요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	14

### 제2장 주요 세법

〈표 II-1〉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과정.....	23
〈표 II-2〉 과세소득의 유형.....	24
〈표 II-3〉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	26
〈표 II-4〉 시설, 기계장치 항목 및 내용연수.....	40
〈표 II-5〉 소득세법상 조세혜택제도.....	50
〈표 II-6〉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과정.....	56
〈표 II-7〉 싱가포르 과세연도별 법인세율.....	59
〈표 II-8〉 싱가포르 법인세 환급률.....	61
〈표 II-9〉 과세기간 및 부과연도 예시.....	62
〈표 II-10〉 과세기간에 따른 예상과세소득 신고기한.....	63
〈표 II-11〉 예정과세소득 신고일에 따른 분할납부 혜택.....	64
〈표 II-12〉 법인세 신고 유형.....	66
〈표 II-13〉 근로소득 관련 공제 가능 필요경비.....	86
〈표 II-14〉 임대소득 관련 공제 가능 필요경비.....	88
〈표 II-15〉 소득공제 종류 및 내용.....	89

# 목 차

〈표 II-16〉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92
〈표 II-17〉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93
〈표 II-18〉 세금 평가연도별 특별 세액공제(2015~2019년).....	94
〈표 II-19〉 과세기간 및 신고 기한.....	96
〈표 II-20〉 싱가포르의 세금 납부 및 결제 수단.....	98
〈표 II-2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8
〈표 II-22〉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13
〈표 II-23〉 조세조약 체결 국가 현황.....	116
〈표 II-24〉 싱가포르 - 한국 간 조세조약 주요내용.....	120
〈표 II-25〉 개별소비세 품목별 세율.....	150
〈표 II-26〉 주거용 부동산의 특례세율.....	153
〈표 II-27〉 저당권 유형에 따른 인지세율.....	156
〈표 II-28〉 매수인 구분에 따른 ADSD 세율.....	158
〈표 II-29〉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160
〈표 II-30〉 도박 유형별 도박세 산출 방법.....	162
〈표 II-31〉 도박 유형별 신고납부기한.....	162

##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표 III-1〉 국내기업 진출 시 유의사항.....	177
〈표 III-2〉 싱가포르 시장 SWOT 분석.....	178
〈표 III-3〉 유관기관 연락처.....	182

## 그림 목차

### 제1장 총론

[그림 I-1] 세무조사 과정..... 15

### 제2장 주요 세법

[그림 II-1] 시설 및 기계장치 관련 비용 처리방법..... 39  
[그림 II-2] 그룹 간 공제 신청서(Form GR-A)(손실이전법인용)..... 48  
[그림 II-3] 그룹 간 공제 신청서(Form GR-B)(손실청구법인용)..... 49  
[그림 II-4] 법인세 신고 일정(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인 경우)..... 62  
[그림 II-5] 싱가포르 세금 청구서(NOА) 예시..... 95



# 제1장 총론

- I.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 II. 조세제도



# 제1장 | 총론

## I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 1.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 가. 경제 환경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허브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섬나라로, 719.1㎢로 좁은 국토 면적에 568만명의 적은 인구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이다.<sup>1)</sup> 그러나, 일찍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중개무역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 및 낮은 사업 규제를 통하여 싱가포르는 전 세계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 현재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92,081백만달러로 세계 5위이며,<sup>2)</sup> 1인당 명목 GDP는 63,987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Moody's, Standard & Poor's, Fitch로부터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AAA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sup>3)</sup>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는 매년 3~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0.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sup>4)</sup>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7~-5%)이 예측되고 있다.<sup>5)</sup>

싱가포르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도시 국가의 특성상 1차 산업의 비중은 낮고 서비스

1)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Population, <https://www.singstat.gov.sg/publications/reference/ebook/population/population>, 검색일자: 2020. 10. 22.

2) KOTRA, 국가·지역정보 - 경제지표,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06>, 검색일자: 2020. 10. 7.;

KOTRA, 국가·지역정보 - 외국인직접투자,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15>, 검색일자: 2020. 10. 7.

3) 국제금융센터, 신용등급 - 장기외화(국가), <http://www.kcif.or.kr/front/data/interCredict.do>, 검색일자: 2020. 10. 22.

4) IMF, Country Data - Singapore, <https://www.imf.org/en/Countries/SGP#countrydata>, 검색일자: 2020. 10. 7.

5)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Narrows 2020 GDP Growth Forecast to “-7.0 to -5.0 Per Cent”,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news/gdp2q\\_2020.pdf](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news/gdp2q_2020.pdf), 검색일자: 2020. 10. 21.

산업의 비중이 높다. 총명목 GDP 중의 70%가 서비스 산업에서 기인하며,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은 금융·보험업과 기업서비스업으로 총명목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균형된 산업구조를 이루기 위하여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제조산업(석유화학, 전자, 바이오메디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sup>6)</sup> 2019년 현재 제조업은 총명목 GDP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IT 및 핀테크 산업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변혁프로그램(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주요 23개 산업을 6개 부문으로 묶어 산업 간 협력 및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현재 싱가포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수는 273,100개로,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2만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들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는 463억싱가포르달러로, 부가가치의 44%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다.<sup>8)</sup>

#### 나. 사회 환경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만큼 민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법제도가 매우 엄격한 편이며, 공휴일도 각 민족의 문화 및 종교 행사를 기념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 등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싱가포르의 인종 비율은 중국계 76%, 말레이계 15%, 인도계 7.5%, 그 외 인종 1.5%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는 의원내각제로 국가 원수(대통령)와 정부 수반(총리)이 구분되어 있다. 1965년 건국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이 제1당으로

6) EDB, Advanced Manufacturing, <https://www.edb.gov.sg/en/our-industries/industries-and-key-activities/advanced-manufacturing.html>, 검색일자: 2020. 10. 22.

7)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Downgrades 2020 GDP Growth Forecast to “-7.0 to -4.0 Per Cent”, [https://www.mti.gov.sg/Newsroom/Press-Releases/2020/05/MTI-Downgrades-2020-GDP-Growth-Forecast-to-7\\_0-to-4\\_0-Per-Cent](https://www.mti.gov.sg/Newsroom/Press-Releases/2020/05/MTI-Downgrades-2020-GDP-Growth-Forecast-to-7_0-to-4_0-Per-Cent), 검색일자: 2020. 10. 22.

8)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Economy, [https://www.singstat.gov.sg/modules/infographics/-/media/Files/visualising\\_data/infographics/Economy/singapore-economy15072020.pdf](https://www.singstat.gov.sg/modules/infographics/-/media/Files/visualising_data/infographics/Economy/singapore-economy15072020.pdf), 검색일자: 2020. 10. 7.

9) Singapore Government, What are the racial proportions among Singapore citizens?, <https://www.gov.sg/article/what-are-the-racial-proportions-among-singapore-citizens>, 검색일자: 2020. 10. 22.

서 장기 집권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초대 총리인 리관유(Lee Kuan Yew)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시점인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였고, 2대 총리인 고촉통(Goh Chok Tong)은 14년, 3대 총리인 리셴룽(Lee Hsien Loong)은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집권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은 할리마 야콥(Halimah binti Yacob)으로, 2017년 9월 선출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해오고 있다.<sup>10)</sup>

싱가포르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토지의 80%가 국유지이고, 국민의 82%는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 HDB)에서 건설한 공공주택에 거주한다.<sup>11)</sup> 즉, 싱가포르 내 민간주택의 비율은 18% 정도로 민간주택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는 1960년대부터 주택개발청(HDB)의 자가소유촉진정책(Home Ownership Scheme)을 통하여 토지를 국유화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싱가포르 국민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90%에 달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99년 동안의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장기임대 형식으로, 99년 이후에는 국가에 다시 반환된다.<sup>12)</sup>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 사회적 안전장치를 책임지는 자립형 사회보장제도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럽형 국가와는 상반된 제도로 국가의 공적 부조는 결혼 가정 및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국민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은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종합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임금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후, 의료서비스, 주택 마련 등의 사회안전망을 각자의 저축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sup>13)</sup>

10)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2019 싱가포르 개황(정치 정세 및 동향),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1231045625607.pdf&rs=/viewer/result/202010>, 검색일자: 2020. 10. 21.

11)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주택 제도,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30/view.do?seq=1141791](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30/view.do?seq=1141791), 검색일자: 2020. 10. 22.

12)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경제 - 주택정책: 모든 가정에 자기 집을,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920513](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920513), 검색일자: 2020. 10. 21.

13) 주 싱가포르 대사관, 2019 싱가포르 개황(사회·문화·교육),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1231054819065.pdf&rs=/viewer/result/202010>, 검색일자: 2020. 10. 22.

다. 진출 규모<sup>14)</sup>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7,370억싱가포르달러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금융·보험(9,280억싱가포르달러), 도소매업(2,720억싱가포르달러), 제조(2,220억싱가포르달러), 과학·기술 및 기업서비스(1,750억싱가포르달러) 등이다. 싱가포르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8,580억싱가포르달러이다. 싱가포르의 상위 5개 투자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영국으로, 금융·보험(4,010억싱가포르달러), 제조(1,740억싱가포르달러), 도소매업(700억싱가포르달러), 부동산(690억싱가포르달러), 정보통신(390억싱가포르달러) 분야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싱가포르 투자 규모는 2019년 현재 30억 3천만달러로,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업(9억 8천만달러), 제조업(7억 2천만달러), 부동산업(3억 9천만달러), 도·소매업(3억 5천만달러)이다.<sup>15)</sup> 싱가포르 또한 한국의 상위 4위 투자국으로 싱가포르의 대(對)한국 투자는 국부펀드인 Temasek과 GIC 및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등이 주축을 이루며, 총투자 규모 중 97.3%가 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한국은 싱가포르의 상위 9위 수출국이자, 상위 7위의 수입국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상위 8위 수출국이자 상위 7위 수입국으로 긴밀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중동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최대 해외건설 시장으로, 2018년까지 355건의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다수의 싱가포르 주요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4) 주 싱가포르 대사관, 2019 싱가포르 개황(우리나라와의 관계),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1231052746619.pdf&rs=/viewer/result/202010>, 검색일자: 2020. 10. 7.;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Direct Investment,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visualising\\_data/infographics/trade\\_and\\_investment/singapore-direct-investment.pdf](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visualising_data/infographics/trade_and_investment/singapore-direct-investment.pdf), 검색일자: 2020. 10. 21.

15) KOTRA, 국가·지역정보 - 한국기업 투자,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16&area=1#area1>, 검색일자: 2020. 10. 7.

## II 조세제도

### 1. 역사적 배경

#### 가. 조세제도의 변화<sup>16)</sup>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싱가포르의 소득세는 다수의 반발로 폐지되었으나, 추가적인 세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국 통치하에 있던 1947년 소득세가 재도입되었다. 1948년에는 영국의 '1922년 식민 영토 소득세 조례(Model Colonial Territories Income Tax Ordinance 1922)'에 기초한 소득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세법은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의 세법과 공통된 역사적 근간을 지닌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과 동시에 급속한 산업화 정책 및 수출 지향적 사업 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여, 세계 혜택을 통해 노동 집약적 산업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에는 '경기확장촉진법(The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이 도입되었으며, 이 법령을 통해 기업의 수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 90%의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국내 기업에 실행된 외국계 은행의 대출에 대한 이자에는 면세가 적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서비스 분야를 강조하며 1973년부터 아시아달러채(Asian Dollar Bonds)<sup>17)</sup>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는 등 금융 부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루어졌다. 해운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선박 운항 및 현장 수입은 세금 면제를 받았으며, 도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조치가 도입되어 공적자금 기부금 공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보다 비즈니스 경쟁력이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인하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초점을 두어 1994년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를 도입하였다. GST는 금융 서비스와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싱가포르에서 공급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기반의 조세제도

16) Hawksford - Guide Me Singapore, "Singapore Tax System & Tax Rates," <https://www.guidemesingapore.com/business-guides/taxation-and-accounting/introduction-to-taxation/singapore-tax-system-and-tax-rates>, 검색일자: 2020. 7. 1.

17) 싱가포르 정부당국에 의해 인가를 받은 채권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이 어느 나라 통화에 의해 발행되는냐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 중 하나이다. 공모발행의 경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싱가포르 달러화 표시 채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를 마련하면서 인구 고령화 등 경제 상황의 불리한 변화에 대한 세수 취약성을 줄이고 싱가포르 재정의 탄력성을 강화하였다.<sup>18)</sup> 또한 이 시기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 및 투자 유치 목적의 조치들이 취해져 소득세 세율은 한층 더 낮아져 법인세 도입 초기 40%이던 세율이 17%까지 인하되었으며, Group Relief System과 단일 세율의 법인세 제도가 정착되었다.

#### 나. 국세청 조직의 변화<sup>19)</sup>

싱가포르는 1947년 제정된 소득세 조례를 관리하기 위해 소득세 부서를 설립하였으며, 실제적인 세금의 조사 및 평가는 1948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첫 해 평가에서 약 4만건의 개인 세금신고와 1,000건의 기업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948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SGD 3,320만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1959년 6월 새 헌법에 의해 영국 통치하의 자치령이 된 후 1960년에는 국세청 격의 정부 부처인 IRD(Internal Revenue Development)가 설립되었다.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에는 소득세법<sup>20)</sup>이 크게 개정되었으며, 1970년까지 국세청 관할 법령은 12개까지 증가하였다. 이처럼 IRD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납세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2년 9월 1일 재무부 산하에 IRAS(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D)를 설립하고 IRD의 기능이 해당 부처에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표 I-1〉 국세청 조직 및 조세제도 변화

연도	도입 및 변경 <sup>1)</sup> 내용
1947년	소득세 조례 통과
1960년	단독 기관인 IRD(Internal Revenue Development) 설치 인지세, 상속세, 베팅세 관리 업무 이전
1961년	재산세 관리 업무 이전
1965년	급여세(Payroll Tax) 시행 및 관리

18) Histroy SG, "Introduction of the Goods and Service Tax," <https://eresources.nlb.gov.sg/history/events/c5594d45-4948-4080-a6fb-5175eb8d83c3>, 검색일자: 2020. 7. 1.

19)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About-Us/Our-Organisation/History-and-Milestones>, 검색일자: 2020. 7. 1.

20) 개정된 소득세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표 I-1〉의 계속

연도	도입 및 변경1 내용
1992년	IRD 법정 이사회로 전환 및 IRAS로 명칭 변경
1994년	부가가치세(GST) 도입
1998년	TV 수신료 징수
2008년	상속세 폐지(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자부터)
2010년	카지노세 시행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istory and Milestones," <https://www.iras.gov.sg/irashome/About-Us/Our-Organisation/History-and-Milestones>, 검색일자: 2020. 7. 1.

## 2. 조세체계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므로 지방세 없이 국세로 일원화된 조세 체계를 가지며, 2018/19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부 운영 수입의 71.7%를 조세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부과되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sup>21)</sup>

- ① 소득세(Income Tax):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됨
- ② 재산세(Property Tax): 재산의 예상 임대 가치에 따라 재산 보유자에게 부과됨
- ③ 상속세(Estate Duty): 고인의 순자산 가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며,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폐지됨
- ④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es): 수입세 외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 및 도로 혼잡 억제 목적으로 부과됨
- ⑤ 관세 및 특별소비세(Customs and Excise Duties): 특별소비세는 주로 담배와 주류, 석유제품에 대해 부과되며, 관세는 자동차, 담배, 주류 및 석유 제품에 부과됨(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이므로 수입세와 특별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⑥ 부가가치세(Goods & Services Tax, GST):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과됨
- ⑦ 베팅세(Betting Taxes): 사설 복권, 베팅 및 추첨 등의 수익에 부과됨
- ⑧ 카지노세(Casino Taxes): 카지노의 총게임 수익에 부과됨
- ⑨ 인지세(Stamp Duties): 주식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상업 및 법적 문서에 적용됨
- ⑩ 기타: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톤세(tonnage tax), 수자원 절약 및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됨

21) 싱가포르 국세청, "The Singapore Tax System," <https://www.iras.gov.sg/irashome/About-Us/Taxes-in-Singapore/The-Singapore-Tax-System>, 검색일자: 2020. 7. 20.

### 3. 과세권자

#### 가.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

싱가포르에서는 IRAS가 우리나라의 국세청 역할을 담당하며,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GST), 인지세, 베팅세, 상속세<sup>22)</sup>를 징수하고 관리한다.

##### 1) 국세청의 구성<sup>23)</sup>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법정 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며, 1인의 의장과 재무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국세청의 권한 및 기능

싱가포르 국세청은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GST), 인지세, 베팅세, 상속세<sup>24)</sup>의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이러한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법정 기관에 연락하고 조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국제적인 조세 문제에 있어 싱가포르 정부를 대변한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 담당자나 상속세 위원이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발급하고,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 및 법정 기관에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한다. 국세청법 제6조에 규정된 권한 외에도 타 법에 규정된 권한 및 기능을 이행할 수도 있으며, 장관이 부여하는 기타 기능 역시 수행한다.<sup>25)</sup>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세청은 상기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일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과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독 혹은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세무 당국에 교육 훈련이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sup>26)</sup>

22)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지 아니함

23)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ct(CHAPTER 138A) Part 1. Section 5.

24)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지 아니함

25)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ct(CHAPTER 138A) Part 1. Section 6.

26)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ct(CHAPTER 138A) Part 1. Section 7.

#### 나. 국세청의 관할 구역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로 지방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하위 조직 없이 싱가포르 국세청이 단독으로 국가 조세 업무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

### 4. 조세법의 규범체계

#### 가. 법령 체계의 성격

싱가포르의 법률체계는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기초한다. 이러한 영향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및 손해배상법과 같은 전통적인 관습법 분야에 더 잘 나타난다.<sup>27)</sup> 싱가포르의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 1948년으로 싱가포르가 영국의 식민지 정부하에 있던 시절이다. 당시 이 법은 1922년 영국의 식민지 영토 소득세 조례(Model Colonial Territories Income Tax Ordinance)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같은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와 공통된 역사적 근거를 공유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영향은 의회가 특정 법률을 창설할 때 다른 영연방국가(Commonwealth jurisdictions)의 법도 참조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회사법은 영국과 호주 회사법의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은 영국과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법으로부터 조항을 인용하였다.<sup>29)</sup>

#### 나. 법원성(source of law)<sup>30)</sup>

싱가포르 법은 헌법, 의회입법, 보조입법, 그리고 판례의 4개의 기둥을 기초로 한다. 헌법, 의회입법, 보조입법은 입법권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으로 성문법원에 포함된다. 싱가포르 헌법 제143조에서는 “조세는 법률에 따라 징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과 관련된 의회입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31)</sup>

27) 세계법제정보센터(2016), p. 1.

28) CCH(2018), pp. 1~100.

29) 세계법제정보센터(2016), p. 6.

30) 세계법제정보센터(2016), pp. 4~11; Andrew Halkyard 외(2007), pp. 1~10.

31) CCH(2018/19), pp. 1~100.

〈표 I-2〉 싱가포르 주요 세법(의회입법)

분야	해당 법률
소득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Income Tax Act)</li> <li>• 경제발전특례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Relief from Income Tax))</li> </ul>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법(Goods and Services Tax Act)</li> </ul>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법(Property Tax Act)</li> </ul>
감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인법(Appraisers Act)</li> </ul>
민간복권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복권세법(Private Lotteries Act)</li> </ul>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세법(Stamp Duties Act)</li> </ul>
카지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지노세(Casino Control Act)</li> </ul>
상속세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Estate Duty Act)</li> </ul>
도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박세(Betting and Sweepstake Duties Act)</li> </ul>

주: 1) 상속세는 2008년 2월 15일 전에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됨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Tax-Acts/>,  
 검색일자: 2020. 6. 25.

의회입법은 특정 정책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만 제공하고, 그 외 행정적인 내용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조입법(subsidiary legislation)에서 구체화된다. 보조입법은 주로 단일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모법과 상충될 수 없고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이러한 보조입법의 형태로는 규정(regulations), 규칙(rules), 명령(orders), 고시(notifications) 등이 포함된다. 규정은 본질상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것으로 모법의 실제적 조항에 대한 확장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일반)규정의 제49조 및 제50조는 관광객이 싱가포르에서 구입한 상품에 지불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의 목록을 제시한다. 규칙은 절차적 문제를 다루며, 명령은 특정 사물,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 조항이나 지침을 만든다. 규칙이나 명령은 일반적으로 법률상 특정 용어의 범위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규정하며, 고시는 보다 사실적인 정보, 공적정보를 규정한다.

싱가포르의 법률체계는 관습법(common law)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도 법률의 주요한 원천으로 간주된다. 다만,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 이전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의 판결도 법원 판결에 대한 참고자료로 쓰이나,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 5. 세무행정

### 가. 가산세 등의 벌칙

#### 가) 소득세법 관련

납세자가 세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는 위반행위(offences)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과태료,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 처벌로 이어진다. 소득세와 관련된 일반적 위반행위에는 소득세 신고를 불이행하거나, 소득세 신고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세무조사 시 인터뷰에 불응하거나 기타 자료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이 해당 된다. 유형별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I-3〉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

위반행위	처벌규정	소득세법 조문
일반적 위반행위	• 벌금 최대 SGD 1,000 및 납부 불이행 시 최대 6개월 징역	94
무신고(failure to give notice of chargeability) 및/또는 최고책임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미제출	• 벌금 최대 SGD 1,000 및 납부 불이행 시 최대 6개월 징역	94A
2008년 1월 1일 이후 2개 과세기간 동안 상기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sup>1)</sup>	• 유죄판결받은 후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매일 SGD 50	94A(2)
	• 부과세액의 200%(한도: SGD 1,000) 및 납부불이행 시 최대 6개월 징역형	94A(3)
과소신고	• 과소신고된 세액의 100%	95(1)
과소신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	• 과소신고된 세액의 200% • 최대 SGD 5,000 벌금 및/또는 • 최대 징역 3년	95(2)
조세포탈	• 과소신고된 세액의 300% • 최대 SGD 10,000 벌금 및/또는 • 최대 징역 3년	96
중조세포탈 (serious fraudulent tax evasion)	• 과소신고된 세액의 400% • 최대 SGD 50,000 벌금 및/또는 • 최대 징역 5년	96A
공무수탁사인 등의 위반행위	• 최대 SGD 10,000 벌금 및/또는 • 최대 징역 3년	97
국세청 공무원 방해	• 최대 SGD 1,000 및 납부불이행의 경우 6개월 징역	98

주: 1) 2008년 이전에는 3개 과세기간 동안 위법행위에 대해 판결을 받은 경우였음  
자료: CCH(2019/20), p. 713.

나) 부가가치세법 관련

부가가치세법 관련 주요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I-4〉 부가가치세법 주요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

위반행위	처벌규정	부가가치세법 조문
장부보관의무 위반	(판결에 의해) • 1차위반: 벌금 최대 SGD 5,000 및/또는 최고 6개월 징역 • 2차위반: 벌금 최대 SGD 10,000 및/또는 최고 3년 징역	46(6)
구체적인 가산세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	(판결에 의해) 벌금 최대 SGD 5,000 및 벌금 미납시 최고 6개월 징역	58
과소신고	(판결에 의해) 과소신고한 세액 납부	59(1)
과소신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	(판결에 의해) • 과소신고한 세액 납부 및 • 벌금 최대 SGD 5,000 및/또는 최고 3년 징역	59(2)
납부 불성실 (미납/연체)	• 납부할 세액의 5% 가산세 및 • 60일 이후에도 미납인 경우 매월 미납금액의 2%(최대 미납금액의 50%까지)	60(1)
신고서 미제출/ 제출기한경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시 SGD 200에 미제출한 달마다 SGD 200씩 가산(최대 SGD 10,000)	60(2)
등록의무 위반	(판결에 의해) • 등록일이 속한 연도부터 매년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 벌금 최대 SGD 10,000 및 •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선고일로부터 매일 SGD 50씩 가산	61
고의적 조세회피 <sup>1)</sup>	(판결에 의해) • 과소신고한 금액의 3배 가산세 및 • 벌금 최대 SGD 10,000 및/또는 최고 7년 징역	62(1)
부적절한 환급금 수취	(판결에 의해) • 초과 환급받은 금액의 3배 가산세 및 • 벌금 최대 SGD 10,000 및/또는 최고 3년 징역	63

주: 1) 매출세액의 누락 및 과소계상, 매입세액의 과대계상, 허위진술, 허위 회신, 허위 장부 및 기록, 사기 또는 분식 기록 등을 사용함을 포함

자료: CCH(2019/20), p. 937.

나. 세무감사와 조사<sup>32)</sup>

싱가포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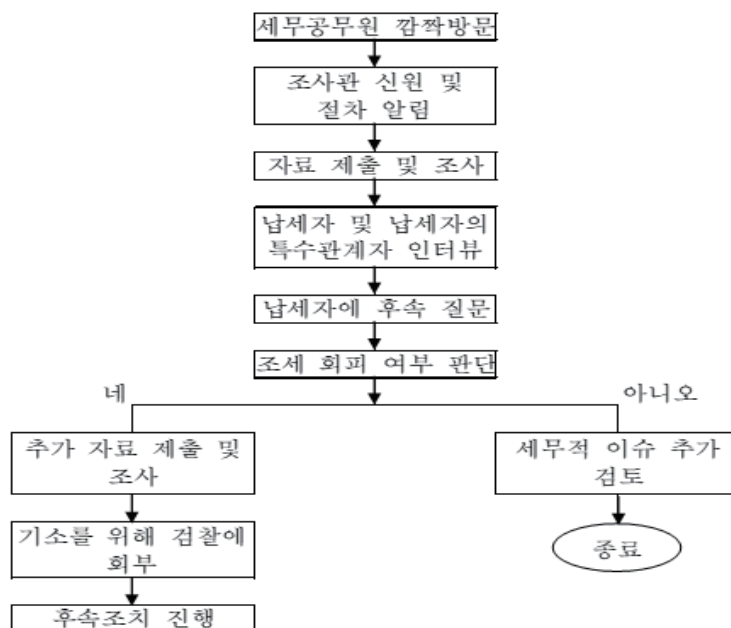
32) IBFD, Country Tax Guides, Singapore- Tax Risk Managemen,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rmtp\\_sg\\_chaphead](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rmtp_sg_chaphead), 검색일자: 2020. 6. 26.

감사(tax audit)를 실시한다. 이는 주로 세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주의로 과실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무 감사를 통해 납세자의 과실이 밝혀진다면 납세자에게 일련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조사(tax investigation)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신고서, 계좌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납세자의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한다. 만약 납세자의 조세회피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포탈된 세금과 가산세 납부처분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주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계산방법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보다는 세무감사가 이루어진다.

세무조사 범위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 외 싱가포르 국세청이 관리하는 세금 유형이 포함된다. 조사기간은 조사의 범위, 사안의 복잡성 및 납세자 협력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에는 약 15개월에서 2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sup>33)</sup>

[그림 I-1] 세무조사 과정



자료: IBFD, Country Tax Guides, Singapore- Tax Risk Management, [https://research.ibfd.org/#/document/rmtp\\_sg\\_chaphead](https://research.ibfd.org/#/document/rmtp_sg_chaphead), 검색일자: 2020. 6. 29.

33)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Getting-it-right/Tax-Evasion-or-Fraud/Investigation-by-IRAS/>, 검색일자: 2020. 6. 26.

다. 조세불복제도<sup>34)</sup>

가) 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

납세자가 국세청의 부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경정거부통지서(Notice of Refusal to Amend)를 받게 되며, 이때 비로소 납세자는 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경우 항소 신청서(petition of appeal)는 경정거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위원회로 제출되어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은 재무부장관(Minister of Finance)이 임명한다. 심판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결정·경정 결과를 확정하거나, 감액 또는 증액하거나, 취소 또는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sup>35)</sup> 이는 위원들의 다수결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결과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전달된다.

나) 고등법원(High Court)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납세자와 최고책임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법률상 또는 법과 사실관계가 혼합된 쟁점이 있는 경우 쟁점금액이 200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에 한해 고등법원(High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가 고등법원에 쟁점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회부하면, 고등법원은 심판과정을 거쳐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확정, 감액 또는 증액,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다)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납세자 또는 최고책임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다.

34) CCH(2019/20), pp. 709~711.

35) Income Tax Act section 80(10).

#### 라. 사전판결제도(advanced ruling system)<sup>36)</sup>

사전판결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은 2005년 6월 8일(2007년 9월 27일 개정됨) 해당 제도 및 신청절차 등을 담은 회람을 발행하였다. 판결은 관련 신청자 및 특정계약, 연도 기간, 소득세 조항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신청자의 유사한 판결의 결과를 인용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에 해당 판결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관련 법적 조항을 적용하도록 구속한다. 판결은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으로 신청자는 자신에게 판결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판결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포함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2019년 5월 1일부터 싱가포르 국세청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따라 사전 판결에 대한 요약본을 게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8주가 소요되며, 신청 시 SGD 660(환불 불가, GST 포함)의 신청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후 판결에 소요되는 다음 4시간에 대해 시간당 SGD 165(GST 포함)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

36)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cta\\_sg](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cta_sg), 검색일자: 2020. 8. 12.



## 제2장 주요 세법

- I. 법인소득세
- II. 개인소득세
- III. 국제조세
- IV. 소비세
- V. 기타 조세



## 제2장 | 주요 세법

### I 법인소득세

#### 1. 서론

싱가포르 소득세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Cap 134, 2014 Rev Ed)」)에 따라 과세되며, 이 법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특례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Relief from Income Tax)」)은 싱가포르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담고 있는 법으로서, 법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의 하나로 본다. 본 장에서는 소득세법 중 싱가포르 법인과 관련된 소득세 내용을 다루기로 하며, 이를 편의상 법인소득세라고 부르기로 한다.

싱가포르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 거주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주 단계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1단계 법인 과세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을 채택하였다. 즉, 법인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금이 되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과세 면제된다.

싱가포르는 고정자산 매각이익,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이익 등과 같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17%이다.

#### 2. 납세의무자

싱가포르의 법인소득세는 법인과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두고 있다. 정부기관과 관련 협력단체, 기부단체와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2조에서는 법인의 정의를 싱가포르 또는 이외의 지역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모두 법인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2(1)항에 따라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의 경영 및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싱가포르

포르 거주법인에 속한다. 이는 실제로 법인의 이사들이 만나고 사실상 지배력이 행사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이 설립된 장소이거나 주된 거래 활동과 물리적 운영의 장소일 필요는 없다. 회사의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경영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 연례총회 개최 장소
- 사업의 경영 및 통제와 관련된 결정이 행해진 이사회 위치
- 회사의 비품에 기재된 회사 주소

파트너십(Partnerships)은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 받은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싱가포르의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법률상 회사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싱가포르 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에서 허용하는 활동을 넘어서지 않는 한 싱가포르 내에서 과세소득을 갖지 않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세청은 연락 사무소의 활동을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싱가포르 상장기업, 유한책임회사, 거주 외국법인에 관한 소득세 내용을 담을 것이며, 비거주 외국법인에 대한 판단 및 소득세 과세내용은 제Ⅲ장 ‘국제조세’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 3. 과세가능 소득

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활동에서 얻은 수익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러한 재무제표에 따른 회계상의 수익, 비용과 이익은 손익의 귀속시기나 비용공제 한도 등과 같은 세법 규정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이나 비용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회계상의 금액과 세무상의 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전체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과정 중 과세가능 소득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나누어, 이전 단계인 우리나라 세무조정계산서의 소득감면 이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가능 소득(Chargeable income(before exempt amount), Assessable income)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sup>37)</sup>

37) 우리나라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싱가포르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과세가능 소득은 우리나라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이라 말할 수 있다.

〈표 II-1〉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과정

재무제표상 세전 이익(손실)

-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별도 원천수입(예: 투자 이자소득)
-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과세 수입(예: 자산 처분 이익)
- (+) 손익계산서에 기입되지 않은 과세 수입
-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세법상 불공제비용(예: 감가상각비)
- (-)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공제 항목(예: 수선비(R&R) 및 14Q조 특별공제 항목)
- (-) 추가 공제 항목(예: 14B조에 따른 승인된 무역박람회 비용)

자본공제 전 조정소득(tax-adjusted profit form the TBP before capital allowances)

- (-) 전기 이월 자본공제
- (-) 당기 발생 자본공제

자본공제 후 조정소득(tax-adjusted profit form the TBP after capital allowances)

- (-) 이월결손금 공제
- (+) 그 외 소득(예: 국외배당, 이자, 순임대소득)
- (-) 이월기부금 공제
- (-) 자본공제 및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분

과세가능 소득(Chargeable income(before exempt amount), Assessable income)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BTC 2020 FORM 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가. 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 1) 과세소득

싱가포르 세금은 ①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소득 또는 ② 싱가포르 국외에서 국내로 수령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sup>38)</sup> 싱가포르에서 발생 또는 파생이라는 뜻은 소득의 원천지가 싱가포르일 경우를 말하며, 국외에서 국내로 수령한 소득이란 국외원천 소득을 국내에서 수령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인 소득은 ① 거래 또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② 배당, 이자, 임대수입과 같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③ 로열티, 프리미엄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기타수입 ④ 소득 성격의 기타이익을 포함한다. 법인세 신고서식 Form C에 명시된 과세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다.

38) Income Tax Act section 10(1).

〈표 II-2〉 과세소득의 유형

1.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S\$)		
1a. 자본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 후 사업소득			
1b. 이자/할인			
1c. 신탁 분배금			
1d. 임대료, 프리미엄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기타이익			
1e. 로열티			
1f. 이 외의 소득			
2. 싱가포르 내에서 수령한 국외소득			
	소득의 유형	국가	금액(S\$)
2a.	1)		
2b.			
...			
2f.			
합계			

주: 1) 사업/배당/이자/임대료/로열티/분배금에서 선택  
 자료: 법인소득세 신고서식 FORM C(INCOME TAX RETURN) 중 Part V- Assessment Information

싱가포르 국외소득을 국내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sup>39)</sup> 이때 과세 소득을 인식한다.

- 싱가포르로 송금 또는 반입된 때
- 싱가포르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 등의 의무를 지불한 시점
- 싱가포르 내로 반입된 동산(movable property)을 들여온 시점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에 고정자산 처분이익,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 이익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자본거래는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2) 비과세소득  
 ① 특정 국외소득

싱가포르 국세청은 2003년 6월 1일부터 특정 외국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국

39) Income Tax Act section 10(25).

외원천소득면제제도(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거주법인이 수령한 국외원천배당, 해외자회사이익, 국외원천용역소득은 비과세 된다.<sup>40)</sup>

국외원천배당은 싱가포르 비거주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말하며, 해외자회사이익은 싱가포르 국외에 소재한 자회사가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말한다. 단, 이자와 로열티와 같이 거래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외원천용역소득은 싱가포르 이외의 고정된 장소에서 일련의 거래, 전문업, 사업의 과정으로 거주 납세자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기술, 컨설팅 및 기타서비스로 창출한 소득을 말한다. 만약 거주 납세자가 이와 같은 용역을 고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공하였다면 이는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 해당 제도는 싱가포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행된 거래 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만약 싱가포르 국내에서 이러한 활동의 결과 소득이 창출되었다면, 이는 싱가포르 내에서 소득을 수령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정 외국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면 외국 관할권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해당 외국 관할권의 최고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 관할권의 최고세율 기준은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수령한 당시의 외국 관할권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가 실제 부과된 유효세율과 다를 수 있다.

참고로 납세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서(Form C)에 수령한 소득의 유형과 금액, 외국 과세관할권, 외국 과세관할권의 최고세율, 소득 수취 당시 외국 관할권에서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박회사의 특정 선박이익<sup>41)</sup>

싱가포르에 등록된 선박 또는 외국 선박의 운항으로 발생된 특정 선박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sup>42)</sup> 싱가포르에 등록된 선박회사의 ① 승객, 우편, 가축, 또는 물품 운송 ② 견인 또는 인양작업 ③ 선박 임대료 ④ 채굴선, 탐사선, 해양 석유 또는 가스 굴착활동으로 인한 소득 ⑤ 싱가포르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 및 위험 관리 활동 ⑥ 싱가포르 선박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등과 외국 선박의 경우 싱가포르 내에서 환적된 경우를 제외한 승객, 우편,

40) Income Tax Act section 13(8).

41)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Specific-industries/Shipping-Companies/>, 검색일자: 2020. 6. 3.

42) Income Tax Act section 13A.

가축, 싱가포르 내에서 싣는 물품의 운송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서(Form C)에 소득의 유형 및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3F조에 따라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PA)이 승인한 국제선박회사의 선박 소득도 비과세된다.

### 나. 비용공제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14조는 세법상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항목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따라서 비용이 세법상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에 열거된 것으로서 제15조 공제 불가능한 비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1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써 공제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a)조부터 (h)조까지 구체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열거 하였다.<sup>43)</sup> 이 외의 기타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나, 한도 요건이 적용된다(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의 차량비용).<sup>44)</sup>

또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100%, 150%, 200% 또는 300%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는 추가공제 및 일반적인 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공제 및 종업원 주식 보상제도에 따른 자사주 공제가 있다.<sup>45)</sup>

〈표 II-3〉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항목	소득세 근거조항
추가공제 (further deductios)	승인된 무역박람회, 전시회, 무역사절단 또는 해외 무역사무소 유지와 관련 비용	14B
	연구개발비용	14DA, 14E
	해외투자개발비	14K
	해외 주재원 급여 지출비용	14KA
	적격 훈련비용	14R
	규정된 자동차 장비 임대 비용	14T
	적격 인-라이센싱 무형자산 비용	14W
	적격 차입금에 대한 보험비용	14ZA
	BIPS에 따라 발생한 비용	14ZB

43) (a)조: 이자비용, (b)조: 임대료, (c)조: 수선비용, (d)조: 대손상각비, (e)조: 연금분담금, (fb),(fc)조: 의료비용, (g)조: 종교 헌납금, (h)조는 광산업 수입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열거함

44) CCH(2019/20), p. 180.

45) CCH(2019/20), pp. 180~181.

〈표 II-3〉의 계속

구 분	공제항목	소득세 근거조항
특별공제 (special deductions)	무형자산 방어 비용	14A
	연구개발비용	14D
	투자회사의 관리비용	14F
	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위한 건물 수선비	14H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채권 준비금 또는 투자가치 감액	14I
	승인된 일반 보험사로부터 특별 유보금 공제	14O
	적격 수선비용 공제	14Q
	적격 디자인 지출액 공제	14S
	사업개시 전 비용 및 합병 지출 비용	14U
	법률 준수비용	14X
	개인 기사 고용 비용	14ZC

자료: CCH(2019/20), pp. 180~181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원천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납세자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히 사용한 모든 지출과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은 ① 소득생산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어야 하며, ②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③ 비용지출액과 지출한 원인이 소득 창출과 관련되어야 하고, ④ 지불 의무가 확정된 기간의 비용이어야 한다.<sup>46)</sup>

이번 챕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세법상 공제 여부를 다루면서 비슷한 성격의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sup>47)</sup>

### ① 종업원 관련 비용

#### 보수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실재적이고 합리적일 경우 세법상 공제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용역에 대한 보상은 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6) CCH(2019/20), pp. 197~202.

47) T. Toryanik,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9 July 2020).

- 퇴직한 종업원 또는 사망한 종업원(또는 가족)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
- 고용계약 종료 후 고용연장계약을 포기하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 폐업 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 회사 구조조정 후 종업원이 이전회사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후속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후속회사의 공제 가능한 비용이 아님

한편, 종업원주식보상제도(employee equity-based remuneration, EEBR)에 따라, 회사가 종업원에게 인센티브의 형태로 주식옵션(ESO)과 자기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는 종업원이 행사한 주식옵션과 자기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실제 지출이 발생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sup>48)</sup>

### 의료비용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은 해당 과세기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를 한도로 세금 공제된다. 그러나 회사가 통산가능 의료혜택제도(Portable Medical Benefits Scheme, PMBS)<sup>49)</sup> 및 이전가능 의료보험제도(Transferable Medical Insurance Scheme, TMIS)를 이행하고 적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업원 급여 총액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sup>50)</sup> 또한 회사가 PMBS와 같은 의료혜택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연간 종업원 당 SGD 2,730<sup>51)</sup>를 한도로 종업원 특별 메디세이브(ad-hoc Medisave) 계좌에 불입한다면, 최대 종업원 급여 총액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사회보험료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연금 또는 연금기금에 납부하는 불입금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 불입하는 대상이 승인된 연금 및 연금기금과 국외에서 설립된 펀드이어야 하

48) Income Tax Act section 14P 및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Business-Expenses/Tax-Treatment-of-Business-Expenses-A---H/#title4>, 검색일자: 2020. 6. 4.

49) 통산가능 의료혜택제도(Portable Medical Benefits Scheme, PMBS)는 직원이 고용주를 변경할 때도 의료혜택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에 따라 매월 종업원의 메디세이브(MediSave) 계좌에 보험료를 추가로 불입하며, 종업원은 메디세이브 불입금으로 더 좋은 혜택 보험(MediShield Life 또는 Integrated Shield Plan)을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보건부,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schemes-for-employers-and-employees/portable-medical-benefits>, 검색일자: 2020. 6. 4.

50) Income Tax Act section 14(6).

51) 2018년 1월 1일부터 1인당 종업원 연간 한도액이 SGD 1,500에서 SGD 2,730로 인상되었다.

며, 고용계약 또는 기금 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52)</sup>

또한,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sup>53)</sup>에 대한 회사 부담금은 공제가 가능하며, 종업원 부담금분을 회사가 대납해주었다면 최소부담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 ② 이사 보수 및 수수료

회사에 수익 창출과 관련하여 이사 및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는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주와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수는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그 대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sup>54)</sup> 이는 고용주, 고용주의 파트너, 고용주를 통제하는 개인(본인,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③ 이자비용

차입금 이자, 이자 명목으로 지불된 비용 및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에 대한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sup>55)</sup> 여기에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은 세법상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장기 투자를 위해 취득한 사용하지 않는 재산
- 배당하지 않는 주식/증권 관련 투자상품
- 무이자 대출 또는 거래가 되지 않거나 / 여러 채무자로부터 빌린 금액
- 무이자 대출 또는 특수관계 회사 / 주주로부터 빌린 금액

또한 소득세 (공제 가능한 차입비용) 규정 2008에서는 이자비용을 대체하거나 감소시키는 이외 차입비용에 대해 공제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였다.

- 보증수수료: 차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그의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이

52) Income Tax Act section 14(1)(e).

53)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은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종합사회보장제도이며, 공무원·군인·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노후생활, 주택 구입, 의료비 지출 등을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의 저축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및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령 및 총임금에 따라 각각 일정비율(5~20%)의 기여금을 매달 강제 적립하여 정년퇴직 또는 노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입원비 등 의료비 지출로 사용한다. 리셴룽 총리는 2019년 8월 18일 국경일 기념 국정연설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CPF 적립액을 최대 적립률 37%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다(경제 상황에 따라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함), 「싱가포르 개황」 p. 91, 외교부, 2019. 11.

54) Income Tax Act section 14(2).

55) Income Tax Act section 14(1)(a).

부담하는 수수료

- 은행 옵션 수수료: 고정 또는 특정 범위의 대출조건에 대한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 지불된 수수료
- 어음 또는 사채 할인: 제로금리 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의 어음 또는 사채를 발행 경우 발행자가 부담하는 할인액
- 어음 또는 사채 상환 프리미엄: 제로금리 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조건의 어음 또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자가 부담하는 재매입 시 프리미엄
- 조기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시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 연장 수수료: 대출 상환 날짜를 연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불한 수수료
- 추가된 비용: 대출 약정서상 명시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상된 이자율 조정분
- 금리 상한 수수료: 이자율 상한 조건을 위해 지급한 선불금
- 금리 스왑 수수료: 금리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차입자가 지불한 수수료
- 전환 수수료: 대출 계약서상 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기관에 지불한 수수료
- 취소 수수료: 대출 전체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한 수수료
- 실행 수수료 또는 상환 수수료(front-end fees or back-end fees): 대출기간의 초기 또는 후반에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sup>56)</sup>

④ 로열티

소득의 창출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하다.

⑤ 용역수수료 및 관리수수료

용역수수료 및 관리수수료는 사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비

납세자가 제조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세법상 공제 가능하다.<sup>57)</sup> 공제 요건으로는 납세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이거나,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 승인된 연구기관에 지불된 금액이어야 한다. 또한,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 개

56) 2014년도분부터 공제가능함

57) Income Tax Act section 14D.

발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는 가능하다.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 및 활동
-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또는 배포하는 기술과 관련한 서비스 및 활동
- 농업, 원예 또는 가축, 어류, 수산생물의 양식에 적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및 활동
- 실험 또는 테스트 서비스
- 의학 리서치와 관련된 서비스
- 기타 예정된 서비스 및 활동

연구 및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나 재료, 장치, 제품, 생산 및 공정의 생산 및 개선을 위하여 연구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기술적 위험을 수반하는 체계적 분석적 실험적 연구를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 및 개발 범주에 품질관리, 원재료, 장치 또는 제품의 정규 테스트,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연구, 정보 수집, 효율성 조사 또는 경영 연구, 시장 조사 또는 판매촉진, 원재료, 장치, 제품, 프로세스, 생산방법의 일상적인 수정 및 외형적 수정은 연구 및 개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장, 기계, 토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성격, 건물에 대한 개조 및 확장, 또는 연구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에 대한 취득에 대한 비용은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⑦ 기부금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소득 창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비용이기에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7조 제3항에서는 특정 유형의 기부금에 대해 이중 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 승인된 공공기관(Institution of a Public Character, IPC) 또는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개인 기부금 및 선물
- IPC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 상장된 주식,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신탁을 개인이 기부
- IPC 또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교육, 연구, 기타 기관에 회사가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포함)를 기부<sup>58)</sup>

58) 기부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에 의해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기부자는 기부한 컴퓨터의 가치 평가를 IDA에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113.

- 박물관에 승인된 문화재 기부 또는 공공 전시를 위한 조각품을 승인된 수취기관에 기부 (기업 및 개인 모두 적용됨)
- 박물관이 아닌 승인된 수취기관에 야외 공공 전시를 위한 조각품 기부(기업 및 개인 모두 적용됨)
- IPC에 부동산 기부(기업 및 개인 모두 적용됨)

2018년 예산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25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sup>59)</sup> 기증자가 기부의 대가로 혜택을 얻는 경우, 세금 공제는 기부한 대가에서 혜택의 비용을 차감한 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주식 보유 요건에 따라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⑧ 접대비

소득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공제 가능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의 요건에 만족한다면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사업관계자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소득의 창출을 위해 사용된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 ⑨ 자문수수료

소득세법에서는 법률비용과 자문수수료에 대해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적비용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라면 세법상 공제 가능하다. 상표권 사용 분쟁 등과 같은 소득 창출과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나, 자본과 같은 재산권에 대한 법적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장 및 세금 신고를 위한 회계수수료, 부채 상환 수수료, 주식 평가 수수료는 세법상 공제 가능하나, 주식 증자/감자 비용, 회사 설립, 등록, 해산, 청산, 파산수수료 등과 같은 회사 투자자본에 대한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 ⑩ 특허권

59)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IPC 및 기타 승인된 수령자에게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가 일시적으로 200%에서 250%로 인상되었으며, 그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2015년 예산법에 따라 공제율은 300%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다시 공제율은 250%로 인하되었다. 2017년 2월 21일 이후 컴퓨터기부금에 대해서는 250%의 세금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사업상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등을 등록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세법상 공제가 가능하다.

- 2003년 6월 1일부터 2020년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에 발생한 특허 등록비용
- 2011년부터 2020년 평가연도까지 발생한 상표권, 디자인 등 등록비용

#### ⑪ 임대료

소득의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거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일부가 거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부동산 임대료는 안분하여 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되어야 한다.<sup>60)</sup>

임대 프리미엄은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며, 임대 형식을 갖춘 부동산 취득 역시 자본적 지출이기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 ⑫ 수선비 등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지, 시설, 기계장치, 기구의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 또는 시설물 등(implement, utensil, article)을 수선, 개조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세법상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 제19조 및 제19A조 감가상각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공장, 기계, 기구 외의 개조(renewals) 비용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납세자는 공장, 기계장치, 기구에 대해 자본공제를 적용하거나, 교체 시 수선비용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자본공제를 선택할 경우 수선(repairs)과 개조(renewals)의 구분은 중요하다. 오직 공장, 기계장치, 기구에 대한 수선만이 수익적 지출로서<sup>61)</sup>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선은 부속 부분에 대한 교체 또는 수리를 통해 복구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며, 개조는 전체 부분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4Q조에 따르면 2008년 2월 16일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정 보수 비용(renovation and refurbishment)은 세법상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지출한 연도부터 3년

60) Income Tax Act section 14(1)(b), Income Tax Act section 15(1)(b), Income Tax Act section 15(1)(f).

61) 수익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동안 공제가 가능하며, 매년 SGD 300,000 한도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사업 개시 전 발생한 보수비용 일지라도 사업 개시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 공급을 위한 배선 및 일반적인 전력용품 설치, 조명, 온수, 냉수 시스템 설치, 가스 시스템, 주방용품, 화장실 설치 등 일반적으로 건물 구조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보수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 ⑬ 사업 개시 전 비용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득 창출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사업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기에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된 후 첫 번째 소득이 개시되기 이전 일지라도 사업에 대한 이익창출 구조가 확립되어 있고 첫 번째 상업 활동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이 이를 입증한다면 모든 관련 비용은 공제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4U조에 따라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 개발, 혁신 및 개보수 및 디자인과 관련된 적격 지출 사업 개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 ⑭ 차량비용

밴(vans), 화물차 및 버스와 같은 상업용 차량의 수리, 유지, 보수, 주차 및 연료비는 세법상 공제대상이다. 이 외 싱가포르 등록차량(S-plated 차량), RU 차량, 회사 차량에 대한 차량 비용은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세법상 공제가 불가하다. 차량비용이 아닌 교통비(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료 등)는 해당 비용이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전액 공제대상이나, 차량 대여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4년 과세기간부터 싱가포르 외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외국 등록 차량이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공제대상이다.

### ⑮ 법률 준수 비용(statutory and regulatory expenses)

싱가포르 국세청은 기업들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과 자발적인 법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2014년 과세기간부터 법률 준수비용에 대한 소득세 제14X조 특별공제 규정을 도입했다. 싱가포르 원천소득 또는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외국원천소득을 위해 납세자가 국내외 법 준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 ⑩ 지적재산권 등록비용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4D조에 따라 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법상 공제대상이다. 2018년 예산법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SGD 100,000 미만의 적격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에 대해 공제(tax deduction)를 100%에서 200%까지 인상하였다. SGD 10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적용된다.<sup>62)</sup>

#### ⑪ 불공제 비용

다음의 비용은 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 법무비용 및 정관 인쇄비용, 채무 증권 발행비용, 등록비용 등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 자문비용
- 의무적 종교회비 이외의 사적 지출액<sup>63)</sup>
- 자본 회수비용<sup>64)</sup>
- 자본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비용<sup>65)</sup>
- 개선(improvements)을 위해 사용된 자본<sup>66)</sup>
- 소득을 창출할 목적이 아닌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수리비용<sup>67)</sup>
- 싱가포르 국내 또는 국외에 납부한 소득세<sup>68)</sup>
- 미승인된 장래 예금, 기타 펀드 등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sup>69)</sup>
- 의무가 아니거나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승인된 연금 또는 공제자금 또는 사회, 또는 연금 또는 공제자금을 위한 고용주의 기부금<sup>70)</sup>
- 싱가포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대출금에 관련한

62) 과거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생산성 및 혁신 장려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에 따라 사업을 위해 지출한 적격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은 PIC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8년 PIC 제도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적격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은 100% 공제(tax deduction)를 적용받게 된다.

63) Income Tax Act section 15(1)(a).

64) Income Tax Act section 15(1)(c).

65) Income Tax Act section 15(1)(c).

66) Income Tax Act section 15(1)(d).

67) Income Tax Act section 15(1)(f).

68) Income Tax Act section 15(1)(g).

69) Income Tax Act section 15(1)(i).

70) Income Tax Act section 15(1)(i).

- 이자, 수수료 등<sup>71)</sup>
- 사업용 승객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비용(Q 등록차량)<sup>72)</sup>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납부한(또는 납부할) GST와 매입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납부한(또는 납부할) GST<sup>73)</sup>
-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납부한(또는 납부할) GST<sup>74)</sup>
- 보험 또는 보장계약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손실 또는 비용<sup>75)</sup>, 그러나 이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상 공제가 가능함
-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과태료,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외중에 과실로 인한 벌금과 과태료는 공제 가능
- 클럽 입회비 및 정기 구독료(고용주 및 지명회원으로 등록된 사회 및 레크레이션 비용)

#### 다. 자산평가<sup>76)</sup>

##### 1) 재고자산

싱가포르 소득세법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재고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무적으로 싱가포르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후입선출법은 허용하지 않는다.<sup>77)</sup>

회사는 그의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해당 평가방법이 소득으로 반영되며, 상업 및 회계 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매년 일관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평가방식이 실제 소득을 반영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회계기간 말에는 재고자산은 원가 또는 시장가치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재고자산의 가치는 중단되거나 양도되는 시점의 공개시장가치로 평가된다.

재고품의 평가방법 역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재고품은

71) Income Tax Act section 15(1)(j).

72) Income Tax Act section 15(1)(k).

73) Income Tax Act section 15(1)(h).

74) Income Tax Act section 15(1)(m).

75) Income Tax Act section 15(1)(e).

76) T. Toryanik,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7 Aug. 2020).

77)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 중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고부터 판매 또는 제조에 사용된다고 가정하여 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이전에 결정된 사례들에 의해 평가된다.

## 2) 토지 및 영업권

토지 및 영업권 자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다만, 실무상 토지 및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 3) 외화 자산 및 부채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자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세청은 2019년 3월 14일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소득세 처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수익 계정과 관련된 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자체가 손익에 대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을 세법상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본 성격을 가진 계정의 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서는 세법상 과세하거나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은행업에도 적용이 된다.

또한, 기업이 재무보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능 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외환 손익은 소득세 목적으로 과세되거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라. 자본공제

고정자산 비용은 자본적 성격이기에 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회계적 관점에서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 취득된다. 고정자산이 사용되어짐에 따라 자산이 가진 경제적 효익의 소진은 감가상각 인식을 통해 반영된다.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원가가 자산의 사용 연수 동안에 걸쳐 비용이 배분되는 것이며 각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계산된다. 이는 실제 현금흐름의 결과가 아닌 단순히 장부상 회계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하다.<sup>78)</sup>

그러나 고정자산이 마모됨에 따라 실제 사업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만큼 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건물 및 구조물, 공장, 기계장치, 특정 무형자산의 자본 지출액에 대해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허용하고 있다.<sup>79)</sup>

78) CCH(2019/20), p. 312.

자본공제 방식에는 최초공제(initial allowances)과 연간공제(annual allowances) 방식이 있다. 최초공제는 사업 목적으로 적격 자본지출을 한 납세자가 해당 자산이 처음으로 취득되어 사용되어지는 과세연도에 1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공제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매년 공제받으며,<sup>80)</sup>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자본공제는 이전연도에 청구된 자본수당에 대해 먼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현재 평가연도의 다른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sup>81)</sup>

### 1) 산업용 건물(industrial building)

법인은 산업용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또는 취득 시 발생하는 자본 지출에 대해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폐지되어 2010년 2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분부터는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sup>82)</sup>

### 2)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

싱가포르 소득세법에서는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장치(plant)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고정자본으로 사업에 영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정되거나, 이동가능하고 생물 또는 무생물을 포함하는 모든 재화 또는 동산을 말한다. 단, 판매를 위한 재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장치(machinery)는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의미한다.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지출액에는 납품료 및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설치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설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적격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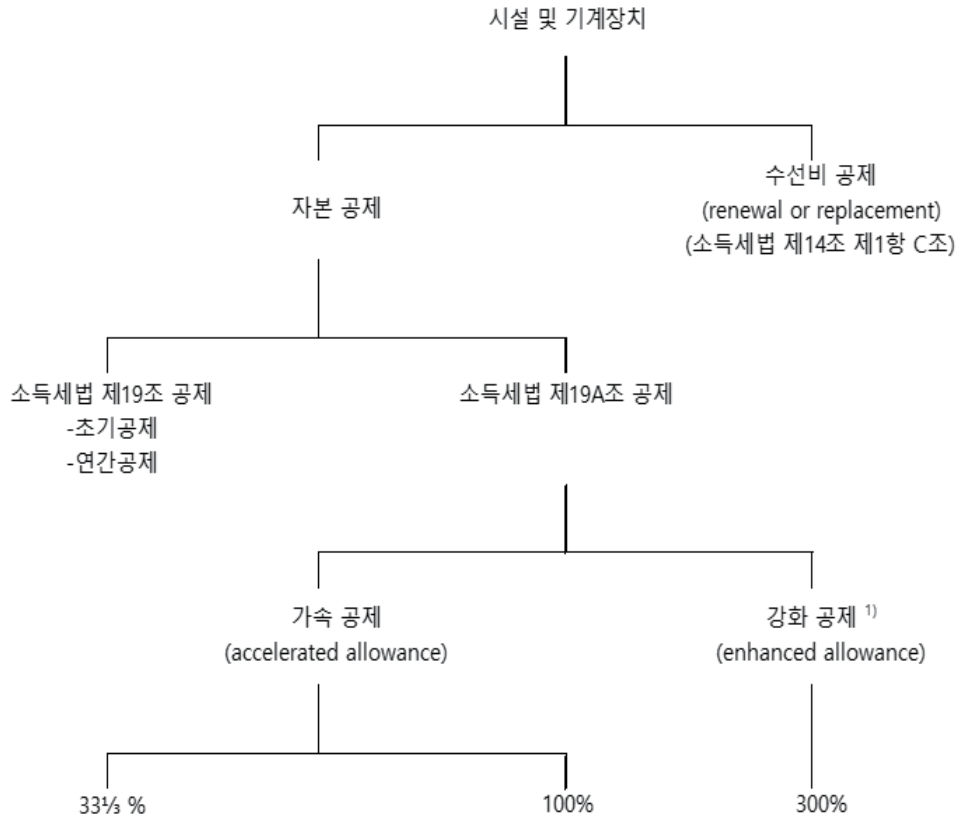
79) CCH(2019/20), p. 312.

80) Income Tax Act section 19(2).

81) T. Toryanik,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17 July 2020).

82)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Allowances/Industrial-Building-Allowances-IBA-/>, 검색일자: 2020. 7. 17.

[그림 II-1] 시설 및 기계장치 관련 비용 처리방법



주: 1) 생산성 혁신 지원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019년 부과연도부터는 적용 불가함  
 자료: CCH(2019/20), p. 349.

납세자는 시설, 기계장치가 교체될 때 자본공제를 신청하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c조에 따른 수선비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자본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공제와 소득세법 제19A조에 따른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제 방식을 한번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서 적용할 수 없다. 제19조에 따른 자본공제와 달리 제19A조에 가속 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과세기간 말까지 해당 시설 및 기계장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미사용 자본공제액 또는 이월결손금이 없을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제19A조에 따른 자본공제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는 제19조에 따른 자본공제와 비교하여 볼 때 초기에 공제를 더 받음으로써 세액 이연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최초공제 및 연간공제

최초공제(initial allowance)는 관련 지출이 발생한 평가연도에 20%공제가 가능하며, 경제부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 요율을 부여할 수 있다. 이후에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연간공제(annual allowance)가 가능하며, 연간공제액은 초기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정액법)이다. <표 II-4>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항목별 내용연수이다.

<표 II-4> 시설, 기계장치 항목 및 내용연수

(단위: 년)

구분	항목명	내용연수
1	항공기	5
2	은행 대금고(bank vault)	16
3	건축, 건설기계	6
4	케이블카 및 기계장치	12
5	케이블 및 관련 자산	16
6	수송용 컨테이너	10
7	전기, 가스, 수도, 공공시설(저장탱크 및 발전기 포함)	16
8	전기 장비(전기 및 산업 기기, 가정용 및 상업용 기기, 에어컨 및 환기 장비와 같은 자산 포함)	8
9	전자 장비(전자 탐지, 안내, 제어, 방사선, 계산, 테스트 및 탐색 장비와 같은 자산 포함)	8
10	개인 및 전문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산 포함)	10
11	농업용 기계	8
12	화재 예방 장치	10
13	수상 건조 항구	16
14	가스 실린더	16
15	제조 및 산업용 공장 및 기계	6
16	승객용 자재, 장비(리프트, 에스컬레이터, 계량기, 컨베이어 벨트, 지게차, 리프팅 기어, 트롤리 및 크레인과 같은 자산 포함)	6
17	영화 필름 장치	5
18	음향 장비 및 기타 관련 자산	10
19	사무실 비품	
	(a) 가구	10
	(b) 데이터 처리장비(타자기, 계산기, 추가 및 회계기계, 복사기 및 복제 장비 포함)	8
	(c) 통신장비	10

〈표 II-4〉의 계속

구분	항목명	내용연수
20	오락 및 오락 목적의 시설(볼링장, 당구장 및 수영장 시설, 극장, 영화관, 콘서트홀, 놀이공원 및 소형 골프장 운영과 같이 유료 또는 입장료 지불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 포함) 과정	10
21	철도 및 철도레일 관련 장비	16
22	운송장비	
	(a) 버스	6
	(b) 비즈니스 서비스 자동차	6
	(c) 택시	5
	(d) 트럭, 트레일러, 밴	6
	(e) 오토바이와 자전거	8
23	선박, 바지선, 예인선 및 이와 유사한 수상 운송 장비	16
24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 자산(식당 및 카페 운영과 같은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포함)	8

자료: 소득세법 6th Schedule

예제 <sup>83)</sup>		
회사는 픽업용(pick-up) 밴을 2019년도에 SGD 45,000에 구입하였다. 장부는 매년 12월 31일에 작성되며,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6th 스케줄상 6년이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부과연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본공제액은?		
해설		
		SGD
Cost(2019)		45,000
YA 2020	최초공제(IA)	(9,000)
		36,000
	연간공제(AA)	(6,000)
		30,000
YA 2021	연간공제(AA)	(6,000)
		24,000
YA 2022	연간공제(AA)	(6,000)
	3년 후 세법상 장부가액	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공제액은 (SGD 45,000 - SGD 9,000)/6 = SGD 6,000</li> <li>• 2020년부터 2025년까지 SGD 6,000의 연간공제 가능(회사가 매년 신청할 경우)</li> <li>• 회사가 특정년도에 연간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연간공제는 2026년까지 연장됨</li> <li>• 2020년도에 최초공제와 연간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공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과연도 당 SGD 7,500(=SGD 45,000/6) 공제가능</li> </ul>		

83) CCH(2019/20), p. 350. 예제 14번

소득세법 제19A조에 따른 가속공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최초공제와 연간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회사는 소득세법 제19A조에 따른 가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속공제의 방식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매년 33⅓% 연간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제19A조 제1항), 또는
- 100% 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제19A조 제2항부터 제10A항, 소득세법 제19A조 제1B항, 소득세법 제19A조 제2A항부터 제2J항)

① 특별 시설 및 기계장치(100% 공제)

컴퓨터 또는 이외 컴퓨터 보조장비(소득세 자동화 장비 규정 2004), 전기발전기, 로봇, 에너지 효율화 설비, 소음 조절 장비, 화학적 위험 통제설비, 기존 디젤차량을 대체하는 신형차량, 웹사이트, 인터넷, SGD 5,000을 초과하지 않는 기계장치<sup>84)</sup>를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차연도에 100% 자본공제가 가능하다.

② 일반 시설 및 기계장치(33⅓% 공제)

2009년 부과연도부터 모든 시설 및 기계장치는 연속적인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33⅓%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회사로 하여금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선택 후 3년간 계속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예제 <sup>85)</sup>				
ABC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장부를 마감한다. 2019년 6월 회사는 발전기를 SGD 60,000에 구입하였으며, 이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6th 스케줄상 6년이다. 회사가 소득세법 제19조, 제 19A조 제1항, 제19A조 제3항에 따라 자본공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각 자본공제방식에 따른 연간 공제액은?				
해설				
YA		s 19	s 19A(1) 33⅓%	s 19A(3) 100%
2020	최초공제(20% × \$60,000)	\$ 12,000		
2020-2025	연간공제((80% × \$60,000)/6)	\$ 8,000/year		
2020-2022	(\$60,000/3)		\$ 20,000/year	
2020				\$ 60,000

84) 2013년부터 SGD 5,000로 인상됨.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준금액은 SGD 1,000였음.

85) CCH(2019/20), p. 352. 예제 15번

### 3)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소득세법 제19B조에서는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승인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자본 지출에 대해 감액공제(writing-down allowances)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 등록 디자인,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영업 비밀 또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한다.

감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지적재산권의 법적 및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소득세법 제19B조 제2B항에 따라 경제개발이사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로부터 법적 소유권 면제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감액공제가 가능한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취득비용을 말하며, 법적 수수료, 등록비용, 인지세 및 기타 권리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지적재산권 취득비용이 SGD 2,000,000 이상일 경우(특수관계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금액이 SGD 500,000)에는 취득가액에 대한 독립평가보고서(Form C)를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이 가능하며, 2003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7년 과세연도부터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사용연수를 인정하여 납세자가 5년, 10년, 15년의 감액기간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2017년 이후 취득한 지적재산권부터 적용되며, 한번 선택한 이상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신청은 감액공제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Declaration Form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 후 지적재산권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거래 또는 사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지적재산권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 마. 결손금<sup>86)</sup>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86)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cta\\_sg](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_resolver/static/cta_sg), 검색일자: 2020. 8. 12.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결손금(ordinary losses)

사업활동(trade, business, profession or vocation)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sup>87)</sup>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그 성격이 자본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사업과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손실을 포함한다.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 2) 결손금의 이월공제(loss carry-forward)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a조에 따라 발생한 손실)만이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 당해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미사용된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면 선입선출법에 따라 과거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sup>88)</sup>

단, 법인의 경우 사업 손실의 이월공제 및 아래에서 후술할 소급공제 규정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마지막 날과 손실을 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첫 번째 날 회사의 납입자본(및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의 50% 이상이 동일한 회사 주주가 보유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sup>89)</sup> 단, 해당 요건을 판별할 때 수익소유권 원칙이 적용된다.<sup>90)</sup>

### 3) 결손금의 소급공제(loss carry-back)<sup>91)</sup>

2006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은 1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자본공제액과 이월결손금(미사용분)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이전 사업연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가 당해연도에 세액을 돌려받음으로써 회사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였다. 단, 소득세법 제10E조에 따른 투자지주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급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나. 사업 손실의 이월공제에서 서술한 주주 연속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sup>92)</sup>

87) Income Tax Act section 37(3).

88) Income Tax Act section 37(3)(a).

89) Income Tax Act section 37(12)~(14).

90) Income Tax Act section 23.

91) CCH(2019/20), pp. 407~408.

소급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당해연도 손실액, 직전연도 과세소득금액과 SGD 100,000 중 작은 금액이며, 법인세율 17%를 가정할 경우 회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은 최대 SGD 100,000 × 17%인, SGD 17,000이다. 소급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은 취소 불가능하다.

2020년 5월 8일 발표한 e-tax 가이드(enhanced Carry-back Relief System)에 따르면 2020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서 3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소급공제 기간을 연장하였다. 따라서 2020년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SGD 100,000까지 금액까지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7년, 2018년, 2019년도의 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가 가능하다.<sup>93)</sup>

## 바. 그룹 간 공제제도

연결납세제도란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싱가포르의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룹 간 공제제도(group relief system)를 통해 한 회사의 당기 미사용 결손금, 자본공제, 기부금을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의 과세가능 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94)</sup> 해당 제도는 부과연도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전할 수 있는 손실 목록 및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미사용 자본수당, 결손금, 기부금은 그룹 간 공제대상이 아니다.

- 당해 발생한 미사용 자본수당
- 당해 발생한 미사용 결손금(사업손실)
- 당해 발생한 미사용 기부금

상기 손실에 대해 그룹 간 공제를 위해 손실을 이전하는 법인(이하 손실이전법인)과 손실을 이전받는 법인(이하 손실청구법인)은 싱가포르 회사 법인이어야 하며, 동일한 그룹 내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75% 이상 주식보유 비율을 만족시켜야 하며, 동일한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2) 미사용 자본공제에 대한 소급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직전 과세연도에 수행한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93) 싱가포르 국세청, e-Tax 가이드,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_Enhanced%20Carry-back%20Relief%20System\\_Budget%202020.pdf](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_Enhanced%20Carry-back%20Relief%20System_Budget%202020.pdf), 검색일자: 2020. 7. 21.

94) Income Tax Act section 3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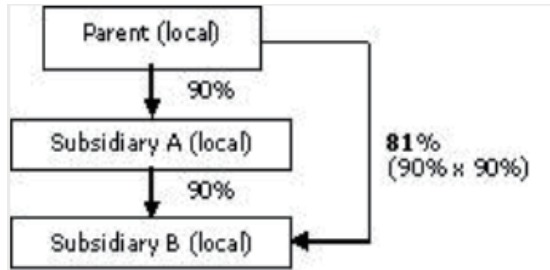
75% 주식 보유 테스트

두 싱가포르 법인이 동일 그룹의 법인에 속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한 회사의 보통주 발행 총수의 75%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 두 법인의 보통주 발행 총수의 75% 이상을 싱가포르 제3자 법인이 각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예제 1** 95)

싱가포르 법인(모회사)은 싱가포르 법인의 자회사(자회사 A)의 보통주 자본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A는 싱가포르 법인 자회사(자회사 B)의 보통주 자본의 90%를 보유하고 있음



**해설**

- 회사간 보통주 주식 보유 비율 및 75% 주식 보유 비율 요건 충족 여부

회사	보통주 주식 보유 비율	75% 요건 충족 및 동일 그룹 회사 내 인정여부
모회사와 자회사 A	모회사가 자회사 A의 주식을 직접 90% 보유	○
모회사와 자회사 B	모회사가 자회사 B의 주식을 간접 81% 보유	○
자회사 A와 자회사 B	자회사 A가 자회사 B의 주식을 직접 90% 보유	○

- 따라서, 모회사, 자회사 A, 자회사 B는 모두 동일 그룹 내 회사로 판단됨

손실이전법인은 손실 항목을 하나 이상의 손실청구법인에 손실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청구법인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첫 번째 손실청구법인의 과세가능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전액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다음 청구법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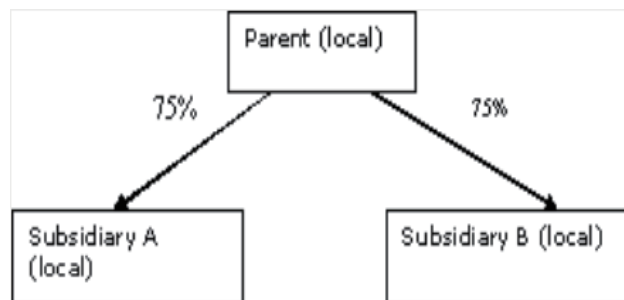
95)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Reliefs/Group-relief/Qualifying-for-Group-Relief/>, 검색일자: 2020. 8. 5.

이전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실청구법인 역시 하나 이상의 손실이전법인으로부터 손실항목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전받는 회사의 우선순위를 정해 첫 번째 이전법인으로부터 이전된 손실항목이 손실청구법인의 과세가능 소득에서 전액 공제한 후 다음 손실이전법인의 손실항목을 공제할 수 있다.

그룹 간 공제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시 손실이전법인은 Form GR-A를 제출해야 하며, 손실청구법인은 Form GR-B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부과연도에 대한 그룹 간 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한번 신청된 그룹 간 공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이 면제되거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되어 회사의 과세 입장이 손실에서 이익으로(혹은 이익에서 손실로) 뒤바뀌는 경우, 부과 고지가 재발행되는 경우에는 수정된 그룹 간 공제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예제 2 96)

싱가포르 법인(모회사)은 싱가포르 법인의 각 자회사(자회사 A 및 자회사 B)의 보통주 자본의 75%를 보유하고 있음




#### 해설

- 싱가포르에 위치한 제3회사(모회사)는 자회사 A와 자회사 B의 보통주 주식의 75%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모회사, 자회사 A, 자회사 B는 모두 동일 그룹 내 회사로 판단됨

96)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Reliefs/Group-relief/Qualifying-for-Group-Relief/>, 검색일자: 2020. 8. 5.

[그림 II-2] 그룹 간 공제 신청서(Form GR-A)(손실이전법인용)

**Form GR-A**  
**Group Relief Form for Transferor Company for Year of Assessment**



**Important:**

- Group relief is available to Singapore incorporated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group and which have the same financial year end.
- This Form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Form C.
- Please read IRAS e-Tax Guide "Group Relief System" before completing this Form.
- Please refer to "Qualifying for Group Relief" on IRAS' website ([www.iras.gov.sg](http://www.iras.gov.sg)).
- Please use separate Forms if you have more than 5 claimant companies.

**Note:**

- This Form may take you 10 minutes to fill in.
- Please get ready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fill in the Form:
  - Details of the transferor company (see Part 1)
  - Details of the claimant companies (see Part 3)

**Part 1 Details of transferor company**

Name:

Tax ref. no.

Total loss items transferred<sup>1</sup>

**Part 2 Declaration**

I declare that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re maintained at or above 75% during the continuous period<sup>2</sup> stated in Part 3 and all information given in this Form is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I need to retain my computation on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s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may request for it.

Please confirm by indicating with a tick in the following boxes:

**My company is**

**Not** a company that has not been carrying on any business (i.e. dormant) for the Year of Assessment.

**Not** an investment holding company transferring current year unutilised losses which arose from excess of expenses over investment income.

**Not** a compan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0E of the Income Tax Act, transferring current year unutilised losses or capital allowances (except for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or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Group relief cannot be claimed if the company is one of the three mentioned types of company.

Full name and signature of person completing the Form      Capacity of person completing the Form      Contact no.      Date

**Part 3 Details of claimant companies in order of priority**

Order	Details	Loss items transferred <sup>3</sup>	Continuous period <sup>2</sup>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Name: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Tax ref. no.: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Unutilised CA (NTR)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Unutilised CA (CTR)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Unutilised loss (NTR)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Unutilised loss (CTR)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Unutilised donation (NTR)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Unutilised donation (CTR)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From: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dd/mm/yyyy  To: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dd/mm/yyyy

<sup>1</sup> Total refers to the aggregate quantum of the loss items transferred as listed under Part 3.

<sup>2</sup> Continuous period refers to the period ending on the last day of the basis period during which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is maintained at or above 75%.

<sup>3</sup> The quantum to be completed here is based on tax computation submitted with Form C before section 37B adjustment.

NTR - Normal corporate tax rate      CTR - Concessionary tax rate

Under the Singapore Income Tax Act, there are penalties for making a false or incorrect declaration.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ephone: 1800-356 8622 www.iras.gov.sg


Page 1 of 2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Reliefs/Group-relief/Applying-for-Group-Relief/>, 검색일자: 2020. 8. 6.

## [그림 II-3] 그룹 간 공제 신청서(Form GR-B)(손실청구법인용)

**Form GR-B**

**Group Relief Form for Claimant Company for Year of Assessment**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mportant:**

- Group relief is available to Singapore incorporated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group and which have the same financial year end.
- This Form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Form C.
- [Please read IRAS e-Tax Guide "Group Relief System" before completing this Form.](#)
- [Please refer to "Qualifying for Group Relief" on IRAS' website \(www.iras.gov.sg\).](#)
- Please use separate Forms if you have more than 7 transferor companies.

**Note:**

- This Form may take you 10 minutes to fill in.
- Please get ready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fill in the Form:
  - Details of the claimant company (see Part 1)
  - Details of the transferor companies (see Part 3)

**Part 1 Details of claimant company**

Name:

Tax ref. no.:

**Part 2 Declaration**

I declare that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re maintained at or above 75% during the continuous period<sup>1</sup> stated in Part 3 and all information given in this Form is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I need to retain my computation on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as the Comptroller of Income Tax may request for i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ull name and signature of person completing the Form	Capacity of person completing the Form	Contact no.	Date

**Part 3 Details of transferor companies in order of priority**

Order	Name	Tax ref. no.	Continuous period <sup>1</sup>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rom <input type="text"/> dd/mm/yyyy	To <input type="text"/>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rom <input type="text"/> dd/mm/yyyy	To <input type="text"/>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rom <input type="text"/> dd/mm/yyyy	To <input type="text"/>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rom <input type="text"/> dd/mm/yyyy	To <input type="text"/>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rom <input type="text"/> dd/mm/yyyy	To <input type="text"/> dd/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From <input type="text"/> dd/mm/yyyy	To <input type="text"/> dd/mm/yyyy

<sup>1</sup> Continuous period refers to the period ending on the last day of the basis period during which the ordinary shareholding levels of the relevant holding company is maintained at or above 75%.

**Under the Singapore Income Tax Act, there are penalties for making a false or incorrect declaration.**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ephone: 1800-356 8622 www.iras.gov.sg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Reliefs/Group-relief/Applying-for-Group-Relief/>, 검색일자: 2020. 8. 6.

## 4. 조세혜택

싱가포르는 법인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같은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세혜택은 경제발전특례법(EEIA), 소득세법, 조세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발전특례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세혜택제도로는 시장개척자 특례제도(pioneer incentives),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s) 및 용역 수출 인센티브 및 해외 기업 인센티브 등과 같은 개발 및 진출에 따른 조세혜택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세혜택제도는 소득 면제 또는 공제 혼합제도(또는 추가공제) 및 소득세 저율과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혜택제도는 관련 소득의 성격 또는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세조약에 따라 운영되는 조세혜택제도는 소득면제, 세율인하, 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편의상 후술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 가. 소득세법에 따른 조세혜택제도

앞서 서술한 비용공제 챕터에서 가속상각제도 등<sup>97)</sup> 소득세법에 따른 조세혜택제도를 일부 다루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10% 또는 5%로 감면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표는 소득세법 및 관련 입법 규정을 통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의 내용이다.

〈표 II-5〉 소득세법상 조세혜택제도

소득세 조항	조세혜택	참고 입법규정
43A	아시아 통화 유닛, 펀드 매니저 및 증권 회사	4, S 183/2003, S 735/2005
43B	비거주 선박회사 또는 항공운수업	-
43C	보험 및 재보험회사	25,26,27,28
43D (폐지됨)	싱가포르 거래소 또는 이의 자회사	16, S 639/2003

97) 소득세법 제19A조에서는 사업용의 시설 및 기계설비, 컴퓨터 자동화 장비, 발전기, 로봇, 오염 제거 장비, 에너지 효율화 또는 에너지 절약 장비와 같은 특정 타입의 자산의 가속상각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서는 자본공제 파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5〉의 계속

소득세 조항	조세혜택	참고 입법규정
43E	헤드쿼터 회사(2015년 1월 이후 제외)	6
43F (폐지됨)	원유 거래 회사	15
43G	금융 및 재무 센터(FTC)	18
43H (폐지됨)	국제 상품 거래	14
43I	역외 시설 및 기계장치 임대(2016년 1월 이후 제외)	S 566/2008
43J	신탁회사	21
43K (폐지됨)	상품 선물거래소	S 316/2009
43N	채무증권으로부터 파생된 수입	32
43P	세계 무역 회사	S 204/2003
43Q	금융 섹터 인센티브 회사	S 735/2005
43R	금융기관 처리 업무 제공	S 347/2005
43S (폐지됨)	파생상품 거래 회사	S 672/2005
43T (폐지됨)	증권 대출 또는 재구매 회사	S 259/2006
43U (폐지됨)	이벤트 회사	-
43V (폐지됨)	싱가포르 청산소 청산 멤버	S 96/2007
43W	선박 투자 관리	S 696/2010
43X	싱가포르 거주 신탁 수익자	-
43Y	항공기 임대 회사	S 566/2008
43Z	항공기 투자 관리	S 565/2008
43ZA	컨테이너 투자 기업	-
43ZB	컨테이너 투자 관리	S 697/2010
43ZC	승인된 보험 중개인	S 136/2009
43ZD	적격 등록 사업 신탁 또는 회사 관리 수입	S 155/2009
43ZE	선박 중개인 및 운임 선도 거래(forward freight agreement) (2011년 5월 31일까지)	-
43ZF	운송 관련 지원 서비스	S 4/2012
43ZG	승인된 벤처 캐피탈 펀드 관리 회사	-
43ZH	국제 성장 회사(2017년 8월 31일까지)	-
43ZI	지적재산권 수입	-

자료: CCH(2019/20), pp. 721~722.

싱가포르의 금융센터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장관의 규정에 따라 10%(혹은 5%)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이 된다.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은 소득으로 인한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에도 주주 배당금에 대한 과세 역시 면제된다.<sup>98)</sup> 현재 회사가 법인세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사업과 법인세 정규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는 관련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sup>99)</sup>

#### 나. 경제개발특례법에 따른 조세혜택제도

경제개발특례법은 싱가포르의 경제 및 산업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개발특례법에 따른 조세특례제도는 오직 회사만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갖춘 회사가 신청을 하면 재무부 장관은 회사가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혹은 관련 기술이 싱가포르의 경제 또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경제개발특례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례제도는 다음과 같다.<sup>100)</sup>

- 시장개척자 특례제도(pioneer incentives)
-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IA)
- 개발 및 확장 특례제도(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DEI)
- 생산 설비를 위한 외국 차입금(foreign loans for productive equipment)
- 로열티, 수수료 및 개발 기여금
- 통합 투자공제(integrated investment allowances, IIA)

##### 1) 시장개척자 특례제도(pioneer incentives)<sup>101)</sup>

시장개척 사업 또는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시장개척자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장개척 사업은 일반적으로 향후 개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싱가포르 내에서 충분한 규모로 수행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동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최소 SGD 100만 투자 지출 요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건은 삭제되었다. 다만, 시장개척자 지위를 얻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98) Income Tax Act section 13B.

99) Income Tax Act section 37B.

100) CCH(2019/20), p. 784.

101)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 검색일자: 2020. 8. 12.

- 제품 유형, 투자수준, 기술 등. 경제개발청(EDB)은 싱가포르에 상업적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특례제도를 부여한다.
- 제품이 아직 싱가포르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 고정투자액이 적더라도 전문화되고 새로운 첨단 기술 제품을 제조하는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그러나 경제개발청(EDB)은 첨단 기술을 가지지 않은 전통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계 리더인 경우에는 시장개척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개척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5년에서 10년간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시장개척자 지위 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적용가능하다. 또한, 첨단 기술, 고도투자, 대규모 기술과 긴 구상기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에는 연장된 특례기간이 적용된다. 동 특례제도는 기업이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한 수량을 생산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또한, 2004년 2월 27일부터는 경제개발청이 승인한 전략적 시장개척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간 세금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시장개척 서비스 회사(pioneer service companies) 관련

시장개척 서비스 회사는 적격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해 승인일로부터 15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받는다. 적격 서비스란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 실험실, 컨설팅 및 연구 개발 활동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및 기술
- 컴퓨터 기반 및 컴퓨터 관련
- 의료
- 오락, 레저 및 레크레이션
- 창고업
- 금융
- 사업 컨설팅 및 관리 및 전문가
- 국제무역
- 벤처 캐피탈
- 산업 디자인의 개발 및 생산
- 교육
- 전시회 및 컨퍼런스 운영 및 관리

- 대중 고속 교통체계의 관리 또는 운영
- 경매 전문 회사
- 개인 박물관

벤처 캐피탈 펀드 관리 회사의 시장개척자 특례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다만, 이미 승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연계무역(countertrade) 관련

1986년 5월 30일부터 연계무역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시장개척 서비스 회사 관련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계무역 활동에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별도의 회사를 구성하고, 국제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일정한 특수 무역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재정적 또는 물리적으로 상품의 이동이 싱가포르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 2) 투자공제<sup>102)</sup>

투자공제는 선술한 시장개척자 특례제도와 현재는 폐지된 수출 특례제도의 대안이 되는 특례제도다. 이는 제조, 기술 및 특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가지는 회사(특히 긴 구상단계를 가진), 자본 집약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 승인된 확장, 업그레이드, 다각화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회사가 해당 투자공제의 대상이 된다.<sup>103)</sup>

회사는 다음의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본지출액에 대해 투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특정 물품의 제조 또는 제조시설 확충
- 특수 엔지니어링 또는 전문 서비스 공급
- R&D
- 공사 운영
- 물 소비 절약
-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적격 활동 관련
- 싱가포르 내 관광산업 홍보
- 우주위성 운영

102) CCH(2019/20), pp. 793~795.

103)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 nkresolver/static/cta\\_sg](https://research.ibfd.org/#/doc?url=/li nkresolver/static/cta_sg), 검색일자: 2020. 8. 12.

-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sup>104)</sup>

회사는 상기 프로젝트 유형과 같은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시설 및 기계장치 공장을 위한 고정자본지출액에 대해서 투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100%를 초과하지 못하며, 투자공제액은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해서 공제된다. 미사용 자본공제와 달리 미사용된 투자공제액은 무기한으로 연장되어 미래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주주요건과 동일 사업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다.

고정자본지출액은 투자공제가 가능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적용하여야 한다. 2007년 2월 15일 이후 할부 구매(hire purchase)로 취득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되었다. 공제가 가능한 시점은 “투자일”로 회사가 경제개발청으로부터 투자공제를 위한 승인을 얻은 시점이다.

### 3) 개발 및 확장 특례제도(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개발 및 확장 특례제도는 앞서 서술한 시장개척자 특례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세혜택제도이다. 적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개발 및 확장 회사로 승인되며, 적격 활동으로부터 조세 감면 기간 동안 창출한 확장소득에 대해 5%의 감면된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확장소득(expansion income)은 적격 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서 평균소득(적격 활동 개시일 전 3년간 창출된 총소득의 1/3)을 초과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적격 활동이란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특정 산업으로부터의 제품 제조 또는 제조 시설의 확충
- 소득세법 제16조에 정의된 활동 또는 R&D 활동<sup>105)</sup>
- 소득세법 제191조에 제시된 기타 서비스 및 활동(주로 운송업,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말함)

처음 해당 특례제도 신청 시 감면된 세율은 10년간 적용가능하며, 이는 한번에 5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4)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초기 5년 기간 동안 공제가 허용되었으나, 2015년 3월 1일 이후에 Green Data Centres제도와 혼합되어 “투자공제-에너지 효율성 제도”로 일컬어진다. 해당 제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105) 2017년 7월 1일 승인된 새로운 조세혜택을 위해 개발 및 확장 특례제도의 범위에서 제거된 R&D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 4) 생산설비를 위한 외국차입금

사업용 생산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차입을 자금을 차입하는 회사는 해당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 특례제도에 따라서 외국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대출자(borrower)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거나 감면된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5년 2월 24일 이전에는 해당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대출 규모액은 최소 SGD 200,000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24일 이후에는 대출 최소 규모액이 SGD 2천만 이상이어야 하나,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106) 차입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는 이상 해당 차입금을 통해 취득한 생산설비는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처분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법상 동 특례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5.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이전 챕터에서는 전체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과정 중 과세가능 소득 이전 단계를 설명하였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과세가능 소득 이후 단계인 소득감면,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 계산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후술하는 소득감면, 세액공제 및 감면 모두 조세혜택의 일부 내용이지만 계산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해당 챕터에서 다루었다.

〈표 II-6〉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과정

과세가능 소득(Chargeable income(before exempt amount), Assessable income)
(-) 부분 소득감면
(-) 신생기업을 위한 소득감면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after exempt amount))
(×) 법인세율 17%
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
(-) 세액 리베이트
순 납부세액(Net tax payable) / (repayable)
(-) 기 납부세액(예: 예상과세소득 신고분)
차감 납부할 세액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BTC 2020 FORM 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6) Income Tax Act section 15(1) 및 15(2)

## 가. 소득감면

### 1) 신생기업을 위한 소득감면제도<sup>107)</sup>

신생기업을 위한 소득감면제도는 새로운 창업회사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① 주요활동이 투자 지주회사인 기업 ② 매각, 투자 또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를 제외한 모든 신생기업에 적용이 되며, 감면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싱가포르에 설립되어야 함
- 회사는 소득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기간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함
- 회사의 총자본 주식의 20인 이하의 주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유되어야 함
  - 모든 주주가 개인이거나
  -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주주가 회사의 보통주식 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경우

신생기업을 위한 소득감면제도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적인 3개 과세연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네 번째 사업연도부터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부분소득감면제도(partial tax exemption)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8년 예산법에서는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와 감면율을 2020년부터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연도 2020년 이후

- 최초 SGD 10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sup>108)</sup>의 75% 감면
- 다음 SGD 10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의 50% 추가감면

#### 과세연도 2019년 이전

- 최초 SGD 10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의 전액 감면
- 다음 SGD 20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의 50% 추가감면

변경된 법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개시되는 3개의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SGD 200,000 중

107)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web/pages/destination.aspx?id=1525&cmsMode=Preview&langtype=1033#title3>, 검색일자 : 2020. 7. 23.

108) 정상과세소득금액(normal chargeable income)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말함

감면액은 매년 SGD 125,000(=(SGD 100,000×75%) + (SGD 100,000×50%))이다. 과거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시된 이후 3개의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SGD 300,000에 대해 SGD 200,000(=(SGD 100,000×100%) + (SGD 200,000×50%))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다.

<b>예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2019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신생기업을 위한 소득감면제도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음</li> <li>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한 소득감면을 신청할 경우 최대 감면금액은?</li> </ul>				
<b>해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과세연도에 대한 정상소득감면액은 다음과 같다.</li> </ul>				
과세연도	정상과세소득금액	감면율	감면금액	최대 감면액
2019	최초 SGD 100,000	100%	SGD 100,000	SGD 200,000
	다음 SGD 200,000	50%	SGD 100,000	
2020	최초 SGD 100,000	75%	SGD 75,000	SGD 125,000
	다음 SGD 100,000	50%	SGD 50,000	
2021	최초 SGD 100,000	75%	SGD 75,000	SGD 125,000
	다음 SGD 100,000	50%	SGD 50,000	
합계				SGD 4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예산법에서 발표된 개정사항은 2020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따라서 2019년도 과세연도에 최대 감면액 계산은 이전규정에 따름</li> </ul>				

## 2) 부분소득감면제도(partial tax exemption)<sup>109)</sup>

보증책임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는 상기 신규기업을 위한 소득감면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부분소득감면제도(partial tax exemption)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2018년 예산법 발표를 통해 소득의 범위와 감면율이 조정되었으며, 개정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 과세연도 2020년 이후

- 최초 SGD 1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sup>110)</sup>의 75% 감면

109)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web/pages/destination.aspx?id=1525&cmsMode=Preview&langtype=1033#title3>, 검색일자: 2020. 7. 23.

110) 정상과세소득금액(normal chargeable income)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말함

- 다음 SGD 19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의 50% 추가감면

과세연도 2019년 이전

- 최초 SGD 1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의 75% 감면
- 다음 SGD 290,000까지의 정상과세소득금액의 50% 추가감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는 과세소득 SGD 200,000 중 최대 SGD 102,500(=(SGD 10,000×75%) + (SGD 190,000×50%)) 소득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SGD 300,000에 대해 SGD 152,500(=(SGD 10,000×100%) + (SGD 290,000×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나. 세율

2010년 과세연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회사의 법인세율은 17%이다. 과거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표 II-7>과 같으며, 법인세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6년도부터 인하되었다.

<표 II-7> 싱가포르 과세연도별 법인세율

과세연도	법인세율
2010년 이후	17%
2008년 ~ 2009년	18%
2005년 ~ 2007년	20%
2003년 ~ 2004년	22%
2002년	24.5%
2001년	25.5%
1997년 ~ 2000년	26%
1994년 ~ 1996년	27%
1993년	30%
1991년 ~ 1992년	31%
1990년	32%
1987년 ~ 1989년	33%
1986년 이전	40%

자료: CCH(2019/20), p. 32.

## 다. 세액공제 및 감면

### 1) 외국납부세액<sup>111)</sup>

싱가포르 내국법인이 벌어들인 국외소득은 이중과세될 여지가 있다. 즉, 첫 번째로 지급 시 외국 관할권에서 과세되고, 두 번째로 싱가포르에 송금될 시에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중세액공제(Double Tax Relief, DTR)와 일방세액공제(Unilateral Tax Credit, UTC)가 있다.

이중세액공제는 국가 간 상호 이중과세회피 협정(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싱가포르와 동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에 따라 외국에 납부된 세액은 해당 세액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과세되는 세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된다. 일방세액공제는 2009년 부과연도부터 이중과세회피 협정을 맺고 있지 않는 국가로부터 싱가포르 거주법인이 소득을 송금받을 때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 중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법인에 해당하여야 함
- 외국 관할권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함
- 싱가포르 과세소득에 해당하여야 함

또한 일반 법인세 신고서(Form C)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만이 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회사에 보관되어야 한다. 관련 증빙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세액이 납부된 외국 관할권
- 소득의 원천(특성)
-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 외국 관할권에 소재한 PE를 통해서 창출된 소득 여부
- 지급자 이름
- 원천징수 영수증상 날짜
- 총수입액, 원천징수세율 및 외화 원천징수세액(환산 SGD 금액 포함)
- 세액이 원천징수된다는 이중과세회피 협정상 조문

111)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Reliefs/Foreign-Tax-Credit/>, 검색일자: 2020. 7. 31.

- 원천징수 영수증

## 2) 세액 리베이트(tax rebate)

세액 리베이트제도는 싱가포르의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과세연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리베이트되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환급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는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환급해주기 때문에 추정청구가능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및 소득세 신고서(Form C-S/C)를 제출할 때 회사 입장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표 II-8〉 싱가포르 법인세 환급률

과세연도	법인세 환급률	한도액
2020년	25%	SGD 15,000
2019년	20%	SGD 10,000
2018년	40%	SGD 15,000
2017년	50%	SGD 25,000
2016년	50%	SGD 20,000
2015년	30%	SGD 30,000
2014년	30%	SGD 30,000
2013년	30%	SGD 30,00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Tax-Rates/Corporate-Tax-Rates/#title2>, 검색일자: 2020. 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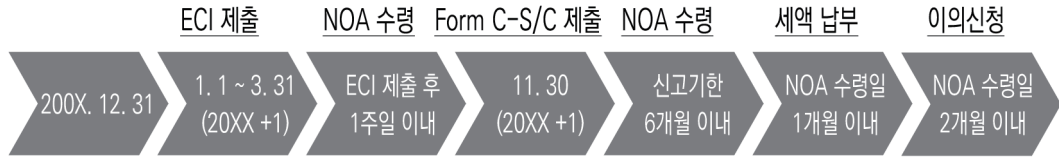
## 6. 신고와 납부

본 절에서는 법인소득세와 관련된 신고·납부 행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신고·납부 행정제도는 후술되는 개인소득세 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대략적으로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일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법인은 3개월 이내에 예상과세소득(ECI)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확인한 후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를 발송하며, 회사는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예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sup>112)</sup> 이후 11월 말까지 Form C-S(약식) 또는 Form C 제출을 통해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세액이 예상과세소득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세액은 자동으로 환급되며, 많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회사는 NOA 수령 후 1개월 이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NOA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그림 II-4] 법인세 신고 일정(회계연도 말일 12월 31일인 경우)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_the\\_basics\\_of\\_Corporate\\_Income\\_Tax/Key%20Milestones.pdf](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_the_basics_of_Corporate_Income_Tax/Key%20Milestones.pdf), 검색일자: 2020. 7. 29.

### 가. 과세기간 및 부과연도<sup>113)</sup>

싱가포르에서는 회사의 이전 회계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의 회계연도가 소득을 벌어들인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면 법인세가 부과되는 연도(Year of Assessment, YA)는 그 다음 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연도는 2020년이다. 다시 말해 2020년도는 소득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연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계연도는 과세기간(basis period)으로 말하며, 부과연도의 이전 연도의 12개월을 말한다.

<표 II-9> 과세기간 및 부과연도 예시

회계연도 말	과세기간	부과연도
매년 12월 31일	2019. 1. 1. ~ 2019. 12. 31.	2020
매년 3월 31일	2018. 4. 1. ~ 2019. 3. 31.	2020
매년 6월 30일	2018. 7. 1. ~ 2019. 6. 30.	202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Overview-of-Corporate-Income-Tax/>, 검색일자: 2020. 7. 22.

112) GIRO를 통해 할부납부한 경우를 제외함

113)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Overview-of-Corporate-Income-Tax/>, 검색일자: 2020. 7. 22.

## 나. 신고

### 1) 예상과세소득 신고

예상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이란 부과연도의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을 제한 회사의 예상과세소득을 말한다.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상과세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회계연도 연 매출액이 SGD 500만 이하이고<sup>114)</sup>, 예상과세소득(ECI)이 0원인 경우<sup>115)</sup>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예상과세소득 신고를 면제받은 특수 법인은 다음과 같다.

- 선박 반환을 위한 외국 선주회사
- 외국 대학
- 지정된 신탁 및 승인된 CPF 신탁 유닛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적용받는 부동산 투자 신탁
- 사전 심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예상과세소득 신고를 면제받은 회사

회사의 과세기간에 따른 예상과세소득 신고기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II-10〉 과세기간에 따른 예상과세소득 신고기한

회계연도 말	과세기간	부과연도	ECI 신고기한
매년 12월 31일	2019. 1. 1. ~ 2019. 12. 31.	2020	2020.3.31.
매년 3월 31일	2018. 4. 1. ~ 2019. 3. 31.	2020	2019.6.30.
매년 6월 30일	2018. 7. 1. ~ 2019. 6. 30.	2020	2019.10.31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Estimated-Chargeable-Income-ECI-/Definition-of-Estimated-Chargeable-Income-ECI-and-When-to-File/>, 검색일자: 2020. 7. 22.

부과연도 2020년부터 예정과세소득은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었다. 회사가 예정과세소득을 신고한 이후에 국세청은 이를 확인한 후 부과 통지(notice of assessment, NOA)를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그러나 회사의 예정과세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국세청은 별도로 부과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로를 통해 할부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는 국세청의 부과 통지를

114) 2017년 6월 또는 그 이전에 끝나는 회계 연도의 경우 ECI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액은 SGD 100만이었음

115) 예상과세소득은 부분소득감면 및 신생기업을 위한 소득감면을 적용받기 전 금액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예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과세소득 신고세액도 지로를 통해 분납할 수 있다.<sup>116)</sup> 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정과세소득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3주 전에 지로 계약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지로 계약이 승인되지 않으면 회사는 분납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기 신고 장려를 위해 예정과세소득을 빨리 신고할수록 분할납부 기간이 더 길어진다.

〈표 II-11〉 예정과세소득 신고일에 따른 분할납부 혜택

예정과세소득 신고일		분할납부 개월 수	연장 분할납부 개월 수 <sup>1)</sup>
회계연도 종료일	1개월 이내	10	12
	2개월 이내	8	10
	3개월 이내	6	8
	3개월 경과	-	-

주: 1) 2020년 2월 18일 발표한 2020 예산법에서 COVID-19 일시적 특례로 예정과세소득을 2020년 2월 19일 이전에 신고하고 2020년 3월에 지속적으로 할부로 납부하는 회사는 2개월의 연장기간을 더 부여하였음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Overview-of-Corporate-Income-Tax/>, 검색일자: 2020. 7. 22.

## 2) 정기신고<sup>117)</sup>

싱가포르 법인은 과세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의 11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싱가포르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법인소득세신고서(Form C)와 함께 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 예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 과세기간부터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약식법인세 신고(Form C-S)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 요건이 충족된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3페이지 분량의 약식법인세 신고서((Form C-S)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싱가포르 법인이어야 함
- 회사의 주요 연간 매출액이 SGD 5,000,000 이하여야 함<sup>118)</sup>(이자 등과 같이 별도의 원

116) 참고로, 싱가포르의 대부분 납세자는 지로(General Interbank Recurring Order, GIRO)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117) T. Toryanik,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29 July 2020).

118) 2017년 과세연도 이전에는 기준금액이 SGD 1,000,000 이하였음

천 수입은 제외한 금액)

- 17%의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을 벌어들이고
-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자본손실 및 사업손실에 대한 소급공제, 그룹 공제(group relief), 투자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동 신고서에는 법인세 신고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서 양식은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Forms/Businesses/Corporate-Tax-forms/>)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별첨]에 첨부하였다.

참고로 Form C-S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회사가 연간 수익이 SGD 200,000인 경우에는 Form C-S(Lite) 버전의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간단한 세금 문제를 가진 회사를 위해 6개의 필수 필드만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Form C-S의 단순화 버전이다.<sup>119)</sup>

2015년 과세연도부터 모든 회사가 전자신고(E-filing)를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예산법에서는 예정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신고와 약식법인세 신고(Form C-S)를 포함하여 모든 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과세연도부터는 싱가포르 모든 회사가 전자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11월 30일이다.<sup>120)</sup>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회계장부, 기타 관련 문서, 계좌정보, 자산·부채 명세 및 그 외 구체적인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sup>121)</sup> 납세자의 대표이사, 대리인, 신탁인, 후견인 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대리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sup>122)</sup> 또한, 사업을 중단한 회사는 온라인(myTax Portal)을 통해서 법인세 신고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19)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Taxes-Form-C-S-Form-C-/Overview-of-Form-C-S/-C/#title5>, 검색일자: 2020. 8. 12.

120) 2020년 과세기간 이전에는 전자신고의 제출기한은 12월 15일이었음.

121) Income Tax Act section 64,65,65A.

122) Income Tax Act section 69.

〈표 II-12〉 법인세 신고 유형

	Form C	Form C-S	
		Form C-S	Form C-S(Lite)
회사요건	모든 회사	싱가포르 내국법인 및 연간수입 SGD 5,000,000 이하	싱가포르 내국법인 및 연간수입 SGD 200,000 이하
부속 서류 제출	재무제표 및 세액계산서 제출 필요	재무제표 및 세액계산서 제출 필요없음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모든 소득이 17% 세율로 과세</li> <li>• 해당 부과연도의 다음의 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li> <li>- 그룹 공제</li> <li>- 투자공제</li> <li>- 외국납부세액공제 등</li> </ul> </li> </ul>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_Taxes\\_\(Form\\_C-S\\_Form\\_C\)/Overview%20of%20Types%20of%20Income%20Tax%20Return.pdf](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_Taxes_(Form_C-S_Form_C)/Overview%20of%20Types%20of%20Income%20Tax%20Return.pdf), 검색일자: 2020. 8. 12.

#### 다. 결정(assessments)<sup>123)</sup>

결정(assessments)이란 납세의무를 정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행위(처분)을 말한다.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기반으로 소득세 최고책임자(Comptroller)는 세액을 결정한다.<sup>124)</sup>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면 최고책임자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 세액을 결정하여 송부한다. 부과제척기간(time limit for issuing assessments)은 신고기한이 속한 연도 말로부터 4년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또는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25)</sup>

결정 통지는 납세자에 따라 직접, 우편,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자 서비스를 통해 송부된다. 최고책임자는 납세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없을 경우라도 결정결과를 고지해야 한다.<sup>126)</sup> 이는 미처리 세금 손실 또는 공제액이 존재하는 납세자가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사용된다.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최고책임자의 판단으로 납세자가 부정 확하고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최고책임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123) CCH(2019/20), pp. 693~700.

124) Income Tax Act section 72.

125) Income Tax Act section 74.

126) Income Tax Act section 76(1)(b).

있다.<sup>127)</sup> 추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 최근 이전연도의 신고서
-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이 있는 이전연도의 납세자 사정/상황
- 납세자 지역과 관련된 상황과 평판
- 납세자 동종 사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 개인적 정보, 관찰 및 납세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최고책임자가 이용 가능한 기타 정보

최고책임자는 추계에 대한 정보 원천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해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sup>128)</sup> 만약 납세자가 질병 및 싱가포르 내 부재의 사유 일 경우에는 최고책임자는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고책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문서 요구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지라도 결정세액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납부되어야 한다.<sup>129)</sup>

최고책임자가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할 경우 고지서를 수정하여 발급하게 되며, 기각할 경우에는 수정거부통지서(Notice of Refusal to Amend)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이 수정거부통지서를 전달받은 후에야 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에 항소할 수 있다.

## 라. 납부 및 환급

회사가 국세청의 부과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불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국세청으로 부과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납부기한 안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의 벌금이 세액에 추가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미납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존재하지 않으며, 세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형태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최대 징역형 5년, 최고 SGD 50,000의 벌금 및 납부 세액의 4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1편 제II장 제5절 세무행정 파트 가산세 규정에 서술하였다.

127) Income Tax Act section 72(3).

128) Income Tax Act section 76(3).

129) Income Tax Act section 85(1).

예상과세소득 신고 시 산출한 세액과 정기 신고 시 산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초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초과분은 환불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SGD 15 이상의 세액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이 지체된 환급에 대해서는 연 5.35%의 이자를 지불한다. SGD 15 미만의 세액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고 추후 발생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7. 원천징수 의무

싱가포르 거주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같은 편 제Ⅲ장 국제조세 파트에서 다루었다. 이 외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싱가포르 거주법인이거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별첨] 법인소득세 주요 신고서식 - Form C

<p><b>2020</b></p> <p>Comptroller of Income Tax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1800-3568522 www.iras.gov.sg</p>	<p>30001</p> <p><b>FORM C</b></p> <p><b>INCOME TAX RETURN</b> (The Income Tax Act Cap. 134)</p>	<p>Tax Reference No.: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height: 15px;"></span></p> <p><b>YEAR OF ASSESSMENT 2020</b> for the financial period ending in 2019</p> <p>Date of Issue 30/04/2020</p>						
<b>COMPANY'S PARTICULARS</b>								
<p>This Form may take you 20 minutes to complete.</p> <p>Please have the following documents to complete the Form: (i) Financial Statements (ii) Tax Computation (iii) Detailed Profit and Loss Statement</p> <p>Please use this Form C to declare the company's income for the financial period ending in 2019.</p> <p>The completed Form C and other relevant Forms must be submitted by 30 November 2020 together wi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companies qualifying for an audit exemption under the Companies Act);</li> <li>• Detailed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li> <li>• Tax Computation and Supporting Schedules showing how the tax payable is arrived at.</li> </ul> <p style="text-align: right;"><b>NG WAI CHOONG</b> Comptroller of Income Tax</p>								
Important : Please read the Explanatory Notes before completing the Form								
<p><b>I Dormant Company only</b></p> <p>If the company was dormant in the financial period ending in 2019, please click on the Box 1 and Box 2, if applicable.</p> <p>1 <input type="checkbox"/> The company had no income and did not carry on any business in the financial period ending in 2019.</p> <p>2 <input type="checkbox"/> The company did not own any investment (e.g. real properties, fixed deposit and foreign shares) in the financial period ending in 2019.</p>								
<p><b>II Financial Statements</b> -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p> <p>1 Does the company meet the criteria in Section 205C of the Companies Act which exempts its financial statements from being audited?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span></p> <p>2 Please click on the type of financial statements the company is submitting <input type="checkbox"/> Audited <input type="checkbox"/> Unaudited</p> <p>3 If the company is submitting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did the auditors make a qualificat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span></p>								
<p><b>III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b> - The following must be completed to claim for the exemption for new start-ups</p> <p>1 The company satisfies all conditions to qualify for the tax exemption scheme for new start-up companies.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span></p> <p>2 The company's first Year of Assessment (YA) after incorporatio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50px; height: 15px;"></span></p>								
<p><b>IV Declaration by person filing the Return</b></p> <p>I declare that this Return gives a full and true account of the whole of the company's income for the financial period ending in 2019.</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th> <th style="width: 33%;"></th> <th style="width: 33%;"></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Name</td> <td style="text-align: center;">Designation</td> <td style="text-align: center;">Contact number</td> </tr> </tbody> </table>						Name	Designation	Contact number
Name	Designation	Contact number						
There are penalties for failing to furnish a tax return or furnishing an incorrect tax return.								
<p>For Office Use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1 301</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2 AC</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3 TC</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4 RR</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5 NS</span></p>								

30002

V Assessment Information			
<b>1 Income Accruing in/ Derived from Singapore (before Exempt Amount)</b>			
			Amount (S\$)
1a	Trade/ Business Income - Adjusted Profit/ Loss after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b/f,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and Unutilised Losses b/f - Section 10(1)(a)	1a	<input type="text"/> +
1b	Interest/ Discounts - Section 10(1)(d)	1b	<input type="text"/> +
1c	Trust Distribution (Including REIT Distribution) - Section 10(1)(e) (Attach a list showing details of distributions received)	1c	<input type="text"/> +
1d	Rent, Premiums and any other Profits arising from Property - Section 10(1)(f)	1d	<input type="text"/> +
1e	Royalties - Section 10(1)(f)	1e	<input type="text"/> +
1f	Other Income not falling under Boxes 1a to 1e - Section 10(1)(g)	1f	<input type="text"/> +
<hr/>			
<b>2 Foreign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before Exempt Amount)</b> (Excluding Income exempted under the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Scheme)			
	Nature of Income	Country	Amount (S\$)
2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2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2c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2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2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f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hr/>			
<b>3 Total of Boxes 1a to 2f</b>			<b>3</b> <input type="text"/>
<hr/>			
<b>4 Loss Transferred to Claimant Company</b>			<b>4</b> <input type="text"/>
<hr/>			
<b>5 Carry-Back of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Losses</b>			
<small>To complete only if the company has claimed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Losses against assessable income of preceding YA(s). See page 4 of explanatory notes for more details. Election for Carry-Back is irrevocable. Please submit revised tax computation(s) for the relevant preceding YA(s).</small>			
5a	Carry-Back of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Losses	5a	<input type="text"/> Amount (S\$)
5b	Is there a change in the principal activities of the company during the basis periods relating to the current and immediate preceding YAs?	5b	<input type="checkbox"/> (Yes = 1 No = 2)
5c	Is there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ompany's ultimate shareholders and their shareholdings as at the relevant dates?	5c	<input type="checkbox"/> (Yes = 1 No = 2)

30003

		Amount (S\$)	
<b>6 Investment Allowances</b>			
<b>6a</b>	Amount unutilised b/f	<b>6a</b>	<input type="text" value="0"/>
<b>6b</b>	Amount for current YA	<b>6b</b>	<input type="text" value="0"/>
<b>6c</b>	Amount utilised	<b>6c</b>	<input type="text" value="0"/>
<b>6d</b>	Amount unutilised c/f	<b>6d</b>	<input type="text" value="0"/>
<hr/>			
<b>7</b>	<b>Chargeable Income (before Exempt Amount)</b> (See Annex on page 9 of explanatory notes)	<b>7</b>	<input type="text" value="0"/> (If negative, enter "0")
<hr/>			
<b>8</b>	<b>Loss Claimed from Transferor Company</b>	<b>8</b>	<input type="text" value="0"/>
<hr/>			
<b>9</b>	<b>Chargeable Income after Group Relief (before Exempt Amount) (Box 7 - Box 8)</b> (See Annex on page 9 of explanatory notes)	<b>9</b>	<input type="text" value="0"/> (If negative, enter "0")
<hr/>			
<b>10 Chargeable Income in Box 9 above to be taxed at rates other than 17%</b>			
	Type of Tax Incentive	Tax Rate (%)	Amount (S\$)
<b>10a</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b>10b</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b>10c</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b>10d</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b>10e</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hr/>			
<b>11 Tax Set-Offs</b>			<b>S\$ &amp; cts</b>
<b>11a</b>	Double Taxation Relief - Normal Rate	<b>11a</b>	<input type="text" value="0"/>
<b>11b</b>	Double Taxation Relief - Concessionary Rate	<b>11b</b>	<input type="text" value="0"/>
<b>11c</b>	Unilateral Tax Credit	<b>11c</b>	<input type="text" value="0"/>
<b>11d</b>	Foreign Tax Credit Pooling	<b>11d</b>	<input type="text" value="0"/>
<b>11e</b>	Malaysian Pioneer Relief	<b>11e</b>	<input type="text" value="0"/>
<hr/>			
<b>12 Tax Deducted at Source</b>			<b>S\$ &amp; cts</b>
<b>12a</b>	Tax Deducted from Interest/ Distribution from REIT	<b>12a</b>	<input type="text" value="0"/>
<b>12b</b>	Tax Deducted from Income other than Interest/ Distribution from REIT	<b>12b</b>	<input type="text" value="0"/>
<hr/>			
<b>13 Tax Payable/ Repayable</b>			<b>S\$ &amp; cts</b>
<b>13a</b>	Tax Payable/ Repayable before Remission/ Rebate	<b>13a</b>	<input type="text" value="0"/> (If repayable, enter negative value)
<b>13b</b>	Tax to be Remitted under Sections 92(1) and 92(2) (Do not include Corporate Income Tax Rebate)	<b>13b</b>	<input type="text" value="0"/>
<b>13c</b>	Tax Payable/ Repayable after Remission/ Rebate	<b>13c</b>	<input type="text" value="0"/> (If repayable, enter negative value)

30004

**14 Exempt Income/ Loss for Current YA**

Current year adjusted exempt income/ loss after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where applicable.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must be excluded

Type of Tax Incentive		Amount of Exempt Income/ Loss (S\$)	
14a	<input type="text"/>	14a	<input type="text"/>
14b	<input type="text"/>	14b	<input type="text"/>
14c	<input type="text"/>	14c	<input type="text"/>
14d	<input type="text"/>	14d	<input type="text"/>
14e	<input type="text"/>	14e	<input type="text"/>
14f	<input type="text"/>	14f	<input type="text"/>

**VI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15 Did the company claim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in Current YA in Part V? (If yes, please complete Boxes 15a and 15b) 15  Required Field

15a Is there a change in the principal activities of the company during the relevant dates? 15a

15b Is there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ompany's ultimate shareholders and their shareholdings as at the relevant dates? 15b

16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Losses/ Donations claimed where waiver of the shareholding test has been/ will be granted by IRAS. (To complete only if answer in Box 15b is "Yes") 16

	Concessory Rate (S\$) (Not applicable for Exempt Income/ Loss)		Normal Rate (S\$)	
17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b/f	17	<input type="text"/>	17	<input type="text"/>
18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18	<input type="text"/>	18	<input type="text"/>
19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c/f	19	<input type="text"/>	19	<input type="text"/>
20 Unutilised Losses b/f	20	<input type="text"/>	20	<input type="text"/>
21 Unutilised Losses c/f	21	<input type="text"/>	21	<input type="text"/>
22 Unutilised Donations b/f	22	<input type="text"/>	22	<input type="text"/>
23 Unutilised Donations c/f	23	<input type="text"/>	23	<input type="text"/>

**VII Other Information**

	(Yes = 1 No = 2)	If yes, give details:	Amount (S\$)
24 Income not previously reported (Please submit the relevant revised tax computation)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5 Receipts claimed as not taxable			
25a Gains on disposal of real estate/ shares/ investment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5b Other receipts (exclude one-tier exempt dividend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6 Expenses claimed on Non-Income Producing assets (Included in Boxes 1a to 2f)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7 Deferred Expenditure claimed in Boxes 1a to 2f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0005

<b>VIII Capital Allowances and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LIA) on New Assets</b>		Amount (S\$)
<b>28</b>	Qualifying cost of new assets acquired during the year for which capital allowances are claimed/ deferred to be claimed in future YAs	<input type="text"/> +
<b>28a</b>	Qualifying cost incurred during the year on the construction or renovation/ extension of approved building(s) or structure(s) for which LIA are claimed	<input type="text"/> +
<hr/>		
<b>IX Deduction Claimed under Section 14Q for Expenditure on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b> <small>(To complete if the company has claimed a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 (R&amp;R costs) on business premises under Section 14Q)</small>		Amount (S\$)
<b>29</b>	Qualifying R&R costs claimed during the year <small>(not exceeding \$300,000 during the relevant 3 consecutive basis periods)</small>	<input type="text"/> +
<b>29a</b>	Including the current YA, has the total claim on qualifying R&R costs during the relevant 3 consecutive basis periods <u>exceeded</u> \$300,000?	<input type="text"/> (Yes = 1 No = 2)
<b>29b</b>	Did the company cease the trade, profession or business for which a deduction of R&R costs was claimed during the current year?	<input type="text"/> (Yes = 1 No = 2)
<hr/>		
<b>X Withholding Tax for Non-Residents under Section 45/ 45A/ 45B/ 45D/ 45F/ 45GA/ 45H</b>		
<b>30</b>	Was there any amount paid or payable to non-residents falling under Section 45/ 45A/ 45B/ 45D/ 45F/ 45GA/ 45H of the Income Tax Act that is not specifically exempt from withholding tax (e.g. under any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the Income Tax Act, the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etc.)?	<input type="text"/> Required Field
<b>30a</b>	If yes, did the company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withhold tax on the payments?	<input type="text"/> (Yes = 1 No = 2)
<b>30b</b>	If the company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withhold tax, please state the reason(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hr/>		
<b>XI Related Party Transactions</b>		
<b>31</b>	Did the value of the company's related party transactions disclos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nancial period exceed S\$15 million? <small>(If yes, please submit the Form for Report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small>	<input type="text"/> Required Field
<hr/>		
<b>XII Data as shown in the Audited/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nancial period. All items must be completed. If not applicable, enter "0" in the box.</b>		Amount (S\$)
<b>32</b>	Revenue	<input type="text"/> +
<b>33</b>	Purchases	<input type="text"/> +
<b>34</b>	Gross Profit/ Loss	<input type="text"/> +
<b>35</b>	Inventories	<input type="text"/> +
<b>36</b>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small>(Excluding amounts in Boxes 37 and 38)</small>	<input type="text"/> +
<b>37</b>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input type="text"/> +
<b>38</b>	Head Office Expenses	<input type="text"/> +
<b>39</b>	Other Receivables	<input type="text"/> +
<b>40</b>	Trade Receivables	<input type="text"/> +
<b>41</b>	Trade Payables	<input type="text"/> +
<b>42</b>	Net Profit/ Loss before Tax	<input type="text"/> +

This Form may take you 10 minutes to complete.  
Please have the following documents to complete the Form:  
(i) Financial Statements (ii) Tax Computation (iii) Detailed Profit and Loss Statement

**YEAR OF ASSESSMENT 2020**

**ADDITIONAL INFORMATION ON INCOME AND DEDUCTIONS IN PART V TO XII OF FORM C (FORM IRIN 301)**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returned with Form C

Important : Please read the Explanatory Notes before completing the Form

Tax Ref No.

Name of Company

A Deductions Claimed Against Income		Amount (S\$)
1	Medical expenses (expenses incurred in or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medical treatment) - Section 14(5)	<input type="text"/> +
2	Total remuneration excluding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i.e. salaries, leave pay, commissions, bonuses, gratuities, allowances, CPF; excluding benefits-in-kind, medical expenses and cash allowances in lieu of medical expenses)	<input type="text"/> +
3	Deduction for cost o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P) (i.e. 100% base deduction - Section 14A)	<input type="text"/> +
4	Participation in approved local trade fairs - Section 14B	<input type="text"/> +
5	Participation in overseas trade fairs,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and investment study trips/ missions - Section 14B/ 14K	<input type="text"/> +
6	General provisions for doubtful debts and diminution in value of investments by banks or qualifying finance companies - Section 14I	<input type="text"/> +
7	Provision for impairment losses claimed by bank	<input type="text"/> +
8	Deduction for special reserve of Approved General Insurance - Section 14O	<input type="text"/> +
9	Deduction for expenditure incurred on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 - Section 14Q	<input type="text"/> +
10	Deduction for cost on IP In-Licensing (i.e. 100% base deduction - Section 14W/ 14WA)	<input type="text"/> +
11	Mergers and Acquisitions Allowance - Section 37L	<input type="text"/> +

B Current Year Capital Allowances Claimed as per Tax Computation		Amount (S\$)
<b>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b>		
12	Total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IA + AA + BA - BC)	<input type="text"/> +
<b>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b>		
13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IA)	<input type="text"/> +
14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s (AA)	<input type="text"/> +
<b>Capital Allowances</b>		
<b>Section</b>		<b>Total Allowances/ Charges (S\$)</b>
15	19 and 19A(2BAA)	<input type="text"/> +
16	19A(1) and 19A(2BAA)	<input type="text"/> +
17	19A(2), 19A(2BAA), 19A(3), 19A(4), 19A(10) and 19A(10A)	<input type="text"/> +
18	19B	<input type="text"/> +

30102

FORM IRIN 301

C Foreign Tax Paid on Foreign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Amount of Foreign Tax Paid (S\$ & cts)
	Nature of Income	Country	
19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a <input type="text" value="0"/> +
19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b <input type="text" value="0"/> +
19c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c <input type="text" value="0"/> +
19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d <input type="text" value="0"/> +
19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e <input type="text" value="0"/> +
19f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f <input type="text" value="0"/> +

D Exemption on Foreign Dividends, Branch Profits and Service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Nature of Income	Country	Headline tax rate (%)	Amount of income received in Singapore (Net of foreign tax paid/payable) S\$	Income subject to tax in the country from which it was received (Yes = 1 No = 2)	Income exempt from tax as a result of incentive granted by foreign jurisdiction* (Yes = 1 No = 2)
20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c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f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0"/>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o complete only if "NO" is indicated under the column "Income subject to tax in the country from which it was received"

E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mount (S\$)
21	Deduction for expenditure incurred on R&D - Total deduction under Section 14D	21 <input type="text"/> +
22	Section 14D deduction for expenditure incurred on R&D activities <u>undertaken in Singapore</u>	22 <input type="text"/> +
23	Staff costs and consumables for R&D activities <u>undertaken in Singapore</u> qualifying for Section 14DA (1)	23 <input type="text"/> +
24	Further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D project - Section 14E	24 <input type="text"/> +

F Exemption of Gains from Disposal of Ordinary shares in Another Company under Section 13Z		Amount (S\$)
25	The amount of gains derived from disposal of ordinary shares that meet the specified conditions	25 <input type="text"/> +

FORM FOR REPORT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Notes:

1. Complete this Form if the value of the company's 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 disclos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nancial period exceeds S\$15 million. <sup>(i)</sup>
2. You will need your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and details of RPT to complete this Form.
3. Submit this Form together with Form C.
4. This Form may take you 15 minutes to complete.

Name of Company

Tax Reference Number

Year of Assessment

Part 1 - Ultimate Holding Company

1a. Is the company the ultimate holding company of its group as at the end of the financial period?  
(If no, please complete 1b)  Yes  No

1b. Name of ultimate holding company  Country

Part 2 - Detail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items which are not applicable, please fill in zero.

	Income/ Receipt S\$	Expense/ Payment S\$
2a. Sale of goods to or purchase of goods from all related parti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b. Services rendered to or received from all related parti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c. Royalties, licence fees and other receipts/ paymen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to all related parties <sup>(i)</sup>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d. Interest from or to all related parti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e. Other transactions with all related parties not falling under Boxes 2a to 2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f. Total of Boxes 2a to 2e (auto comput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art 3 - Information on Sale of Goods and Provision of Services

Complete this section if you have declared Income/ Receipt in 2a or 2b

- 3a. Do the sale of goods and provision of services to related parties include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outside Singapore? (If yes, please complete 3b)  Yes  No
- 3b. Sale of goods and provision of services to the top 5 (based on total value) related parties outside Singapore:

	Name of related party	Country	Relationship Type <sup>(i)</sup>	Amount S\$
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v.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art 4 - Information on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Complete this section if you have declared Expense/ Payment in 2a or 2b.

4a. Do the purchase of goods and provision of services from related parties include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outside Singapore? (If yes, please complete 4b)  Yes  No

4b. Purchase of goods and provision of services from the top 5 (based on total value) related parties outside Singapore:

	Name of related party	Country	Relationship Type <sup>①</sup>	Amount S\$
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i.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v.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art 5 - Information on Loans and Non-Trade Amounts**

For items which are not applicable, please fill in zero.

	Opening balance S\$	Closing balance S\$
5a. Loans and non-trade amounts due from all related parti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b. Loans and non-trade amounts due to all related parti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I 개인소득세

### 1. 서론

싱가포르는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사항들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서 법인세와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는 거주자 판단 기준, 과세대상 소득 등 개인소득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싱가포르에 1년에 실제 총체류한 일수가 최소 183일 이상일 때 과세 목적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 및 전문업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 상속세<sup>130)</sup>는 존재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SGD 2만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SGD 2만을 초과하는 소득부터 최고 세율 구간인 SGD 32만 초과 소득 구간까지 2~2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원천지국 발생방식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거나 파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여기에 송금주의를 일부 도입하여 국내에서 수령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sup>131) 132)</sup> 그러나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 2. 납세의무자

#### 가. 거주자판정<sup>133)</sup>

싱가포르 국세청은 개인을 거주자, 일시적 거주자, 비거주자로 분류하며,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거주자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정의하고 있다. 이때 과세 목적상 거주자는 일시적인 부재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 1년에 실제 총체류한 일수가 최소 183일 이상일 때 과세 목적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그 날짜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개인이 싱가포르에서 하루 중 일부라도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 기준

130) 2008년 2월 15일 이후 폐지되었다.

131) 전병희 외, 『주요국의 조세제도 -싱가포르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 34.

132)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1.3. Type of Tax System,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1.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1.3).(accessed 30 July 2020)

133)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1.4.1. Definition of residenc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1.4.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1.4.1).(accessed 30 July 2020)

체류일에 반영된다.<sup>134)</sup> 이때 싱가포르 국세청은 거주자 판정을 위해 싱가포르 체류 일정표 작성과 함께 증빙자료로서 여권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2년에 걸쳐 183일 이상 연속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주할 경우 행정상 특례를 적용하여 2년 거주자로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혹은 세 번째 연도의 실제 존재일이 183일 미만이라도 두 번째 연도와의 연속 거주일이 거주자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거주자로 판단한다.

거주자로 판정된 자가 법인의 이사일 경우 해당 직책으로부터 기인한 소득은 법인의 거주자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기혼 여성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다.

#### 나. 납세자단위

소득세법 51(1)항에 근거하여 기혼자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분리되어 평가되며, 합산 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2005년에서 2015년까지는 소득세법 37D항을 통해 부부 간 공제 이전을 허용하였으나, 2016년 평가 연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남편과 별거하는 기혼 여성은 과세 목적상 단독 신고자로 간주된다.<sup>135)</sup> 미성년 자녀의 소득 또한 부모의 소득과는 별도로 평가된다.

### 3. 과세대상 소득

#### 가. 개요

싱가포르 소득세법 10(1)항에 따르면 소득세는 싱가포르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이나 싱가포르 외에 발생하고 국내에서 수령하는 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아래 제시하는 과세소득원에서 개인 수준의 소득을 집계하는 글로벌 소득세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총소득에 대해 단순누진세율로 과세된다.

134) Income Tax Act Section 2(2)

135)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1.4.2. Family Uni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1.4.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1.4.2).(accessed 30 July 2020)

- ① 근로소득
- ② 무역, 사업 혹은 전문직 업무를 통해 얻는 소득
- ③ 이자 및 배당 소득
- ④ 연금소득
- ⑤ 임대소득
- ⑥ 기타 이익 또는 수익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고정자산 매각 차익과 같은 자본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거래에 참여하는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자본거래는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거래로 간주된다. 소득세법 10(1)(g)항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반복적인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나. 근로소득<sup>136)</sup>

소득세법 10(2)항에서는 근로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이때 직원은 법인의 임원과 법정위원회의 의장 등 해당 조직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

- ① 근로(employment)와 관련하여 현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급되거나 부여된 급여, 휴가비, 요금, 커미션, 보너스, 봉사료, 복리후생비, 수당<sup>137)</sup>
- ②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지불한 음식, 의복 또는 임시 숙소의 가치
- ③ 고용주가 제공한 거주지의 연간 가치
- ④ 개인이 퇴직 시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가지는, 연금, 준비기금 혹은 공제조합의 합

소득원의 위치는 고용 위치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의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서 고용 위치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위치하는 곳이다. 소득세법 12(4)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근로에서 얻은 이익 또는 수익은 계약 및 소득 수령 장소, 고용주의 국적 및 거주지에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싱가포르 고용 중 발생한 해외 업무는 싱가포르 고용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136)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3.1.1. General,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3.1.1.\(accessed 30 July 2020\)](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3.1.1.(accessed 30 July 2020))

137) 소득세법 제15조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목적 이외의 상황으로 지출된 것으로 입증된 최저생활비, 출장비, 이동비, 접대비 이외의 수당

반면 싱가포르 고용주를 위해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싱가포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한다.

#### 다. 사업·전문업 소득<sup>138)</sup>

개인의 사업 활동에 따른 과세 처리는 일반적으로 법인세와 동일하며, 법인세법 제1조를 따른다. 아울러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특정 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근로소득 기준을 따르고, 독립적으로 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 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 기준을 따른다.

#### 라. 이자·배당소득

##### 1) 이자소득<sup>139)</sup>

##### 가) 원천소득

소득세법에 이자의 개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를 통해 ‘차용인이나 채무자의 돈을 사용하여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에 대한 채권자의 몫’으로 정의한다.<sup>140)</sup>

소득세법 12(6)항에서는 이자에 대한 원천소득 규칙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대출금 또는 부채의 이자와 관련하여서는 국외 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 혹은 고정사업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부담되는 이자를 국내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거나 채권자로부터 국내 차용인에게 전달된 차입 자본금 총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국내 거주자가 수취한 이자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며, 지급인의 위치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또한 동 조항은 대출이나 부채와 관련된 커미션, 수수료를 비롯한 모든 지급 사항과 계약, 관리, 보증 혹은 서비스 역시 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재무부는

138)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4. Business and professional incom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4).(accessed 30 July 2020)

139)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5.2. Interes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2).(accessed 30 July 2020)

140) In Schulze v. Bensted , 7 T.C. 30

1977년 12월 20일 언론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 ① 싱가포르 외부에서 외국인이 싱가포르 거주자, 고정사업장 또는 관계사를 대리하여 계약, 관리, 보증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 ② 계열사 간 거래 등 싱가포르 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또한 소득세법 12(6)(b)항에는 싱가포르에서 실행된 대출에 의해 형성된 자금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제 해당 조항을 적용한 적은 많지 않다.

#### 나) 소득 발생 기준 및 과세기간

이자소득은 만기 혹은 지불 가능한 날짜, 즉 수취인의 이자 수령 자격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 또는 대부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파생된 이자가 아닐 경우 비사업소득에 대한 이자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으로 간주한다.<sup>141)</sup> 이때 과세 기준연도는 비사업소득 관련 이자소득의 경우 평가연도의 전년도이며, 사업소득 관련 이자소득의 경우 평가연도 전년도의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이 된다.

#### 다) 비과세 이자소득

다음의 경우 수취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 ① 싱가포르 은행의 비거주자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② 싱가포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싱가포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개인이 소유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③ 비거주자 또는 싱가포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자로부터 이자를 취득하는 아시아 달러채를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 ④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싱가포르의 경제 또는 기술 개발 장려 및 강화와 관련한 대출에 대해 발생한 이자소득
- 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된 은행 또는 금융회사의 보통, 당좌 및 정기에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141) Income Tax Act Section 10(1)(a), (d)

⑥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채무 증권으로 발생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개인의 이자소득

## 2) 배당소득<sup>142)</sup>

싱가포르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주주귀속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거주자가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외 원천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되었다.<sup>143)</sup> 2003년 1월 1일<sup>144)</sup> 단일세율의 법인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국내 원천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주주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마. 연금소득<sup>145)</sup>

퇴직금과 공적 연금(pension)을 포함하는 모든 퇴직 급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세금 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소득세법 10(1)(3)항에 따라 과세된다. 이때 과세가 면제되는 연금 소득은 아래와 같다.

- ① 싱가포르 연금법 13(1)(h)항의 연금 금납화에 근거하여 수령한 일시금
- ② 중앙준비기금 및 지정기금(designated fund)으로부터 받는 퇴직 급여
- ③ 영연방 군 구성원 또는 그 부양가족 및 민방위 기구 구성원에게 지급된 장해보상금
- ④ 미망인 및 고아연금법에 따라 수령한 연금

사적 연금(annuity)의 경우 명시된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는다. 사적 연금이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일련의 연간 지불로 전환되는 자본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 프로그램, 증여 혹은 상속, 자산 판매 혹은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발생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사적 연금은 아래와 같다.

- ① 싱가포르 국내의 무역, 사업 또는 전문업에서 발생한 사적 연금소득은 불입금 총액에 대해 3%의 세금이 과세되며, 지급금이 불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액 전액에 과

142)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5.1. Dividend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1).(accessed 30 July 2020)

143) 전병희 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싱가포르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 43.

144)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전환기를 두어 이 기간 동안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 주주귀속제 유지가 가능하였다.

145)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3.3. Annu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3.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3.3).(accessed 30 July 2020)

세된다.

- ② 싱가포르의 민간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SRS(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에 의해 수령하는 연금
- ③ 직원 고용 중 혹은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대신하여 고용주가 가입한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

아울러 싱가포르 기업이 비거주자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

#### 바. 임대소득<sup>146)</sup>

임대소득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수령하는 임대료 전액 및 관련 지불금을 의미하며, 건물 임대, 유지 관리, 가구 및 부속품이 포함된다.<sup>147)</sup> 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과세하고, 고정자산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 주택의 경우 순 연간가치에 대해 과세하며, 순 연간가치는 보험, 이자, 유지보수 비용과 이에 대해 지불한 기타 공과금 및 세금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가치를 의미한다. 순 연간가치가 SGD 15만보다 작을 경우 비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면제는 한 거주지로 제한되므로, 개인이 둘 이상의 거주지를 소유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한 거주지만 비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기혼 여성이 보유한 재산은 남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지불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은 임시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싱가포르 원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싱가포르에서 수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의 임대료 및 리스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146)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5.4.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4).(accessed 30 July 2020)

147) 싱가포르 국세청, "Rental Income and Expense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Rental-Income-and-Expenses/>, 검색일자: 2020. 10. 15.

## 사. 기타소득

### 1) 할인발행 채무증권 발생 소득<sup>148)</sup>

국외에서 할인 발행된 채무증권과 관련한 소득은 부채가 상환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환 직전에 채무증권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이때 소득액은 채무증권의 만기일 또는 조기 상환 시 채무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채무증권의 첫 번째 보유자가 증권 발행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싱가포르 국내에서 개인에 의해 할인 발행된 채무증권의 경우 2016년 2월 17일 이후 비과세대상이다.

### 2) 상금 등<sup>149)</sup>

내기, 복권 및 경쟁으로 인한 경품과 상금의 이익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문학 관련 경연은 수혜자가 전문 작가, 시인, 극작가일 경우에만 과세된다. 또한 토토, 풋볼 풀, 싱가포르 스윙과 같은 공인된 도박과 복권의 당첨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4.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 가. 필요경비

#### 1) 사업·전문업 소득 관련<sup>150)</sup>

개인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앞 장에서 설명한 법인세 규정을 준용하며, 특정 기관에 소속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다음 항의 근로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해당 기준에 추가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외

148)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6.1. Discoun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6.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6.1).(accessed 30 July 2020)

149)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6.2. Priz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6.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6.2).(accessed 30 July 2020)

150)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4.2. Professional incom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4.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4.2).(accessed 30 July 2020)

에서 수강하는 단기연수에 대해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비용 처리 가능한 지출에는 여행비, 훈련비, 숙박비 및 기타 부대 지출이 포함된다.

2) 근로소득 관련<sup>151)</sup>

싱가포르 국내에서 전적으로 근로소득 발생 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바우처 등 증빙자료는 적절하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싱가포르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으로 자본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요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퇴직 전 고용주에게 충분한 기간 이전에 해당 비용에 대해 통보하지 않아 상환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표 II-13〉 근로소득 관련 공제 가능 필요경비

비용 유형	공제 허용 비용
출장비	- 근로지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과세대상자가 타 지역 근로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경비 - 납세자가 어느 곳에도 거주하지 않고 출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두 근로지 또는 근로지와 사업장 사이를 여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교육비	- 근로자가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생시키는 비용 - 개인적이며, 전적으로 소득 창출 목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소득세법 39(2)(k)에 따라 공제
전문가 협회 등 가입비용	- 개인의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 기관, 서적 및 저널의 연간 구독 및 가입으로 발생한 비용 - 전문 기관에 지불한 입장료는 미해당
근로자가 부담한 미환급 사업 경비	- 고용주로부터 환급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출한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사업비용  <b>예시</b>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요구하고 전기료 및 통신비와 같은 비용을 고용주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을 근로소득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제 청구는 재택근무 전과 후의 전기 및 통신 요금 청구서를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재택근무 전후 청구된 전기요금이 각각 SGD 50 및 SGD 60인 경우 SGD 10의 차액을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통신비의 경우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wi-fi 등을 설치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므로, 재택근무 이전에 설치된 wi-fi의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

151) 싱가포르 국세청, "Deductions on Employment Expense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Deductions-on-Employment-Expenses/#title3>, 검색일자: 2020. 8. 5.

〈표 II-13〉의 계속

비용 유형	공제 허용 비용
접대비	- 기업 및 사업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향응 비용 - 잠재 고객 대상이거나 비즈니스 요소가 부수적인 향응 활동 미해당

자료: IBFD, *Country Tax Guide - Singapore - 1. Individual Income Tax - 1.3.1.2. Costs incurred in earning employment income* 내용 저자 정리

### 3) 이자·배당소득 관련

이자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이자 지출 공제 및 조세 회피 규칙을 따르며, 소득 세법 제14조에 허용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 발생 기간 동안 전적으로 이자 발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개인 수준에서는 비과세된다.

### 4) 임대소득 관련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임차 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은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비용은 임대료의 15%로 간주되며, 세금 신고를 단순화하고 기록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전자신고 시 양식에 사전 작성되어 표시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소유자는 15%로 간주된 임대비용 외에도 임차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5%의 임대비용을 적용하는 대신 실제 발생한 임대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 계약서, 송장 및 영수증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sup>152)</sup> 개인이 1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임대주택에 15%의 임대비용과 실제 비용 중 하나의 선택권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여 임대비용을 청구해야 한다.<sup>153)</sup>

152) 싱가포르 국세청, "Rental Income and Expense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Rental-Income-and-Expenses/>, 검색일자: 2020. 10. 15.

153)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Individual Taxation - 1. Individual Income Tax - 1.5.4.4. Deduc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4.4.\(accessed 30 July 2020\)](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3.&refresh=1609904191981#ita_sg_s_1.5.4.4.(accessed%2030%20July%202020))

〈표 II-14〉 임대소득 관련 공제 가능 필요경비

비용 유형	공제 허용 비용	공제 비허용 비용
주택자금 대출	- 임대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또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	-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액 - 대출 연체 수수료
재산세	-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재산세	- 임대 기간 외에 발생한 재산세 - 연체 또는 재산세 미납 과태료 - 전년도 재산세 이월액
화재보험	- 화재 보험에 지불한 보험료	- 재산에 보장된 자본 합계
수리	- 건물을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임대 기간 동안 수행된 수리비용	- 임대 기간 외에 발생한 수리. - 부동산을 임대하기 전 초기 수리, 개조 및 추가, 변경으로 이어지는 수리
유지	- 도장, 해충 방제, 관리 회사에 대한 월간 관리 비용	- 개조, 추가, 재산 개조 비용 (예: 현관 확장, 배수구 설치 등)
임차인 확보 비용	-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대리인의 수수료, 광고, 법적 비용 및 인지세 - 추가 부동산의 첫 번째 세입자를 얻기 위한 에이전트의 수수료, 광고, 법적 비용 및 인지세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 수입에서 공제	- 첫 번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대리인의 수수료, 광고, 법적 비용 및 인지세
감독 및 관리 비용	- 부동산 중개인 및 관리 업체 등 제3자가 임대료의 즉각적인 지불 보장, 부동산의 유지 관리 및 유지, 세입자 질문 및 불만 처리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가구 및 부속품	- 가구, 비품 및 전기 제품 등을 원래 상태로 교체하는 비용 - 가구 대여 비용	- 가구, 비품 및 전기 제품의 감가상각비용 - 가구, 비품 및 전기 제품의 교체 및 추가 비용
인터넷 및 기타 시설 비용	- 세입자를 대신하여 지불하고, 세입자가 상환하지 않는 비용	- 세입자를 대신하여 지불하고, 세입자가 이후 상환하는 비용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비용		- 임대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비용을 다른 자산에서 청구할 수 없음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Rental Income and Expense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Rental-Income-and-Expenses> 내용 저자 정리, 검색일자: 2020. 10. 15.

### 나. 소득공제

공제 총액은 SGD 80,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싱가포르 거주자이면서 전년도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제가 허용된다. 예를 들면 2019년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관련 공제는 2020 평가연도부터 적용된다.<sup>154)</sup>

154) 싱가포르 국세청, "Tax Savings for Married Couples and Familie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Tax-Savings-for-Married-Couples-and-Families/>, 검색일자: 2020. 10. 19.

〈표 II-15〉 소득공제 종류 및 내용

공제 종류	상세 내용										
근로소득공제	근로 및 연금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함 (단위: SGD)										
		일반	장애인								
	55세 미만	1,000	4,000								
	55~59세	6,000	10,000								
	60세 이상	8,000	12,000								
배우자공제	① 일반 배우자 - 납세자의 전년도 소득(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국외원천소득)이 SGD 4,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하는 배우자에 대해 SGD 2,000을 공제함 ② 장애 배우자 - 소득 한도액 없이 공제액이 SGD 5,500으로 증가함 -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해 허용함 - 장애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경우, 배우자의 형제는 별도의 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										
자녀공제	합법적 자녀, 의붓자녀, 입양된 자녀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유형의 공제가 적용되며, 2인 이상이 동일 자녀에 대해 공제 청구 자격이 있을 경우 합의된 배분에 근거하여 적용됨 ① 적격자녀공제 - 16세 미만 또는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는 자녀 1인당 SGD 4,000의 공제를 적용함 - 자녀의 연간소득(과세 및 비과세소득, 국외원천소득, 인턴십소득, 장학금 등)이 SGD 4,000를 초과하지 않음 ② 장애자녀공제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 1인당 SGD 7,500을 공제함 - 납세자는 적격자녀공제와 장애자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음 ③ 워킹맘공제 - 납세자가 사업·근로·연금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결혼, 이혼 또는 사별한 어머니로서,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으로 과세 기준 연도에 적격자녀 공제 혹은 장애자녀공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어머니의 소득에서 다음의 비율로 공제가 적용됨 (단위: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첫 번째 자녀</td> <td>15</td> </tr> <tr> <td>두 번째 자녀</td> <td>20</td> </tr> <tr> <td>세 번째 자녀 이상부터</td> <td>25</td> </tr> </tbody> </table>				공제율	첫 번째 자녀	15	두 번째 자녀	20	세 번째 자녀 이상부터	25
	공제율										
첫 번째 자녀	15										
두 번째 자녀	20										
세 번째 자녀 이상부터	25										
	- 납세자가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청구할 경우 비율은 합산되며 납세자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함 - 가족 내에서 자녀의 순서는 다음 기준을 근거로 결정함 · 납세자와 (전)배우자에게서 태어난 자녀: 출생증명서상의 생년월일 · 의붓 자녀: 출생증명서상의 생년월일 · 입양 자녀: 입양 서류에 기재된 법적 입양일 - 적격자녀공제/장애자녀공제와 합산하여 총 SGD 50,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적격자녀공제/장애자녀공제가 우선 적용된 후 잔액을 한도로 워킹맘 공제가 적용됨										

〈표 II-15〉의 계속

공제 종류	상세 내용									
부모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부양하는, 과세연도에 최소 8개월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연간 소득이 SGD 4,000 이하인 55세 이상의 납세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해 적용됨</li> <li>- 공제는 최대 2인의 부양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SGD)</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width: 35%;">납세자와 거주</th> <th style="width: 35%;">별도 거주</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0</td> </tr> <tr> <td>장애 (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r> </tbody> </table>		납세자와 거주	별도 거주	일반 (조)부모	9,000	5,500	장애 (조)부모	14,000	10,000
		납세자와 거주	별도 거주							
	일반 (조)부모	9,000	5,500							
장애 (조)부모	14,000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자에 대해 다른 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한, 한 부양자에 대해 납세자 2인까지 합의된 배분에 따라 공제 청구가 가능함(기혼여성부모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함)</li> </ul>										
기혼여성부모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혼,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은 본인 및 (전)남편의 부모 및 조부모에 대해 SGD 3,00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li> <li>- 부양자는 싱가포르 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과세연도에 8개월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12세 이하의 싱가포르 시민권을 보유한 부양 자녀를 돌보는 무직자여야 함</li> <li>- 공제는 1인의 부양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다른 사람이 동일인에 대해 동일 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부모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함)</li> </ul>									
장애형제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 SGD 5,500의 공제가 허용됨</li> <li>- 부양 형제·자매는 싱가포르 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과세연도에 8개월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함</li> <li>- 납세자가 해당 형제·자매와 함께 살거나, 과세연도 동안 그를 부양하는 데 SGD 2,000 이상의 지출이 있어야 함</li> <li>- 한 부양자에 대해 2인 이상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합의된 배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됨</li> </ul>									
연금 등에 대한 납입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적립기금(CPF)법에 따른 의무 납입금, 승인된 연금 또는 공제기금에 대한 납입금이 월 SGD 6,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함</li> <li>- 의무 납입금을 초과하여 근로자 혹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 2인 이상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임금 대비 납입금이 초과한 경우, 그리고 해외 근무 중 발생한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li> </ul>									
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고용보험 납입액이 SGD 5,000 미만일 경우, SGD 5,000과 본인의 납입액의 차액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 생명보험료에 납입한 금액의 7%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 청구할 수 있음</li> <li>- 의무 고용보험 납입액이 SGD 5,000 이상일 경우 공제 혜택이 없음</li> </ul>									
교육훈련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지급 비용과 관련하여 최대 SGD 5,500의 공제가 허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연도 내에 참여한 승인된 학문적·전문적·직업적 교육과정·세미나·컨퍼런스</li> <li>· 과세연도 내에 참여한 납세자의 현직과 관련한 교육과정·세미나·컨퍼런스</li> <li>· 직전 2개 과세연도 내에 완료된 납세자의 신규 업무 관련 교육과정·세미나·컨퍼런스</li> <li>· 시험 수수료, 등록비용, 수업료</li> </ul> </li> <li>-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였거나 선불 지불한 교육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균등하게 공제함</li> <li>- 납세자의 과세 소득이 SGD 22,000인 경우 교육훈련비공제에 대한 청구를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과세 소득이 SGD 22,000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첫 번째 해에 청구를 실행해야 함</li> </ul>									

〈표 II-15〉의 계속

공제 종류	상세 내용											
군인공제	① 본인 공제 - 평가연도 전년 4월 1일부터 당해 3월 31일까지 풀타임으로 활동한 군인의 경우 SGD 3,000~5,000의 공제가 제공되며, 법정 연령 이상인 퇴역 군인에게는 SGD 1,500의 기본 공제가 제공됨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SGD)</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width: 35%;">일반</th> <th style="width: 35%;">핵심사령부 및 임명권자</th> </tr> </thead> <tbody> <tr> <td>현역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0</td> </tr> <tr> <td>퇴역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r> </tbody> </table>				일반	핵심사령부 및 임명권자	현역 군인	3,000	5,500	퇴역 군인	1,500	3,500
		일반	핵심사령부 및 임명권자									
	현역 군인	3,000	5,500									
퇴역 군인	1,500	3,500										
② 배우자 공제 - 싱가포르 거주자인 군인의 배우자에게 SGD 750의 공제를 제공함 - 미망인의 경우 재혼하지 않을 경우 공제 자격이 유지됨												
③ 부모 공제 - 싱가포르 거주자인 군인의 부모에게 자녀 수에 관계없이 SGD 750의 공제를 제공함 -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공제 자격이 유지되며, 부모 또한 군인으로 본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둘 중 더 높은 공제액을 선택할 수 있음												
보충퇴직공제 (SRS)	- 개인이 중앙적립기금(CPF) 납입액 이상으로 은퇴를 위해 보충퇴직제도(SRS)에 납입한 금액 전액(절대 소득 기준의 15%, 최대 SGD 15,300)											
기부금공제	- 다음과 같은 기부에 공제가 적용됨 ·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공인된 공익 목적 기관이나 싱가포르 정부에의 현금 기부 · 승인된 기관에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기부 · 싱가포르 거래소(SGX)에 상장된 공개 주식이나 싱가포르 내에서 거래되는 뮤추얼 펀드 단위 주식의 기부 · 국립유물위원회(NHB)로부터 승인된 박물관에의 유물 기부 · 공공 전시를 위해 예술품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예술품, 금전 또는 서비스 기부 ·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한 컴퓨터 기부는 2017년 2월 21일 기부분까지만 공제를 허용 - 상기한 요건에 부합하는 적격 기부의 평가된 기부액을 기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공제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2009.1.1.~ 2014.12.31. 기부</th> <th style="width: 33%;">2015.1.1.~ 2015.12.31. 기부</th> <th style="width: 33%;">2016.1.1.~ 2021.12.31. 기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배 공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3배 공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2.5배 공제</td> </tr> </tbody> </table>			2009.1.1.~ 2014.12.31. 기부	2015.1.1.~ 2015.12.31. 기부	2016.1.1.~ 2021.12.31. 기부	2.5배 공제	3배 공제	2.5배 공제			
	2009.1.1.~ 2014.12.31. 기부	2015.1.1.~ 2015.12.31. 기부	2016.1.1.~ 2021.12.31. 기부									
	2.5배 공제	3배 공제	2.5배 공제									
-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5년간 미사용 공제를 이월할 수 있음												
엔젤투자공제 (AITD)	- 다음 투자의 경우 공제가 적용됨 · Enterprise Singapore로부터 승인받은 엔젤투자자가 신생기업에 한 투자(2020년 3월 31일까지 엔젤투자자 승인 가능하며, 승인 후 기존 조건의 기간 동안 공제 혜택 부여) · 2015년 2월 24일 이후 스타트업 공동 투자 기회를 지원하는 Startup SG Equity Scheme 제도하의 SEEDS Capital에 이루어진 투자											

〈표 II-15〉의 계속

공제 종류	상세 내용
엔젤투자공제 (AI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 신생기업에 대해 첫 투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소 SGD 100,000의 적격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투자일로부터 2년간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2년 기한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평가연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됨</li> <li>- 최대 SGD 250,000의 한도 내에서 적격투자비용의 50%에 대해 개인의 총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며, 해당 평가연도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소멸됨</li> </ul>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Deductions for Individuals(Relief, Expenses, Donation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Reliefs-Expenses-Donations-> 내용 저자 정리, 검색일자: 2020. 8. 4.

## 5.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

### 가.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에 다음과 같은 구간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구간의 세율은 22%이다.

〈표 II-16〉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SGD, %)

	최소 세액	초과액에 대한 세율
2만 까지	0	0
2만 초과 ~ 3만 이하	0	2
3만 초과 ~ 4만 이하	200	3.5
4만 초과 ~ 8만 이하	550	7
8만 초과 ~ 12만 이하	3,350	11.5
12만 초과 ~ 16만 이하	7,950	15
16만 초과 ~ 20만 이하	13,950	18
20만 초과 ~ 24만 이하	21,150	19
24만 초과 ~ 28만 이하	28,750	19.5
28만 초과 ~ 32만 이하	36,550	20
32만 초과	44,550	22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Income Tax Rate,"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0. 8. 3.

## 나. 세액공제

### 1) 자녀세액공제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혹은 법적으로 입양되었으며, ② 해당 일자에 6세 이하면서, ③ 출생·입양·친부모 결혼 시점에서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이후 12개월 이내에 시민이 된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표 II-17〉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단위: SGD)

자녀 수	공제액
첫 번째 자녀	5,000
두 번째 자녀	10,000
세 번째 자녀부터	20,00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Parenthood Tax Rebate(PTR),"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Parenthood-Tax-Rebate-PTR->, 검색일자: 2020. 10. 22.

자녀의 순서 결정 기준은 소득공제의 자녀공제와 동일하며, 자녀가 태어난 해에 한 번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모두 공제 청구 가능하고, 이 경우 합의된 배분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진다.

### 2) 특별 세액공제

싱가포르에는 해당 세금 평가연도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거주자인 모든 개인 납세자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세액공제가 존재하며, 2015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 평가연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

〈표 II-18〉 세금 평가연도별 특별 세액공제(2015~2019년)

평가연도	관련 이슈	세액공제 내용
2015 <sup>1)</sup>	싱가포르 독립 50주년	산출 세액의 50%(SGD 1,000 한도)
2017 <sup>2)</sup>	-	산출 세액의 20%(SGD 500 한도)
2019 <sup>3)</sup>	싱가포르 개항 200주년	산출 세액의 50%(SGD 200 한도)

자료: 1) 싱가포르 국세청, "Personal Tax Rebate(YA 2015)",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Personal-Tax-Rebate-YA-2015->, 검색일자: 2020. 10. 12.  
 2) 싱가포르 국세청, "Personal Tax Rebate(YA 2017)",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Personal-Tax-Rebate--YA-2017->, 검색일자: 2020. 10. 12.  
 3) 싱가포르 국세청, "Personal Tax Rebate(YA 2019)",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Deductions-for-Individuals/Personal-Tax-Rebate--for-YA-2019->, 검색일자: 2020. 10. 12.

## 6. 신고·납부 및 징수체계

### 가. 신고·납부

#### 1) 청구서 발행<sup>155)</sup> 156)

싱가포르는 소득세법 제62조에서 소득세 감사관이 총소득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세금 청구서(Notice of Assessment, NOA)를 발행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세금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SMS 알림을 발송한다. 이때 세금 연도가 시작되고 3개월 이내<sup>157)</sup>에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한 모든 납세자는, 해당 기한이 종료되고 14일 이내<sup>158)</sup>에 감사관에게 자신의 세금 청구 여부에 대해 통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의 납세자 서비스센터에서도 세금 청구서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GD 20의 검색 수수료와 함께 SGD 0.3~3의 문서 수수료<sup>159)</sup>가 발생한다.

155) Tan H. Teck, Jimmy Oed,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20/21*, Wolters Kluwer, 2020, pp. 708~709.

156) 싱가포르 국세청, "Getting a Copy of Your Tax Bill(Notice of Assessment) & Other Document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Getting-it-right/Other-Services/Getting-a-Copy-of-Your-Tax-Bill--Notice-of-Assessment---Other-Documents/>

157)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납부 기한이 5월 31일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서 수령 시점이 4월말로 변경되었다.

158) 청구서 수령기한 종료일이 3월 31일까지일 경우 4월 15일까지 통지를 요청해야 한다.

청구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납세자 본인의 책임이며, 누락된 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세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신고 웹페이지인 MyTax Portal의 이의 제기(Object to Assessment) 메뉴 혹은 이메일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은 싱가포르에 첫 도착 후 한 달 이내에 소득세 부과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림 II-5] 싱가포르 세금 청구서(NOА) 예시

**NOTICE OF ASSESSMENT ORIGINAL**

Type of 'Notice of Assessment' (NOA)

Please quote the Tax Reference Number (eg. NRIC, FIN, etc) in full when corresponding with us.

	S'PORE (\$)	OTHER COUNTRIES (\$)	TOTAL (\$)
EMPLOYMENT	186,169.00		186,169.00
<b>TOTAL INCOME</b>	<b>186,169.00</b>		<b>186,169.00</b>
LESS: Approved Donations			90.00
<b>ASSESSABLE INCOME</b>			<b>186,079.00</b>
<b>LESS: PERSONAL RELIEFS</b>			
Earned Income		1,000.00	
NSman-self/wife/parent		750.00	
Child (WMCR)		65,160.00	
Provident Fund/Life Insurance		20,400.00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15,300.00	
Foreign Maid Levy		1,440.00	
<b>TOTAL PERSONAL RELIEFS (CAPPED AT \$80,000.00)</b>			<b>80,000.00</b>
<b>CHARGEABLE INCOME</b>			<b>106,079.00</b>
FIRST 80,000.00		3,350.00	
NEXT 26,079.00 @ 11.50%		2,999.09	
			<b>6,349.09</b>
<b>LESS: TAX SETOFFS</b>			
50 % Tax Rebate (capped at \$200)		200.00	
Parenthood Tax Rebate/Further Tax Rebate		5,000.00	
			<b>5,200.00</b>
<b>TAX PAYABLE BY</b>			<b>1,149.09 DR</b>

1. Your tax assessment is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relevant organisations and your last year's tax record, if any. Please notify us of any understatement or omission of any income or of any excessive tax relief as there are penalties for failing to do so.

2. You can view your total outstanding income tax payable, if any, via the View Account Summary e-Service. As you are on GIRO, deductions for any outstanding income tax payable will be made from your bank account based on your GIRO plan.

3. If you have any objection, please submit your objection online within 30 days via the Object to Assessment e-service or email us at myTax Portal.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 towards nation building

Tax Payable (DR) or Tax Repayable/Discharged (CR) is shown here.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ow to Read Your Tax Bill,"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How-to-Read-Your-Tax-Bill/>

예시한 개인소득세 청구서상의 ① '평가연도(Year of Assessment)'는 소득세가 계산되고 부과되는 연도를 의미하며,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9) 인증 문서는 1페이지당 SGD 3, 미인증 문서는 1페이지당 SGD 0.3의 문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소득(employment)’은 필요경비가 차감된 후의 소득이며, 해당 항목에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 등이 표시될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마찬가지로 차감된 후 기재된다. ③ ‘평가소득(assessable income)’에는 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이 표시되며, ④ ‘개인 공제(personal relief)’는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공제 내용을 포함한다. 예시의 납세자는 개인공제 합산액이 상한액인 SGD 80,000을 초과하여 총개인공제액(total personal relief)에 SGD 80,000으로 기재되었다. ⑤ ‘청구 소득(chargeable income)’은 평가소득에서 총개인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며, 이 금액의 소득 구간인 SGD 80,000~120,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SGD 80,000까지는 SGD 3,350의 세금을, 나머지 SGD 28,079에 대해서는 11.5%의 세율을 적용하여 SGD 6,349.09의 세액이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⑥ ‘세금 환급 및 면제(tax setoffs)’항을 통해 특별 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⑦ ‘납부 세액(tax payable)’이 산출된다. 이때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항목은 ‘세금 환급 및 면제(tax repayable/discharged)’로 표시된다.

## 2) 신고

세금 청구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전년도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에 싱가포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무신고 서비스(NFS)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서신 혹은 SMS를 받았을 경우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기간은 평가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전자신고의 경우 4월 18일)이다. 다만 3월 31일 이전까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sup>160)</sup>

〈표 II-19〉 과세기간 및 신고 기한

분류	내용
과세기간	- 평가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기한	- 매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전자신고의 경우 4월 18일까지) <sup>1)</sup> - 3월 31일 이전까지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주: 1)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 기한이 5월 31일로 연장됨

160) 싱가포르 국세청, “Individuals Required to File Tax,”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Filing-your-taxes/Individuals-Required-to-File-Tax>, 검색일자: 2020. 10. 19.

싱가포르의 세금 신고는 지류신고서 제출과 myTax Portal을 통한 24시간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국민 디지털 아이디인 SingPass나 싱가포르 국세청 고유 계정(IRAS Unique Account, IUA)를 이용하여 myTax Portal 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양식 내에 고용주로부터 자동 신고된 소득 내역 및 자격이 되는 공제액 항목은 사전 표시되며, 소득원이나 공제 내역에 있어 변경이 필요하거나 누락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sup>161)</sup>

또한 전자신고는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출 마감 기한 내에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는 1회 수정이 가능하다. 지류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변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에 이메일로 송부한다.<sup>162)</sup>

### 3) 납부<sup>163)</sup>

세금 청구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청구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청구서에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세금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환불한다. 이의 검토 후 30일 경과 시 까지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 또는 미납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은 다음 항에서 다룬다.<sup>164)</sup>

싱가포르의 세금 납부 방법은 지로, 키오스크 지불, 모바일 앱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많은 납세자들이 지로 납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납세자가 지로 납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금 청구서 발생 시 지불 명세서가 함께 발행되며, 지로 납부 외의 납부 시 요구 되는 식별 번호 등이 이 명세서에 기재된다.

161) 싱가포르 국세청, "e-Filing Your Tax Return,"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Filing-your-taxes/How-to-File-Tax/e-Filing-Your-Tax-Return>

162) 싱가포르 국세청, "Making Changes After Filing,"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Filing-your-taxes/Making-Changes-After-Filing>, 검색일자: 2020. 10. 20.

163) 싱가포르 국세청, "How to Pay Tax,"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How-to-Pay-Tax>, 검색일자: 2020. 10. 21.

164) 싱가포르 국세청, "Objecting to Income Tax Bill,"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Objecting-to-Income-Tax-Bill>, 검색일자: 2020. 10. 20.

〈표 II-20〉 싱가포르의 세금 납부 및 결제 수단

유형	상세
지로(GI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S/POSB, OCBC, UOB 은행 계좌 보유자가 myTax Portal이나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AXS station 키오스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li> <li>- 세금 납부액이 정해진 날짜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며, 환급 시에도 인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됨</li> <li>- 지로 납부를 이용할 경우 일시납과 최대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 중 선택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 납부는 익년 4월까지 종료되어야 하므로, 5월 이후에 지로 납부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2개월보다 적은 개월 수의 분할 납부만 선택할 수 있음</li> <li>· 분할 납부 시 약정 기간 동안 매월 6일에 월 납입액 인출에 실패하면 20일에 인출을 재시도하는데, 2개월 연속 인출에 실패할 경우 지로 납부 서비스가 해지됨</li> </ul> </li> </ul>
단말기 (ATM, 키오스크) (24시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S/POSB 혹은 OCBC의 ATM에서만 세금 납부가 가능함</li> <li>· OCBS의 경우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여 결제기관 목록에 싱가포르 국세청을 별도로 추가하는 선행 작업이 요구됨</li> <li>- 지불명세서 번호를 입력하여 처리하며, ATM을 통해 영수증이 발행됨</li> <li>-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며, 은행에서 설정한 일일 인출 금액 한도까지만 납부가 가능함</li> <li>- 영업일 기준으로 지불 접수 후 3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 처리됨</li> </ul> </li> <li>② AXS Station, SAM Kio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불명세서 번호나 지불명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납부를 진행함</li> <li>- AXS Station은 일부 신용카드와 은행 현금카드, SAM Kiosk는 일부 은행에서 발행한 NETS 카드 결제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XS Station: Diners Club과 DBS/POSB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Citibank, DBS/POSB, Maybank, OCBC, Standard Chartered Bank, UOB의 현금 카드로 결제 가능하고, 은행 및 카드사에서 설정한 일일 인출 한도까지만 납부가 가능함</li> <li>· SAM Kiosk: DBS/POSB, OCBC, Standard Chartered Bank, UOB에서 발행한 NETS 카드 결제만 허용되고, 은행에서 설정한 일일 인출 한도까지만 납부가 가능함</li> </ul> </li> <li>- 결제 완료 시 영수증이 발행되고, 싱가포르 국세청 계정에서도 납부가 즉시 완료 처리됨</li> </ul> </li> </ul>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24시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PayNow Q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계좌와 핸드폰의 PayNow QR 앱을 연결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며, 다음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이 이용 가능함</li> <li>· Bank of China, Citibank, DBS/POSB, HSBC,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imited, Maybank, OCBC, Standard Chartered, UOB</li> <li>- myTax Portal의 지불 메뉴에서 QR코드를 생성하여 PayNow 앱으로 촬영하거나, 앱에 스크린샷으로 업로드하여 결제를 진행함</li> <li>- 결제 완료 시 싱가포르 국세청 계정에서도 납부가 즉시 완료 처리됨</li> </ul> </li> <li>② AXS e-Station/m-Station, SAM Web/Mob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불명세서 번호로 납부를 진행하며, eNETS Debit 또는 GIRO-On-Demand(SAM Web/Mobile만 해당)를 통한 결제만 가능함</li> <li>- 결제 완료 시 싱가포르 국세청 계정에서도 납부가 즉시 완료 처리됨</li> </ul> </li> </ul>

〈표 II-20〉의 계속

유형	상세
인터넷 뱅킹 (24시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용 가능함</li> <li>· BOC, CIMB, Citibank, DBS/POSB, HSBC, ICBC, MayBank, OCBC, RHB, Standard Chartered Bank, State Bank of India, UOB</li> <li>- 인터넷 뱅킹 로그인 후 '청구서 지불' - '싱가포르 국세청' 항목을 선택하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지불명세서에 기재된 NRIC나 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를 진행함</li> <li>- 납세자의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며, 은행에서 설정한 일일 인출 한도까지만 납부가 가능함</li> <li>- 영업일 기준으로 지불 접수 후 3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 처리됨</li> </ul>
폰뱅킹 (24시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폰뱅킹 세금납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 가능함</li> <li>· DBS/POSB, OSBC, UOB</li> <li>- 은행에서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관련 코드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li> <li>- 납세자의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며, 은행에서 설정한 일일 인출 한도까지만 납부가 가능함</li> <li>- 영업일 기준으로 지불 접수 후 3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 처리되고, 별도의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음</li> </ul>
우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불명세서 지참하여 우체국 카운터에서 납부 가능함</li> <li>- 영업일 기준으로 지불 접수 후 3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 처리됨</li> </ul>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ow to Pay Tax,"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How-to-Pay-Tax>, 검색일자: 2020. 10. 21.

#### 4) 연체 및 미납 시 불이익<sup>165)</sup>

납부는 세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가 아닌 은행 계좌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지로 납부에 실패하거나 지불 금액이 은행 등 지불 업체에서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싱가포르 국세청이 지로 납부 서비스 취소 통지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미납한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에 통지가 발송되며, 추가 집행 조치를 피하기 위해 통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포함한 세액 전액의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후 60일간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월 1%의 추가 과태료가 최고 12%까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계속 미납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세금 징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출금금지(TRO)를 발동하거나, 은행,

165) 싱가포르 국세청, "Late Payment or Non-Payment of Taxe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고용주, 세입자 또는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미납 세액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은행이 세금 납부 대리인으로 지정되면 체납자는 은행 계좌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되며, 경우에 따라 세금 전액을 지불할 때까지 본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 나. 원천징수제도

싱가포르는 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양식 Form B 166) 167)

<b>1. Employment Income and Employment Expenses</b> ⓘ		S\$	██████
<b>Total Employment income shown on the IDRS</b>		S\$	██████
<b>Section A</b>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rade income derived as a Partner/Sole-Proprietor/Self-Employed (e.g. commission agent).			
<input type="checkbox"/> Tick the box if your employment income details from your employer participating in the Auto-Inclusion Scheme (AIS) are not shown in the IDRS.			
ⓘ Check if your employer has submitted your employment income information to IRAS.			
You need <b>NOT</b> declare the income received from this employer. Do not tick the box if you were posted to work overseas for the whole of last year.			
<b>Section B</b>			
Your employer is <b>NOT</b> participating or has withdrawn from the Auto-Inclusion Scheme for Employment Income. Please declare your total income for the year 2018 below:			
Salary	S\$	██████	.00
Bonus	S\$	██████	.00
Director's Fee	S\$	██████	.00
Others (Part-time, Benefits-in-kind,etc)	S\$	██████	.00
<b>Total Employment income entered</b>		S\$	██████
Gains and Profits from Share Option/ other forms of Share Ownership Plans?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Income Tax borne by employer (Tax-on-Tax)? - refer to Form IR8A item (f)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Other Employment Expenses ⓘ	S\$	██████	.00
<b>Total Employment Income LESS Expenses</b>		S\$	██████

166) Dollars and Sense, "Step-By-Step Guide To Filing Your Personal Income Tax In 2019,"(March 18, 2019), <https://dollarsandsense.sg/step-by-step-guide-to-filing-your-personal-income-tax-in-2019>, 검색일자: 2020. 10. 27.

167) 별첨은 온라인 신고 시 사용하는 myTax Portal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서식임

<b>2. Trade, Business, Profession or Vocation</b>		<b>S\$0.00</b>
Sole-Proprietorship/ Self-Employed Income	S\$ 0.00	<a href="#">UPDATE</a>
Partnership	S\$ 0.00	<a href="#">UPDATE</a>

<b>3. Other Income</b>		<b>S\$</b>	<b>0.00</b>
Dividends	S\$ 0.00	<a href="#">UPDATE</a>	
Interest 	S\$ <input type="text" value="0"/> .00		
Rent from Property	S\$ 0.00	<a href="#">UPDATE</a>	
Royalty, Charge, Estate/ Trust Income	S\$ 0.00	<a href="#">UPDATE</a>	
Gains or Profits of an Income Nature	S\$ 0.00	<a href="#">UPDATE</a>	
Income Not Previously Reported (The amount will be assessed in the relevant Year(s) of Assessment)	S\$ 0.00	<a href="#">UPDATE</a>	
<b>Total Income Less Expenses</b>	<b>S\$</b>		

<b>4. Deductions, Reliefs and Parenthood Tax Rebate</b>		<b>S\$</b>	
Donations and Zakat Expenses ⓘ		S\$	<a href="#">UPDATE</a>
Earned Income Relief ⓘ		S\$	
<p>Earned Income Relief will be automatically calculated based on your eligibility.</p> <p><input type="checkbox"/> Tick the box if you are claiming Handicapped Earned Income Relief for the first time.</p>			
Spouse/ Handicapped Spouse ⓘ		S\$	<a href="#">UPDATE</a>
Child		S\$	<a href="#">UPDATE</a>
Parent/ Handicapped Parent		S\$	<a href="#">UPDATE</a>
Handicapped Brother/ Sister		S\$	<a href="#">UPDATE</a>
CPF/ Provident Fund ⓘ		S\$	<a href="#">UPDATE</a>
Life Insurance ⓘ		S\$	<a href="#">UPDATE</a>
Course Fees ⓘ			
CPF Cash Top-up		S\$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SRS)		S\$	
NSMan - self/ wife/ parent		S\$	
<b>Total Deductions and Reliefs</b>		<b>S\$</b>	
Singapore Tax Deducted at Source		S\$	
Parenthood Tax Rebate (For NEW Claims Only)			<a href="#">UPDATE</a>

### III 국제조세

#### 1. 국제조세의 체계

싱가포르는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거래 중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얻는 싱가포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규정에 초점을 두어 정리한다.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는 싱가포르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외국법인이란 싱가포르 외부에 소득세법상 거주지가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외국인이란 싱가포르 외부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거주지 판단 요건은 법인의 경우 사업의 경영(management)과 지배(control)가 싱가포르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 내 183일 이상 싱가포르 내에 거주하거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sup>168)</sup>

#### 2.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 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sup>169)</sup>

###### 1) 과세소득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싱가포르 세법상 자본이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법인세과세, 원천징수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 방식은 외국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반면 원천징수과세 방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의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 가)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 방법과 동일하게 과세

168) Income Tax Act. Section 2(1).

169)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 7. International Aspec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 검색일자: 2020. 8. 5.

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싱가포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국외원천 사업소득 또는 싱가포르 내에서 수취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 판단 요건은 OECD 모델 조세조약과 유사하게 규정되었으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더불어 개인이 싱가포르 내 건물, 업무 장소, 프로젝트 공사 또는 설치장소의 감독관으로 일을 하는 경우이거나, 싱가포르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행사하고, 상품 및 재고를 유지관리하며, 지배되는 기업을 위한 주문을 수행하는 경우에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나) 배당, 이자, 로열티소득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하지 않으며, 이자와 로열티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그러나 해외 다국적기업의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에서 수취하는 이자와 로열티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이 국세청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① 해당 지점이 싱가포르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음
- ② 해당 지점이 싱가포르 세법에 따른 납세행정절차를 계속하여 잘 이행하였음
- ③ 회사의 본사가 지점의 미납세액에 대해서 차액을 납부할 것이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함
- ④ 신청서 작성 시점에 지점이 면제를 적용받을 소득의 제공자 이름을 포함한 스케줄을 제공함
- ⑤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었어야 할 모든 지급금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할 것이라는 이행각서를 제공함

#### 다) 기타소득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임대료 및 기술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점 및 고정사업장이 국세청 시행규칙에 따른 조건<sup>170)</sup>을 갖추며 아래의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① 유동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및 임대료
- ②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지식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 ③ 무역, 사업 또는 전문직업의 보조 또는 관리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170) 해당 조건은 1) 과세소득 나) 배당, 이자, 로열티소득에서 언급한 ①~⑤의 조건과 동일하다.

## 2) 원천징수세율<sup>171)</sup>

### 가) 이자소득

1996년 2월 28일 이후로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15%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반면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이 얻는 이자소득은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된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채무의 이자조정에 따른 계약, 채무의 경영관리비용 및 보증비용 또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sup>172)</sup> 이자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계약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 나) 로열티소득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소득은 10%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반면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이 얻는 로열티소득은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로열티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된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sup>173)</sup>

아래의 특정 로열티소득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순로열티소득의 법인세율인 17% 또는 총소득의 10% 중 작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한다.

- 작가, 작곡가, 안무가, 또는 그들의 문학, 음악, 예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sup>174)</sup>
- 창작자, 작가, 디자이너, 허가된 발명의 제작자 또는 그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단, 해당 특례규정은 2017년도까지만 적용됨)

### 다) 기타소득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적 보조 및 서비스 수수료, 경영관리 수수료는 예납적 원천징수

171)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 7. International Aspects - 7.3.4. With holding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3.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3.4.), 검색일자: 2020. 8. 5.

172) Income Tax Act. Section 45.

173) Income Tax Act. Section 12(7).

174) Income Tax Act. Section 10(14).

로 과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세율로 원천징수한 이후 신고납부절차에 따라 정산하며,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아 신고 시점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지식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10%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유동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및 임대료는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15%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 분배금의 경우 2005년 2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의 특례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단, 해외 부동산 판매업자가 부동산 양도로 얻는 소득은 15%의 예납적 원천징수로 과세한다.<sup>175)</sup>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① 싱가포르 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지급하는 소득
-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적격 비상장 파생상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
- ③ 선채용선,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선박 수수료(과거에는 1% 또는 2%의 세율이 적용됨)
- ④ 최종소비자를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이트 라이선스, 컴퓨터와 묶음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사용료
- ⑤ 싱가포르 내 최종소비자가 지급하는 디지털상품, 정보 등의 사용료(2003년 2월 28일부터 적용)
- ⑥ 해외 해저 케이블 사용권에 대한 지급금(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⑦ 해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지급하는 모든 및 로열티소득(2014년 2월 21일부터 적용)

175) Income Tax Act. Section 45D(1).

〈표 II-2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대상소득		유형	세율
이자소득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완납적	15%
로열티소득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소득	완납적	10%
	작가, 안무가 등 예술작품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소득	예납적/ 완납적	min(순로열티소득의 17%, 총소득의 10%)
기타소득	기술적 보조 및 서비스 수수료, 경영관리 수수료	예납적	17%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지식의 사용, 사용을 위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	완납적	10%
	유동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	완납적	15%
	부동산신탁(REIT) 분배금	완납적	10%
	해외 부동산 판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완납적	15%
	면제대상 기타소득	N/A	면제

자료: 저자가 작성한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3) 원천징수절차

#### 가) 원천징수 의무자

모든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거래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다.

- 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싱가포르 거주자 혹은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 ②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과세대상 소득일 것(이자소득, 부채와 관련한 수수료, 로열티소득, 기술적 서비스수수료, 임대료 및 기타소득, 해외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 ③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을 것

#### 나)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일반적인 법인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지급받는 것은 예납적 원천징수로,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은 과세연도 말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과납한 세액만큼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노하우 사용료, 임대료 등의 특정 소득을 지급받고 10% 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sup>176)</sup>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은 별도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거주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다) 행정절차<sup>177)</sup>

원천징수 지급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달 말 이후 15일 이내에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은 지급자는 납부세액의 5%부터 20%에 해당하는 지연납부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에 300%에 해당하는 가산금, SGD 1만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거주자는 해당 세액 및 지급금액을 IR37 서식에 작성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지하여야 한다.<sup>178)</sup> IR37 서식에 기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소득 원천의 종류(주식, 재산 등)
- ③ 소득 지급일
- ④ 지급한 총소득금액
- ⑤ 공제대상 원천징수세액
- ⑥ 원천징수세 공제 후 지급금액

#### 4) 지점세(Branch tax)

싱가포르 소득세법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소재한 지점은 내국법인에 준하여 과세하며, 별도의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싱가포르 지점은 해외 본사로 이익을 납세의무 없이

176) Income Tax Act. Section 43(3).

177)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 7. International Aspects - 7.3.4. With holding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3.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3.4.), 검색일자: 2020. 8. 5.

178) Income Tax Act. Section 45(1).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sup>179)</sup>

싱가포르 소득세법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체계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기술한 것과 유사하다. 비거주자인 개인의 경우에도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40조, 제40A조, 제40B조에 따른 공제만 적용할 수 있다.<sup>180)</sup>

1) 과세소득<sup>181)</sup>

가) 근로소득

비거주자가 싱가포르 내에서 얻는 근로소득은 소득계산방식(assessment method)에 의해 과세된다. 싱가포르 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더불어 국외에서 발생한 고용관계이더라도 정부기관을 위한 경우에는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비거주자 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내국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고 인적공제방식을 적용하는 방법 중 더 높은 세액이 산출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근로자의 싱가포르 내 근로소득은 고용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된다. 단, 해당 면제요건은 회사의 이사, 연예인 또는 전문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사업소득 및 전문직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싱가포르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179)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 7. International Aspec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 검색일자: 2020. 8. 5.

180) Income Tax Act. Section 40.

181)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 7.3. Taxation of non-resident compan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3.), 검색일자: 2020. 8. 6.

정사업장 판단 요건은 전술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판단 요건과 동일하다.

비거주자 전문직(Non-resident professional)이 싱가포르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전문직이 싱가포르 내 183일 이내로 거주하며 싱가포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① 정부기관 또는 민관기관에서 노하우 또는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초청된 해외 전문가
- ②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연사 또는 학자
- ③ 왕실 고문 변호사
- ④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 ⑤ 외국회사를 영위하는 개인

위의 비거주자 전문직의 소득은 15%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과세대상 소득에는 금전 또는 비금전적 보수를 모두 포함하며,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금전적 보수에는 소득 지급자가 제공한(또는 변제한) 숙박, 항공, 수당, 연설비용, 일일 경비, 시내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

비거주자 전문직은 일부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의 22%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지급자로부터 제공받은 항공비용 및 60일 이내의 숙박비용에 한정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숙박비용은 전체 비용을 공제부인한다. 더불어 식비 및 시내교통비 등을 포함한 사적사용 경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 단위로 22% 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선택 시 취소할 수 없다. 소득 지급자 또는 비거주자 전문직은 Form IR37C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다) 투자소득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부동산을 통한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된다.

#### 라) 기타소득

싱가포르 내에서 얻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 원천징수세율

### 가) 이자소득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채무와 관련한 수수료 등은 15%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반면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가 얻는 이자소득은 내국세법에 따라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 나) 로열티소득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로열티소득은 10%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반면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가 얻는 로열티소득은 내국세법에 따라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원천징수 대상 로열티소득은 유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혹은 총액 지급금, 과학적·기술적·산업적 지식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

아래의 특정 로열티소득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순로열티소득의 소득세율인 22% 또는 총소득의 10% 중 작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 작가, 작곡가, 안무가, 또는 그들의 문학, 음악, 예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sup>182)</sup>
- 창작자, 작가, 디자이너, 허가된 발명의 제작자 또는 그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단, 해당 특례규정은 2017년도까지만 적용됨)

더불어 싱가포르의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sup>183)</sup> 및 공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수수료<sup>184)</sup>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

## 3) 기타소득

비거주자 연예인이 싱가포르 내에서 공연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15%의 예납적 원천

182) Income Tax Act. Section 10(14).

183) Income Tax Act. Section 13(4).

184)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Section 64.

징수로 과세한다. 그러나 2010년 2월 22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특례세율인 10%를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자 이사가 스톡옵션 등을 제외한 보수를 얻는 경우 22%의 일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유동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및 임대료는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15%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따라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해외 부동산 판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은 15%의 예납적 원천징수로 과세한다.<sup>185)</sup>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기술적 보조 및 서비스 수수료, 경영관리 수수료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따라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이후 신고납부절차에 따라 정산하며,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아 신고 시점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up>186)</sup>에 따른 퇴직급여소득은 22%의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면제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는 전술한 외국법인의 기타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II-22〉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대상소득		유형	세율
이자소득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완납적	15%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예납적	22%
로열티소득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소득	완납적	10%
	싱가포르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소득	예납적	22%
	작가, 안무가 등 예술작품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소득	예납적/ 완납적	min(순로열티소득의 22%, 총소득의 10%)
	싱가포르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 등	N/A	면제

185) Income Tax Act. Section 45D(1).

186)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RS)란 2001년 4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21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 비거주자는 퇴직시점까지 Central Provident Fund(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펀드) 납입금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납입 가능한 제도로, 납입 시점에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시점 인출 시에도 투자이익의 50%만 과세된다.

〈표 II-22〉의 계속

대상소득		유형	세율
기타소득	기술적 보조 및 서비스 수수료, 경영관리 수수료	예납적	22%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소득	예납적	22%
	비거주자 연예인이 싱가포르 내에서 공연 등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예납적	15% (단, 한시적으로 10%)
	비거주자 이사가 스톡옵션 등을 제외한 보수를 얻는 경우	예납적	22%
	유동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에 대한 수수료 및 임대료	완납적	15%
	해외 부동산 판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예납적	15%
	면제대상 기타소득	N/A	면제

자료: 저자가 작성한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3) 원천징수절차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절차 및 방법은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절차에서 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 다. 이중과세방지규정

### 1)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up>187)</sup>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세법에 따른 방법(Unilateral relief)과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방법(Bilateral relief)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싱가포르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sup>188)</sup>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소득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공제가능 세액과 외국에서 납부한 공제가능 세액 중 작은 금액이다. 싱가포르 유효세율<sup>189)</sup>이 외국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싱가포르 유효세율에 따라 계산하며, 유효세율이 외국세율보다 높은 경우 공제 금액은 외국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87)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 7.2.6. Double taxation relief,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2.6.](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7.&refresh=1609905099214#cta_sg_s_7.2.6.), 검색일자: 2020. 8. 6.

188) Income Tax Act. Section 50(2).

189) 싱가포르 유효세율은 싱가포르에서 “납부해야 할 공제감면 전 법인세/감면전 과세대상 소득”으로 계산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통산규정<sup>190)</sup>

국세청은 2011년 6월 11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별·원천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나, 2012년도부터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통산규정(FTC Pooling)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가별·원천별 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이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국가 혹은 동일 국가의 다른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 통산규정이 도입되어 납세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외국납부세액을 통산하여 공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① 대상 외국소득의 원천 국가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을 것
- ②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수취한 시점에 원천 국가의 주 세율이 적어도 15% 이상일 것
- ③ 대상 외국소득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
- ④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50조, 제50A조, 제50B조에 따라 외국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일 것

통산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모든 외국소득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세액과 외국에서 납부한 전체 세액 중 작은 금액이다. 세액을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한 모든 규정은 기존 외국납부세액 규정과 동일하다. 더불어 통산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통산공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매 과세연도마다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소득 원천의 유형, 소득의 원천 국가, 원천 국가의 주 세율, 외국납부세액 및 적용세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매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통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별·원천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외국납부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190) 싱가포르 국세청, e-Tax guide Income Tax: Foreign Tax Credit Pooling,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20Guide\\_CIT\\_Foreign\\_Credit\\_Pooling\\_2013-12-27.pdf](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20Guide_CIT_Foreign_Credit_Pooling_2013-12-27.pdf), 검색일자: 2020. 8. 6.

### 3. 조세조약의 적용

조세조약이란 두 국가의 내국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투자와 자유무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조세조약과 내국세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내국세법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싱가포르는 OECD 모델 조세조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조세특례규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주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 국가에서의 소득면제, 세율 감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7년 6월 7일 OECD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다자간협약에 서명하고 비준 완료한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다자간협약 내용에 따라 개정된다.<sup>191)</sup>

#### 가. 싱가포르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 국가는 보고서일 기준 92개국이다. 조약의 체결 범위에 따라 포괄적 조세조약과 제한적 조세조약으로 구분된다. 포괄적 조세조약은 모든 소득을 조약의 범위에 포함하지만, 제한적 조세조약은 선박 및 항공운항으로부터의 소득만을 조약의 범위에 포함한다. 싱가포르는 브라질, 칠레, 홍콩, 미국과는 제한적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현황은 <표 II-23>과 같다.<sup>192)</sup>

<표 II-23> 조세조약 체결 국가 현황

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알바니아	2010. 11. 23.	2012. 1. 1.
호주	1969. 2. 11.	1969. 1. 1.
오스트리아	2001. 11. 30.	2003. 1. 1.
바레인	2004. 2. 18.	2005. 1. 1.

191) IBFD,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7. International Aspects* 7.4.1. Tax treaties, 검색일자: 2020. 8. 5.

192)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International-Tax/List-of-DTAs-limited-treaties-and-EOI-arrangements/>, 검색일자: 2020. 9. 2.

〈표 II-23〉의 계속

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방글라데시	1980. 12. 19.	1979. 1. 1.
바베이도스	2013. 7. 15.	2015. 1. 1.
벨라루시	2013. 3. 22.	2014. 1. 1.
벨기에	2006. 11. 6.	2009. 1. 1.
브루나이	2005. 8. 19.	2007. 1. 1.
브라질	2013. 12. 20.	2014. 1. 1.
불가리아	1996. 12. 13.	1998. 1. 1.
캄보디아	2016. 5. 20.	2018. 1. 1.
캐나다	1976. 5. 6.	1977. 1. 1.
중국	2007. 7. 11.	2008. 1. 1.
키프로스	2000. 11. 24.	2002. 1. 1.
체코	1997. 11. 21.	1999. 1. 1.
칠레	1991. 1. 24.	1993. 11. 26.
덴마크	2000. 7. 3.	2001. 1. 1.
에콰도르	2013. 6. 27.	2016. 1. 1.
이집트	1996. 5. 22.	2005. 1. 1.
에스토니아	2006. 9. 18.	2008. 1. 1.
에티오피아	2016. 8. 24.	2018. 1. 1.
피지	2005. 12. 20.	2007. 1. 1.
핀란드	2002. 6. 7.	2003. 1. 1.
프랑스	2015. 1. 15.	2017. 1. 1.
조지아	2009. 11. 17.	2011. 1. 1.
독일	2004. 6. 28.	2007. 1. 1.
가나	2017. 3. 31.	2020. 1. 1.
건지	2013. 2. 6.	2014. 1. 1.
헝가리	1997. 4. 17.	1999. 1. 1.
홍콩	2003. 11. 28.	2005. 1. 1.
인도	1994. 1. 24.	1994. 1. 1.
인도네시아	1990. 5. 8.	1991. 1. 25.
아일랜드	2010. 10. 28.	2011. 4. 8.

〈표 II-23〉의 계속

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맨섬	2012. 9. 21.	2014. 1. 1.
이스라엘	2005. 5. 19.	2006. 1. 1.
이탈리아	1977. 1. 29.	1975. 1. 1.
일본	1994. 4. 9.	1996. 1. 1.
저지	2012. 10. 17.	2014. 1. 1.
카자흐스탄	2006. 9. 19.	2008. 1. 1.
대한민국	2019. 5. 13.	2019. 12. 31.
쿠웨이트	2002. 2. 21.	2004. 1. 1.
라오스	2014. 2. 21.	2017. 1. 1.
라트비아	1999. 10. 9.	2001. 1. 1.
리비아	2009. 4. 8.	2011. 1. 1.
리히텐슈타인	2013. 6. 27.	2015. 1. 1.
리투아니아	2003. 11. 18.	2005. 1. 1.
룩셈부르크	2013. 10. 9.	2016. 1. 1.
말레이시아	2004. 10. 5.	2007. 1. 1.
몰타	2006. 3. 21.	2009. 1. 1.
모리셔스	1995. 8. 19.	1997. 1. 1.
멕시코	1994. 11. 9.	1996. 1. 1.
몽골리아	2002. 10. 10.	2005. 1. 1.
모로코	2007. 1. 9.	2015. 1. 1.
미얀마	1999. 2. 23.	2010. 1. 1.
네덜란드	1971. 2. 19.	1968. 1. 1.
뉴질랜드	2009. 8. 21.	2011. 1. 1.
나이지리아	2017. 8. 2.	2019. 1. 1.
노르웨이	1997. 12. 19.	1999. 1. 1.
오만	2003. 10. 6.	2007. 1. 1.
파키스탄	1993. 4. 13.	1987. 1. 1.
파나마	2010. 10. 18.	2012. 1. 1.
파푸아뉴기니	1991. 10. 19.	1993. 1. 1.
필리핀	1977. 8. 1.	1977. 1. 1.

〈표 II-23〉의 계속

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폴란드	2012. 11. 4.	2015. 1. 1.
포르투갈	1999. 9. 6.	2002. 1. 1.
카타르	2006. 11. 28.	2008. 1. 1.
로마니아	2002. 2. 21.	2003. 1. 1.
러시아	2002. 9. 9.	2010. 1. 1.
르완다	2014. 8. 26.	2017. 1. 1.
산마리노	2013. 12. 11.	2016. 1. 1.
사우디아라비아	2010. 5. 3.	2012. 1. 1.
세이셸	2014. 7. 9.	2016. 1. 1.
슬로바키아공화국	2005. 5. 9.	2007. 1. 1.
슬로베니아	2010. 1. 8.	2011.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2015. 11. 23.	2017. 1. 1.
스페인	2011. 4. 13.	2013. 1. 1.
스리랑카	2014. 4. 4.	2018. 1. 1.
스웨덴	1968. 6. 17.	1966. 1. 1.
스위스	2011. 2. 24.	2013. 1. 1.
대만	1981. 12. 30.	1982. 1. 1.
태국	2015. 6. 11.	2017. 1. 1.
튀니지아	2018. 2. 27.	2020. 1. 1.
터키	1999. 7. 9.	2002. 1. 1.
투르크메니스탄	2019. 8. 27.	2021. 1. 1.
우크라이나	2007. 1. 26.	2011. 1. 1.
아랍에미리트	1995. 12. 1.	1992. 1. 1.
영국	1997. 2. 12.	1998. 1. 1.
우르과이	2015. 1. 15.	2018. 1. 1.
우즈베키스탄	2008. 7. 24.	2009. 1. 1.
미국	1988. 7. 28.	1987. 1. 1.
베트남	1994. 3. 2.	1993. 1. 1.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나. 싱가포르 - 한국 간 조세조약

싱가포르와 한국 간 조세조약은 1979년 최초 체결하여 2019년 개정되었다. 2019년 12월 31일로 발효된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한국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세에 해당한다. 싱가포르와 한국 간 조세조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4〉 싱가포르 - 한국 간 조세조약 주요내용

구분	조	주요 내용
대상 조세	제2조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싱가포르: 소득세
거주자	제4조	싱가포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회사 및 기타 단체
부동산 소득	제6조	국내 소재 부동산소득(농업, 임업포함)은 과세
사업 이윤	제7조	국내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대해 과세
해운 및 항공 운수	제8조	싱가포르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은 면세(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한 이윤 포함)
배당	제10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국내 거주자(법인)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파트너십 제외)인 경우: 배당 총액의 10% - 그 밖의 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5%
이자	제11조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또는 지급)하는 경우 과세: 이자총액의 10%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또는 지급)하더라도 면세 - 이자수취인이 싱가포르 정부, 통화청, 정부투자공사, 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소유하는 모든 기관인 경우 -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수취인이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
사용료	제12조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또는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 사용료 총액의 5%
양도소득	제13조	국내 소재 부동산양도소득은 과세 국내 고정사업장 및 사업용 동산 양도소득은 과세 국내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과세 대주주(지분을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위 이외의 재산 양도소득은 면세
고용소득	제14조	고용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 -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 체류하는 경우 - 보수를 국내 거주자인 고용주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 - 보수를 국내의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 관련 보수는 면세

〈표 II-24〉의 계속

구분	조	주요 내용
이사의 보수	제15조	국내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는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제16조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 소득은 과세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 소득 중 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국내에서 과세 *국내 방문이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거나 양 정부 간 문화교류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면세
연금	제17조	국내(거주자 혹은 고정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연금,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과세
정부 용역	제18조	싱가포르 정부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의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국내에서만 과세 ① 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인 경우 또는 ② 그 용역의 제공만을 위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된 것은 아닌 경우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
학생	제19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은 면세 -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국내 방문 직전에 싱가포르 거주자 -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
그 밖의 소득	제 20조	위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소득 중 싱가포르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만 과세

자료: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index.asp>, 검색일자: 2020. 9. 15.

## IV 소비세

### 1. GST 개관

싱가포르의 Goods and Services Tax(이하 GST)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1994년 4월 1일 도입되었다. 국내 소비에 대하여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7%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법에서 열거하는 면세대상 거래는 과세 제외한다.

### 2. 납세의무자

싱가포르 GST 납세의무자는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활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GST법에 의하여 등록하였거나 등록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sup>193)</sup> GST법상 등록의무는 연간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SGD 100만을 초과하는 자에게 발생하며, GST법에서 언급하는 면제대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상의 공급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sup>194)</sup> 정부기관이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시 GST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sup>195)</sup>

### 3. 과세대상 거래

####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1) 대상 거래

싱가포르 GST법상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아래와 같다.

- ① 종업원에 대한 보상
- ② 이사에 대한 보상
- ③ 영업 중인 사업부문의 양도

193)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8.

194)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9. First Schedule.

195)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8.

- ④ 사적인 거래
- ⑤ 싱가포르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
- ⑥ 영업활동으로 발생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
- ⑦ 무료로 제공되는 재화
- ⑧ 개인이 수입한 소액의 면세 상품
- ⑨ 재수출을 위한 재화의 수입
- ⑩ 동일한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종업원의 파견근무

더불어 2019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법(Carbon Pricing Act)에 따라 납부한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의 공급은 GST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Digital payment tokens)의 공급은 GST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2) 간주공급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고 거래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정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거래에 대하여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와 유사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싱가포르 GST법에 따라 아래와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과세대상 재화거래로 명시하였다.<sup>196)</sup>

- ① 전기, 수도, 가스 및 빛, 난방, 통풍 등에 대한 공급
- ② 토지 점유를 위한 사용 및 권리에 대한 보조금 및 이자
- ③ 구매계약에 따른 재산의 이전
- ④ 구매계약 또는 할부계약(Hire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재산 소유권의 이전
- ⑤ 다른 이의 재화를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 ⑥ 공적 명령에 따른 자산의 이전
- ⑦ 할부계약에 따른 자산의 이전
- ⑧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이전
- ⑨ 사업용 자산의 처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여 자산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196)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9. Second Schedule.

않는 경우 이를 공급으로 간주한다(그러나, 자산의 가격이 SGD 200 이내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⑩ 비과세활동을 위해 사용하게 된 재화
- ⑪ 과세활동이 중단된 사업부문에 남은 재화

#### 나.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재화는 국세청 고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국내 판매 및 재 수출 여부와 관련 없이 GST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단, 아래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의 경우 GST 과세대상에서 면제된다.

- ① 투자용으로 구입한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수입인 경우
- ② 수입업자가 GST Scheme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 ③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도착한 재화이거나, 재화가 승인된 보세창고 (Zero-GST Warehouse)로 직접 수입되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대리납부제도(Reverse-chare regime)에 따른 B2B 용역수입, 해외 판매업자 등록제도에 따른 B2C 용역수입은 GST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리납부제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GST 등록사업자 중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자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용역에 대하여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sup>197)</sup>

#### 다. 공급장소 및 시기

##### 1) 일반적인 공급장소<sup>198)</sup>

싱가포르 GST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 싱가포르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수출 등)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로 보며, 싱가포르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되는 경우(수입 등) 싱가포르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로 본다. 용역의 공급의 경우 싱가포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싱가포르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본다. 싱가포르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내에 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싱가포르 내 거주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97)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14.

198)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13.

2) 일반적인 공급시기<sup>199)</sup>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싱가포르 GST법에 따르면, 계산서가 발행된 날과 대가를 지급받는 날 중 빠른 날이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이때, 모든 종류의 계산서 발급은 GST 목적상 공급시기가 될 수 있다. GST 등록사업자로부터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영수증으로 사용되는 전표(debit note) 등 모든 문서가 계산서에 해당한다. 대가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현금, 신용카드, 수표,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의 지급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금을 수령한 날, 계산서가 발행된 날, 재화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12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3) 공급시기 특례<sup>200)</sup>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 ① 사적사용 재화 및 용역의 무상공급: 공급자의 회계기간 말 또는 재화가 사용가능하게 된 날
- ② 라이선스, 주택 임대, 리스 공급: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중 빠른 날
- ③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공급대가를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중 빠른 날
- ④ 구매자가 소유하는 공급자의 재화: 공급대가를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중 빠른 날
- ⑤ 보유에 대한 지급금: 공급대가를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중 빠른 날
- ⑥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중 빠른 날
- ⑦ 로열티 등과 유사한 지급금: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중 빠른 날
- ⑧ 건설 중인 자산의 공급: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급대가를 수령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중 빠른 날

199)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12.

200)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Part IV. Time of Supply.

## 4. 과세표준 및 세율

### 가. 과세표준<sup>201)</sup>

GST법상 과세표준은 재화의 및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다. 공급대가를 전부 금전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금액에 GST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만일 공급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전이 아닌 자산 등으로 지불한 경우,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공급대가로 한다. 오락세, 소비세, 도박세(betting and sweepstakes duties), 복권세(private lotteries duty), 제세공과금(public utilities tax)이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목은 포함하여 계산하며, 인지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GST 과세표준은 원가, 보험료, 운송비, 관세 및 기타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본다. 싱가포르 여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GST 감면 정책을 적용한다. 싱가포르 외부에 48시간 이상 체류한 여행자가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SGD 500(단, 48시간 이하 체류 여행자가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SGD 100 적용)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특수관계자(connected parties) 간 거래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한다.<sup>202)</sup>

- ① 공급대가가 금전적인 대가로 이루어짐
- ② 공급대가가 해당 거래의 시장가치보다 작음
- ③ 공급자와 매입자가 관련(connected)되어 있음
- ④ 과세대상 공급인 경우에도 매입자가 해당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나. 세율

싱가포르의 GST는 과세표준에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sup>203)</sup> 7%의 세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싱가포르 재무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2021년부터 2025년 기간 사이에 세율을 9%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204)</sup> 한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화의 수출 및 국제적 용역제공 거래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17, 18.

202) Goods and Services Tax Act. Third Schedule.

203)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16.

204) 싱가포르 재무부, <https://www.mof.gov.sg/resources/supporting-singaporeans-with-gst>, 검색일자: 2020. 7. 27.

## 5. 영세율 및 면세

### 가. 영세율

#### 1) 재화의 수출

싱가포르 GST법상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화의 수출 및 국제적 용역의 제공은 영세율을 적용한다.<sup>205)</sup> 영세율이 적용되는 GST 등록사업자는 GST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영세율 대상이 되는 재화의 수출 거래는 GST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GST법 제21(6)조에 따라 GST 최고책임자(Comptroller)가 수출로 결정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GST 최고책임자는 수출 거래 가이드(e-Tax Guide on Exports)<sup>206)</sup>를 발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및 문서화 기준을 명시하였다. 재화를 수출하는 공급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등)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수출업자는 공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서류를 문서화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 용역의 공급

싱가포르 GST법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적 용역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sup>207)</sup>

- ① 여객 및 재화의 국제적 운송
- ② 여객 및 재화의 국제적 운송과 관련한 용역
- ③ 싱가포르 국외 지역에서 사용되는 교통수단 대여용역
- ④ 싱가포르 국외 소재 재화 또는 수출을 위한 재화에 관련한 용역
- ⑤ 싱가포르 국외에서 완전히 수행되는 용역
- ⑥ 사업상 싱가포르 국외에 소속된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
- ⑦ 싱가포르 국외 사람에게 제공하는 용역
- ⑧ 전자통신용역
- ⑨ 신탁용역
- ⑩ 컴퓨터 서버가 싱가포르 내에 소재하는 해외사업자의 용역

205)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1.

206)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s\\_GST\\_Exports\\_2013-12-31.pdf](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s_GST_Exports_2013-12-31.pdf), 검색일자: 2020. 7. 28.

207)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1(3).

- ⑪ 재화의 수출입과 관련한 전자적 용역
- ⑫ 광고용역
- ⑬ 지정창고에 저장된 재화와 관련한 용역
- ⑭ 선박 및 항공 관련 용역
- ⑮ 항공 컨테이너 및 선박 컨테이너와 관련한 용역
- ⑯ 기계 및 설비와 관련한 용역

## 나. 면세

싱가포르 GST법상 아래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과세 면제되며, 면세대상 거래의 GST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sup>208)</sup>

- ① GST 면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
- ② GST법에서 열거한 면세대상 금융서비스<sup>209)</sup>
  - 예금저축계좌 운영
  - 외화환산
  - 대출계약
  - 주식의 발행, 배당, 양도
  - 선물계약
- ③ 주거용 재산의 임대 혹은 매매
- ④ 투자용 귀금속의 수입(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

## 6. 산출세액

### 가. GST 산출세액의 계산

싱가포르 GST 납세의무자는 매출세액에서 GST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GST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의 일환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함에 따라 납부한 세액, 대리납부제도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또는 재화에 수입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매출세액은 납세의무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GST 납부세액을 의미한다.

208)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2.

209)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2. Fourth Schedule.

### 나. 공제하는 매입세액

싱가포르 GST 등록사업자는 과세대상 공급, 싱가포르 내 과세대상인 국외공급, 관세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발생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sup>210)</sup> GST 최고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수입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서를 구비해야 한다.<sup>211)</sup>

### 다.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면세대상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세대상 사업의 공급가액이 월간 SGD 4만을 초과하지 않고 전체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적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full deduction)가 가능하다. 최소기준금액과는 별도로 GST법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sup>212)</sup>

- ① 클럽이나 협회 등에 납부하는 멤버십비용
- ② 의료 및 상해 보험료
- ③ 의료비용
- ④ 가족들에 제공하는 복지비
- ⑤ 도박, 복권 구매비용
- ⑥ 승용차 구입(수입 포함) 비용 및 승용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비용

아래의 면세대상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보지 않는다.<sup>213)</sup>

- ① 현금예금
- ② 외화환산
- ③ 최초 발행자로부터 채무 및 지분증권의 발행, 배당, 양도
- ④ 종업원에 대한 대출, 선지급, 신용제공
- ⑤ 매출채권의 양도

210)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0.

211)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Section 61.

212)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Section 26.

213)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Section 33.

- ⑥ 투자신탁의 발행
- ⑦ 이자위험, 외환위험, 가격위험 헷징
- ⑧ 회사채, 매출채권 등으로부터 이자수령
- ⑨ Islamic Debt Securities의 발행 및 자금 조달

그러나 위의 규정은 아래의 사업자에게는 적용 배제되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한다.

- ① 은행법에 의한 은행
- ②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③ 보험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 ④ Finance Companies Act에 의한 금융회사
- ⑤ Moneylenders Act에 의한 대부업자, 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에 의한 환전 및 송금업자
- ⑥ Pawnbrokers Act에 의한 전당포업자
- ⑦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기타 카드결제 회사
- ⑧ 투자신탁회사(부동산신탁회사를 제외함) 및 사업신탁회사

라. 부분적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과세대상 사업과 면세대상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부분적 면세사업자가 최소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 대상 사업부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사업을 위해 구입한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한다.<sup>214)</sup>

$$\text{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frac{\text{과세대상 공급}}{\text{과세대상 공급} + \text{면세대상 공급}} \times \text{전체매입세액}$$

부분적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후 과세기간에 조정하여야 한다.<sup>215)</sup>

214)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Section 29.

215)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Section 37.

## 7. 신고·납부

싱가포르 GST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매월, 매 3개월, 매 6개월 또는 GST 최고책임자가 승인한 일정 주기마다 GST F5 GST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또는 6개월의 신고기간은 반드시 반기 또는 분기일 필요는 없으며 연속하는 기간으로만 이루어지면 된다. 일반적인 GST 신고기간은 3개월로 이루어지며, 6개월의 신고기간은 자발적 등록된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GST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과세기간 말이 3월 31일인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말이 월말에 종료되지 않는 납세자는 특별 회계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기간이 4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인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5일이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GST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sup>216)</sup> GST 납세의무자는 싱가포르 국세청 사이트 ‘myTax Portal’을 통하여 GST 신고서(GST F5 Return)를 싱가포르달러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GIRO의 방법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sup>217)</sup>

## 8. 환급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sup>218)</sup> GST 최고책임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초과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분기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별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216)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Section 53.

217)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GST/GST-registered-businesses/Filing-your-taxes/How-to-File-Tax/Completing-GST-Return/>, 검색일자: 2020. 10. 29.

218)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19.

## 9.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 가. 사업자등록

#### 1) 등록의무자

과세공급가액이 연간 SGD 100만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자는 GST법상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즉, 등록의무는 소급적용과 전진적용의 방법을 고려하여 발생한다.<sup>219)</sup>

소급적용 방법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정되어 각 기간별 아래의 상황에서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등록의무가 발생한 사업자는 해당 기간 말 이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9년 1월 1일 이전: 분기 말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및 그 이전 3분기의 싱가포르 내 과세공급가액이 SGD 100만을 초과할 것
- 2019년 1월 1일 이후: 연말을 기준으로 연간 싱가포르 내 과세공급가액이 SGD 100만을 초과할 것

전진적용 방법의 경우, 모든 기간에 향후 12개월 동안 과세공급가액이 SGD 100만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등록의무가 발생한 사업자는 해당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공급이 전부 혹은 대부분 영세율인 경우 또는 소급적용 시에 등록의무가 발생하지만 전진적용 시 등록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① 향후 12개월간 과세공급가액이 SGD 100만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함
- ② 과세공급가액이 특정 상황(큰 규모의 사업축소 등)에 의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③ 위의 추정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거가 존재함

219)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GST/Non-GST-registered-businesses/Registering-for-GST/Do-I-Need-to-Register-for-GST/>, 검색일자: 2020. 8. 3.

2) 자발적 등록<sup>220)</sup>

GST법상 등록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더라도 싱가포르 내 과세대상 공급을 해외에서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 GST 영세율 대상 창고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국제적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GST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자발적 등록을 한 사업자는 2년 동안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2년간 등록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 교육을 들어야 하고, GST 납부목적상 GIRO(전자적 납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 3) 그룹등록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둘 이상의 GST 납세의무자는 하나의 대표 그룹납세자를 지정하여 연결하여 등록할 수 있다.<sup>221)</sup>

- ①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이거나 싱가포르에 사업장이 있을 것
- ② 연간 매출액이 SGD 100만 이상일 것
- ③ 주식을 국내 혹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을 것
- ④ ②와 ③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회사일 것
- ⑤ ②와 ③에 해당하는 회사의 투자를 받을 것

더불어, 그룹을 대표하여 GST를 등록하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배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를 지배하는 납세의무자
- ② 모든 납세의무자를 지배하는 법인격 혹은 개인
- ③ 모든 납세의무자를 지배하는 파트너십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개인

## 4) 등록절차

등록을 위해서 납세의무자는 GST F1 등록신청서식(Application for GST Registration)을 필요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e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0월

220) Goods and Services Tax Act. First Schedule.

221)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30.

1일부터 GST 등록신청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서면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5) 등록해지<sup>222)</sup>

GST 사업자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과세공급을 중단한 날(혹은 중단하고자 하는 날) 후 30일 이내에 GST 최고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공급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던 자발적 등록자는 GST법 First Schedule 문단11에 따라 해당 공급을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고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

GST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공급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sup>223)</sup>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하여야 한다.<sup>224)</sup> 공급가액이 SGD 1,000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아래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해야 한다. 단, 공급가액이 SGD 1,000 미만인 거래의 경우 아래 ④,③,⑥,⑩의 정보만을 포함한 간편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세금계산서임을 명시한 문구가 있을 것
- ② 등록번호
- ③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④ 공급자 성명, 주소 및 등록번호
- ⑤ 공급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⑥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기술
- ⑦ 공급하는 수량 및 공급가액
- ⑧ 제공된 현금할인금액
- ⑨ GST를 제외한 공급가액 총액 및 적용된 세율
- ⑩ GST를 포함한 공급가액 총액

222) Goods and Services Tax Act. First Schedule.

223)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Section 10(5).

224)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43.

외화로 공급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적법한 환율에 의해 싱가포르달러로 환산된 GST제외 공급가액 총액, GST 납부액, GST 포함 공급가액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더불어 세금계산서 작성 시 거래된 외화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발행한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영수증 사본에는 공급자 성명 및 등록번호, 영수증 발행일자, GST를 포함한 공급가액 총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GST를 포함한 가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장부의 보관<sup>225)</sup>

싱가포르 GST법에 따라 회계기간이 끝난 후 5년간 아래의 장부를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형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 ① 사업 및 회계장부
- ②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 ③ 납세의무자가 발급받은 모든 세금계산서
- ④ 수입과 수출 거래 증거문서
- ⑤ 모든 credit notes, debit notes, 대가로 받은 증거문서,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모든 문서의 사본

## 10. 특례제도

### 가. 매출총이익 특례제도

매출총이익 특례제도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GST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에서 세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만 계산하여 납부한다.<sup>226)</sup> 현재 GST는 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매출총이익의 7/107을 곱하여 납부하면 된다. 매출총이익 특례제도를 적용하여 GST를 납부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자동차, 중고 가전제품, 중고 가구 등을 파는 중고사업자가 GST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특례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225)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46.

226)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3.

### 나. 수출업자 특례제도

수출업자 특례제도는 수입과 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sup>227)</sup> 기존 수출업자는 재화를 수입 시 GST를 납부하고 수출 시점에 이를 환급받아야 했지만, 적격 수출업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시점에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다. 수입업자 특례제도

수입업자 특례제도는 항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sup>228)</sup> 적격 사업자란 국제적 항공사, MRO산업<sup>229)</sup>, OEM산업<sup>230)</sup>, 항공기 부품 유통업자 등을 포함한다. 항공산업을 영위하는 GST 등록 적격사업자는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점에 GST를 면제받을 수 있다.

- ①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 ② 해외 본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 ③ 재수출 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 ④ 적격 항공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 ⑤ 적격 항공부품을 싱가포르 내 항공물류센터 또는 자유무역지구에서 이전하는 경우
- ⑥ 싱가포르 내 항공물류센터 또는 자유무역지구에서 적격 항공부품을 과세 공급을 위하여 외부로 이전하는 경우

### 라. 위탁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제도

국내 위탁제조업자(Approved Contract Manufacturer Trader)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적격 위탁제조업자가 제조 활동을 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GST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적격 사업자는 GST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고객과 상당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227)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GST/Major-Exporter-Scheme—MES/>, 검색일자: 2020. 9. 14.

228)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GST/Approved-Import-GST-Suspension-Scheme—AISS/>, 검색일자: 2020. 9. 14.

229)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의 약자로 항공기 정비 산업을 의미함

230)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주문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위탁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함

위탁제조업자를 의미한다. 더불어 GST 면제대상 재화란 해당 특례제도에 승인된 위탁제조업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 또는 해외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재화를 말한다.

#### 마. 물류업자에 대한 특례제도

싱가포르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사용하는 물류업자(Approved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sup>231)</sup> 적격 물류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거나 GST 사업자가 아닌 해외고객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적격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적격 고객이란 해당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승인된 물류업자, 또는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기업, 위탁제조업자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기업 등을 말한다.


#### 바. 특별 보세창고 특례제도

적격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외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sup>232)</sup> 적격 보세창고란 영세율 대상으로 승인받거나, 재화의 90% 이상이 해외고객 소유인 재화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창고이며, 대부분의 재화가 수출되어 창고에서 출하되어야 한다. 적격 보세창고에 저장되는 적격 재화는 예술품, 골동품, 컬렉션, 귀금속, 주얼리, 와인 등에 해당한다.

231)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7.

232) Goods and Services Tax Act. Section 21C.

## [별첨] GST F1 Application for GST Registration

<p><b>GST F1</b> <b>APPLICATION FOR GST REGISTRATION</b></p> <p>The Comptroller of Goods and Services Tax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 1800-356 8633</p>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p>Submit this GST F1 form only if you are unable to apply for GST registration online via <a href="https://mytax.iras.gov.sg">IRAS myTax Portal</a> (mytax.iras.gov.sg)</p> <p>Your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within 10 working days. 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you will receive a letter of notification of your GST registration.</p> <p>IRAS will determine the effective date of GST registration. For compulsory registration, the date is determined based on when you were liable for GST registration. For voluntary registration, the date is usually two to three weeks from the date of the approval letter. IRAS will not allow the effective date of registration to be backdated for the purpose of claiming input tax incurred prior to GST registration.</p> <p><b>Notes:</b></p> <p>(1) <b>Email your application:</b> Scan and email the completed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to <a href="mailto:GST_form@iras.gov.sg">GST_form@iras.gov.sg</a>. <b>Do not</b> send this application via post or by hand. For GIRO application forms, send the GIRO application separately via post or by hand to 55 Newton Road Singapore 307987. If you are concurrently applying for GST Group/Divisional registration/Schemes such as Major Exporter Scheme, please also scan and email the other application forms together with this application to <a href="mailto:GST_form@iras.gov.sg">GST_form@iras.gov.sg</a></p> <p>(2) <b>Prepare supporting documents:</b> Required documents are listed in the <a href="#">Document Checklist</a></p> <p>(3) <b>Retain a copy:</b> Make a copy of this form and retain it for your internal records.</p> <p>(4) <b>Further requests by IRAS:</b> IRAS may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upon receiving your application. Your application will not be processed until IRAS has received comple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p>	
<b>REASONS FOR USING THIS FORM</b>	
<p>Please select at least one reason to explain your paper GST F1 application.</p> <p>I am unable to apply for GST registration online via myTax Portal because:</p> <p><input type="checkbox"/> My foreign entity is not registered with ACRA</p> <p><input type="checkbox"/> My local business does not have a unique entity number (UEN) e.g. REITs, RBTs, joint venture not registered with ACRA</p> <p><input type="checkbox"/> I am applying for GST registration together with GST Group / Divisional registration and requesting for the same effective registration date.</p> <p><input type="checkbox"/> I encountered system errors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nline. A brief description of the errors are as follows (enclose a screenshot of the erro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20px; width: 100%; margin-top: 5px;"></div></p> <p><input type="checkbox"/> Other reasons*: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20px; width: 100%; margin-top: 5px;"></div></p> <p><small>*In the event that we are unable to accept your paper application, you will have to submit your application online.</small></p>	
<b>SECTION 1 : CHECKLIST</b>	
<p><b>1</b> Please complete this section before you proceed to complete the remaining sections of the form. Tick the boxes to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understood all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on IRAS website.</p> <p><input type="checkbox"/> <a href="#">How GST Works?</a> and I understand the type(s) of supplies I need to be making to be eligible for GST registration.</p> <p><input type="checkbox"/> <a href="#">Do I Need to Register?</a> and I understand and have determined whether I am applying for GST registration under Compulsory or Voluntary basis.</p> <p><input type="checkbox"/> <a href="#">Responsibilities of a GST-Registered Business</a> and I understand the obligations that I need to comply with after GST registration.</p>	

SECTION 2 : DECLARATION											
<b>2 Who can complete this section ?</b>											
Type of business	Authorised signatory										
Company	A director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Joint Venture (JV)	A partner										
Sole-proprietor	The sole-proprietor										
Unincorporated body	An official such as a secretary, trustee or authorised official. A letter authorising the person (indicating his/her designation) to act on behalf of the Unincorporated Body is required.										
I, _____ NRIC/Passport/Fin number _____ (FULL NAME OF SIGNATORY IN BLOCK LETTERS) am aware that GST is a self-assessed tax. I declare all of the following:											
i. My details and information given in this application [including Doc Checklist] are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any false/incorrect declaration can result in revocation/cancellation of my GST registration, should I be GST-registered.											
ii. I will have systems and processes in place for complete, accurate and timely GST reporting.											
iii. I wi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GST Act.											
iv. I will only charge and collect GST from the effective date of GST registration, the date stated in letter of notification of GST registration. I will voluntarily disclose any wrongful collection of GST.											
v. For partnership business: I understand that once registered, I will need to account for GST on all taxable supplies including those of my existing and future partnership businesses with the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All my partners agree to the partnership being registered for GST, if it is voluntary registration.											
Signature _____	Date _____										
Director <input type="checkbox"/> Partner <input type="checkbox"/> Sole-proprietor <input type="checkbox"/> Authorised Official <input type="checkbox"/>											
Please specify designation (eg: Trustee, Chair Person of Organisation)											
SECTION 3 : APPLICANT'S PARTICULARS AND CONTACT DETAILS											
<b>3.1 Name of Business / Organisation / Sole-proprietor</b>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Unique Entity No. (UEN) or Business Reference No. (where applicable)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b>3.2 Director / Partner / Sole-proprietor / Authorised Official</b>											
The business will be notified via SMS (if provided) and email to retrieve the Notification of GST Registration at myTax Portal should the application be approve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 padding: 2px;">Name</td><td style="width: 50%;"></td></tr> <tr><td style="padding: 2px;">Local office No.</td><td></td></tr> <tr><td style="padding: 2px;">Email Address</td><td></td></tr> </table>	Name		Local office No.		Email Addres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 padding: 2px;">Local Mobile No.</td><td style="width: 50%;"></td></tr> <tr><td style="padding: 2px;">Business website address (if any)</td><td></td></tr> </table>	Local Mobile No.		Business website address (if any)	
Name											
Local office No.											
Email Address											
Local Mobile No.											
Business website address (if any)											
<input type="checkbox"/> Tick this box if the director/ sole-proprietor/ partner <b>DOES NOT</b> wish to receive reminders to GST e-Filing matters or other useful tax information (e.g. GST Bulletin newsletter, e-Filing alerts) through email and SMS.											
<b>3.3 Contact Person (if different from the above)</b>											
I authorise this person and his/her company as a tax agent/ consultant to handle this application including receipt of information and correspondence. The notification of GST registration will be issued to the busines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 padding: 2px;">Name</td><td style="width: 50%;"></td></tr> <tr><td style="padding: 2px;">Local office No.</td><td></td></tr> <tr><td style="padding: 2px;">Email Address</td><td></td></tr> </table>	Name		Local office No.		Email Addres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 padding: 2px;">Company &amp; Designation</td><td style="width: 50%;"></td></tr> <tr><td style="padding: 2px;">Local Mobile No.</td><td></td></tr> </table>	Company & Designation		Local Mobile No.	
Name											
Local office No.											
Email Address											
Company & Designation											
Local Mobile No.											

SECTION 4 : BUSINESS DETAILS & ACTIVITIES																									
4.1 Nature of busines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30px;"></div>																								
4.2 Description of goods and services provide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30px;"></div>																								
4.3 Business arrangement including how you carry out your business operatio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30px;"></div>																								
4.4 Source of funds to finance your busines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div>																								
4.5 Place of storage of goods, if applic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div>																								
4.6 Business Transfer - Have you have taken over a GST-registered business or changed the constitution of your busines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4.7 Preferred Mailing Address - ONLY for a) unincorporated body, b) establishment not registered with ACRA (including foreign entity), or c) sole-proprietor with more than one sole-proprietorship businesses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Blk/House number</td> <td style="text-align: center;">Storey</td> <td style="text-align: center;">Unit number</td> <td style="text-align: center;">Street Name</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5%;"></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7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5%;"></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75%;"></td> </tr> <tr> <td colspan="3"></td> <td style="text-align: right;">Postal Code</td> </tr> <tr> <td colspan="3"></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td> </tr> </table>	Blk/House number	Storey	Unit number	Street Name					#	-										Postal Code				
Blk/House number	Storey	Unit number	Street Name																						
#	-																								
			Postal Code																						
SECTION 5 : BASIS OF REGISTRATION																									
5.1 Has your business started making sales / receiving payment?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f your answer is No, please state the date or expected date of your first invoice to or first payment from your customer, whichever is earlier.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M</td> <td style="text-align: center;">M</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r> </table>							D	D	M	M	Y	Y												
D	D	M	M	Y	Y																				
5.2 <u>Select the type of supplies that you make or intend to make</u>																									
<input type="checkbox"/> Taxable supplies (e.g. local sales and exports) and other supplies (if any)	[Proceed to Section 5A]																								
<input type="checkbox"/> ONLY exempt supplies (e.g. loans to local person) or non-business activities (free or subsidised activities).	[Proceed to Section 5C]																								
<input type="checkbox"/> ONLY digital services supplied as an overseas supplier or a local / electronic marketplace operator on behalf of suppliers through its marketplace under the overseas vendor registration regime	[Proceed to Section 5D]																								
<input type="checkbox"/> ONLY out-of-scope supplies (e.g. sale of goods from overseas country A to B).	[Proceed to Section 6]																								
<input type="checkbox"/> ONLY exempt supplies that qualify for zero-rating (e.g. loans to overseas persons).	[Proceed to Section 6]																								

SECTION 5A : VALUE OF PAST TAXABLE SUPPLIES / TURNOVER	
<b>Retrospective Basis</b>	
<i>If your past taxable supplies was more than S\$1 million, you are under compulsory registration unless you are very certain that your expected taxable supplies will not exceed S\$1 million in the next 12 months. You will be registered on the 1st day of the 3rd month from the end of the period when you exceeded S\$1 million taxable supplies. Please provide the value of your taxable supplies in the GST Registration Calculator. [Refer to Doc Checklist]</i>	
5A.1 My taxable supplies have exceeded S\$1 million in a past 12-month period.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Proceed to Section 5B
5A.2 For a past 12-month period ending on or before 31 Dec 2018, My taxable supplies have exceeded S\$1 million in the <u>calendar quarter</u> ended	Month <input type="text"/> Year <input type="text"/> (Mar, Jun, Sep or Dec)
5A.3 For a past 12-month period ending on or after 1 Jan 2019, My taxable supplies have exceeded S\$1 million in the <u>calendar year</u> ended	Month <input type="text" value="Dec"/> Year <input type="text"/>
<b>Note:</b> From 2019 onwards, registration liability is determined on calendar year basis. You are liable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nly at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e. 31 Dec). From 2020 onwards, taxable supplies include supplies of digital services made by you as an electronic marketplace operator on behalf of suppliers listed on its platform under overseas vendor registration regime.	
SECTION 5B : VALUE OF FUTURE TAXABLE SUPPLIES / TURNOVER	
<b>Prospective Basis</b>	
<i>If you expect that your taxable turnover will exceed S\$1 million in the next 12 months, you are under compulsory registration and will be registered on the 31st day from the date of your forecast (i.e. date of document supporting your forecast). Please provide the expected value of your taxable supplies &amp; supporting documents. [Refer to Doc Checklist]</i>	
5B.1 i. I expect my taxable turnover to be <u>more than S\$1 million</u> in the next 12-month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Proceed to Section 5C
ii. I made this forecast on (make a forecast now or state the date when you were able to reasonably forecast in the past)	<input type="text"/> D D M M Y Y
iii. Expected value of standard-rated supplies (local sales) in the next 12 months (A)	S\$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0 0
Expected value of zero-rated supplies (export sales & international services) in the next 12 months (B)	S\$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0 0
Total expected taxable turnover in the next 12 months (A) + (B)	S\$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0 0
5B.2 Basis and a brief description on the total expected taxable turnover in 5B.1.iii. (You will only be registered under compulsory basis if you have reasonable grounds and documents to support that your taxable supplies in the next 12 months will exceed S\$1 million. Attach the relevant documents e.g. confirmed sales contracts, accepted quotations, confirmed purchase orders received/sales order sent, invoices issued with this applicatio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SECTION 5C : IMPORTING SERVICE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REVERSE CHARGE		
5C.1 I make or intend to make exempt supplies or non-business activities (i.e. free or subsidised service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Proceed to Section 5C.2	Proceed to Section 5D
5C.2 I procure services from overseas person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a href="#">Reverse Charge</a>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Proceed to Section 5D
<b>Retrospective Basis</b>		
<i>If you have procured more than S\$1million of imported service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reverse charge in a calendar year (i.e. 1 Jan to 31 Dec), you are under compulsory registration. You will be registered on 1 Mar of the following year. Please provide the documents to support this basis [Refer to Doc Checklist]</i>		
5C.3 i. I have procured more than S\$1million of imported services in the past calendar year: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i. State the calendar year ended:	Month <input type="text" value="Dec"/>	Year <input type="text"/>
<b>Prospective Basis</b>		
<i>If you intend to procure more than S\$1million of imported service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reverse charge in the next 12 months, you are under compulsory registration. You will be registered on the 31st day from the date of your forecast (i.e. date of document supporting your forecast). Please provide the expected value of imported services procured from overseas persons &amp; supporting documents. [Refer to Doc Checklist]</i>		
5C.4 i. I intend to procure <u>more than S\$1 million</u> of imported services which are within the scope of reverse charge in the next 12 month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i. I made this forecast on (make a forecast now or state the date when you were able to reasonably forecast in the past)	<input type="text" value="DDMMYY"/>	
iii. Expected value of imported services in the next 12 months	S\$	<input type="text" value="0000000000"/>
5C.5 Basis and a brief description on the expected services procured from overseas in 5C.4iii. (You will only be registered under compulsory basis if you have reasonable grounds and documents to support that the value of your imported services in the next 12 months will exceed S\$1 million. Attach the relevant documents e.g. signed purchased contract(s), invoices received with this application).		
SECTION 5D :SUPPLYING DIGITAL SERVICES TO NON-GST REGISTERED CUSTOMERS IN SINGAPORE		
If you are applying for registration under the overseas vendor registration simplified pay-only regime, please complete the <a href="#">QVR form</a> instead.		
5D.1 Are you an overseas supplier or a local / overseas electronic market place operator that is providing digital services to non-GST registered customers in Singapore?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Proceed to Section 5D.2	Proceed to Section 6
<b>Retrospective Basis</b>		
<i>If your past global turnover and value of digital services made to non-GST registered customers in Singapore for the calendar year (i.e. 1 Jan to 31 Dec) exceed S\$1 million &amp; S\$100,000 respectively, you are under compulsory registration unless you are very certain that your expected global turnover and value of digital services made to non-GST registered customers in Singapore will not exceed S\$1 million &amp; S\$100,000 respectively in the next 12 months. You will be registered on 1 Mar of the following year.</i>		
5D.2 i. The value of my global turnover & digital services provided to non-GST registered customers in Singapore <u>exceeded S\$1 million &amp; S\$100,000</u> respectively in a past calendar year.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i. State the calendar year ended:	Month <input type="text" value="Dec"/>	Year <input type="text"/>



SECTION 8 : BUSINESS OPERATIONS	
<p>Fo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please proceed to <b>question 8.2</b> directly.                      For unincorporated bodies, please proceed to <b>question 8.3</b> directly.</p>	
8.1	<p>For body corporate, what is the paid up capital of the company?</p> <p> <input type="checkbox"/> \$1- \$10,000                      <input type="checkbox"/> S\$10,001 - \$50,000                      <input type="checkbox"/> Not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50,001 - \$100,000                      <input type="checkbox"/> &gt; \$100,000                 </p>
8.2	<p>For body corporat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please specify the major shareholder/ partner in the business</p> <p>Name of Major Shareholder/ Partner: _____</p> <p>NRIC/ Passport/ Fin/ UE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_____</p>
8.3	<p>What is the staff strength of the business?</p> <p> <input type="checkbox"/> 0 - 5                                      <input type="checkbox"/> 6 - 9  <input type="checkbox"/> 10 - 50                                      <input type="checkbox"/> &gt; 50                 </p>
8.4	<p>Your business is managed by [please select all that apply]</p> <p> <input type="checkbox"/> Family members (the owners/directors/partners involved in the running of business are family members i.e siblings, spouse, in-laws, fiancée/fiancée, parents/grandparents/children)  <input type="checkbox"/> Single director/owner  <input type="checkbox"/> None or only one of the director/owner/partner is a Singapore Citizen  <input type="checkbox"/> None of the above                 </p>
8.5	<p>How are the accounting records maintained?</p> <p> <input type="checkbox"/> Manual bookkeeping  <input type="checkbox"/> Microsoft Excel or Microsoft Office  <input type="checkbox"/> Off-the-shelf accounting system                      [name of software: _____ ]  <input type="checkbox"/> Customised accounting system                      [name of vendor: _____ ]                 </p>
8.6	<p>Who prepares the GST returns and/or accounts?</p> <p>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staff  <input type="checkbox"/> Part time or temporary staff  <input type="checkbox"/> Freelance accountant  <input type="checkbox"/> Tax agent                                      [Please specify Name: _____ ]  <input type="checkbox"/> External accounting firm                      [Please specify Name: _____ ]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 _____ ]                 </p>
8.7	<p>Are the GST returns and/or accounts prepared in Singapore?</p> <p>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p>
8.8	<p>Has the preparer of the GST returns and/or accounts received any formal GST training? He/She will only be considered as having received such training if he/she has acquired certification for GST course under the Executive Tax Programme (GST) organised by IRAS and the Tax Academy or has attended GST training by a recognised educational establishment leading to certification or higher qualification.</p> <p>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p>
8.9	<p>How many years of experience does the preparer have in the preparation of the GST returns and/or accounts?</p> <p> <input type="checkbox"/> &lt; 1 year  <input type="checkbox"/> 1 – 5 years  <input type="checkbox"/> 6 – 10 years  <input type="checkbox"/> &gt; 10 years                 </p>
8.10	<p>Has the director / partner / sole-proprietor / authorised official / preparer completed the e-learning courses "Registering for GST" and "Overview of GST" and fully understands the contents?</p> <p>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Requirement waived                      <a href="#">(refer to IRAS website for conditions)</a> </p>

DOCUMENT CHECKLIST (To attach this to GST F1)															
Please submit scanned copies of all the required documents in section A and section B or C below (tick <input type="checkbox"/> the documents attached). The Comptroller may request for additional supporting documents in the course of reviewing your application. You may also be required to provide a security deposit in the form of a banker's guarantee/ insurance guarantee.															
Your application for GST registration will be rejected if you did not provide all the required supporting documents.															
Business Name : _____	Date : _____														
_____	Name of Contact : _____														
<i>Please delete accordingly: Company / LLP /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 Joint Venture / Sole-proprietor / Unincorporated Body</i>															
	Contact No. : _____														
<b>A. Submit all the following documents where applicable :</b>															
<input type="checkbox"/> A1. i) If registered with ACRA: ACRA Business Profile & ACRA Business Profile for each sole-proprietorship business owned, or each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with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if any) ii) If incorporated oversea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ficially translated into English and notarised (containing entity name, date of incorporation, country of incorporation) iii) If Unincorporated Body: Letter of Authorisation and agreement, contract, deed or other documents supporting existence <input type="checkbox"/> A2. Duly completed Appointment of Local Agent, if incorporated overseas or sole-proprietor is not a Singapore citizen or PR or all partners are not Singapore citizens or PR (refer to "Local Agent" tab for template) <input type="checkbox"/> A3. Form GST F3 for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and Joint Venture (refer to "F3" tab) <input type="checkbox"/> A4. GIRO Application Form (submit by post) <input type="checkbox"/> A5. Acknowledgement pages <sup>(1)</sup> from the e-Learning Courses "Registering for GST" and "Overview of GST" (optional for compulsory registration)															
<b>B. If you have started sales / received payment, you are required to submit all the following documents where applicable:</b>															
<input type="checkbox"/> B1. Completed GST Registration Calculator <sup>(2)</sup> for last 2 years, if past sales is more than S\$1M under retrospective basis <input type="checkbox"/> B2. A copy of the latest Profit & Loss, including reports & notes to accounts (need not be audited) <u>OR</u> Recent 2 months of detailed Sales & Purchase Listings in the format below <sup>(3)</sup> , if business is less than 2 years <input type="checkbox"/> B3. Copies of 3 recent suppliers' invoices received, including shipping documents. The invoices must include 1 recent overseas supplier's invoice, if you intend to make exempt supplies or non-business activities and your services procured from overseas persons are within the scope of Reverse Charge <input type="checkbox"/> B4. Copies of 3 recent invoices issued to your customers, including shipping documents <input type="checkbox"/> B5. A copy of the 1 <sup>st</sup> invoice issued to your customer, if sales started less than 1 year <input type="checkbox"/> B6. A copy of the signed contract(s), accepted tender, purchase order & other documents to support the forecast, if you made a forecast that your taxable supplies for next 12 months will exceed S\$1M <input type="checkbox"/> B7. A copy of the signed purchase contract(s) & other documents to support the forecast, if you made a forecast that your services procured from overseas persons within the scope of Reverse Charge for next 12 months will exceed S\$1M															
<b>C. If you have not started sales / received payment, you are required to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where applicable:</b>															
<input type="checkbox"/> C1. Copy of signed contract(s), accepted tender/quotations, confirmed purchase order(s), document(s) on transfer or acquisition of business & other documents supporting your forecasted taxable supplies in the next 12 months (You will only be registered under compulsory basis if the documents provided show that your taxable supplies in the next 12 months will exceed S\$1M) <input type="checkbox"/> C2. Copy of rental agreement (including invoice for rental and payment evidence of deposit or rental paid, if any) for your business office, warehouse, shop, etc <input type="checkbox"/> C3. Copy of Licence/ Permit/ Approval from relevant authorities to run business activities <input type="checkbox"/> C4. Copy of signed "Acceptance Copy" of Option to purchase / Sales & purchase agreement of property(ies) <input type="checkbox"/> C5. Recent 2 months of detailed Purchase Listing in the format below <sup>(3)</sup> with 3 copies of recent suppliers' invoices received, including shipping documents. The invoices must include 1 recent overseas supplier's invoice, if you intend to make exempt non-business activities and your services procured from overseas persons are within the scope of Reverse Charge. <input type="checkbox"/> C6. Any other documents to support your intention to make taxable supplies, out-of-scope supplies, or exempt supplies															
<sup>(1)</sup> Acknowledgement pages are at the completion of the courses at <a href="http://www.iras.gov.sg">www.iras.gov.sg</a> > Quick links > e-Learning > GST Traders															
<sup>(2)</sup> The GST Calculator can be downloaded from the following link : <a href="http://www.iras.gov.sg">www.iras.gov.sg</a> > Quick links > Calculators > GST Registration Calculator															
<sup>(3)</sup> Format for Sales Listing :															
<table border="1"> <thead> <tr> <th>Invoice Date (DD/MM/YYYY)</th> <th>Invoice Number</th> <th>Name of Customer</th> <th>Description</th> <th>Invoice Amount (S\$)</th> <th>Destination of goods (if applicable)</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Invoice Date (DD/MM/YYYY)	Invoice Number	Name of Customer	Description	Invoice Amount (S\$)	Destination of goods (if applicable)								
Invoice Date (DD/MM/YYYY)	Invoice Number	Name of Customer	Description	Invoice Amount (S\$)	Destination of goods (if applicable)										
<sup>(3)</sup> Format for Purchase Listing :															
<table border="1"> <thead> <tr> <th>Invoice Date (DD/MM/YYYY)</th> <th>Invoice Number</th> <th>Name of Supplier</th> <th>Supplier's GST Registration Number (to omit all dashes)</th> <th>Description</th> <th>Invoice amount excluding GST (S\$)</th> <th>GST (S\$) (if applicable)</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Invoice Date (DD/MM/YYYY)	Invoice Number	Name of Supplier	Supplier's GST Registration Number (to omit all dashes)	Description	Invoice amount excluding GST (S\$)	GST (S\$) (if applicable)							
Invoice Date (DD/MM/YYYY)	Invoice Number	Name of Supplier	Supplier's GST Registration Number (to omit all dashes)	Description	Invoice amount excluding GST (S\$)	GST (S\$) (if applicable)									

<b>MASTER GIRO APPLICATION FORM</b> For payment and refund of Income Tax/ Property Tax/ GST etc.		 <b>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b>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1800-356 8633																				
<b>Part 1: PARTICULARS OF APPLICANT (Fields marked with (*) are required)</b>																						
(This form may take you about 3 - 5 minutes to complete if you have your bank passbook / statement on hand. Please do not fax the GIRO form to us as the bank requires original signature for verification.)																						
Amendments made on the form must be countersigned by the bank account holder. Use of correction fluid / tape is not allowed.																						
Name of Taxpayer* <input style="width: 95%; height: 25px;" type="tex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Please tick ✓ the tax type (What do you want to pay?) *</th> </tr>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                     Income Tax  <input type="checkbox"/> Individual  <input type="checkbox"/> Corporate  <input type="checkbox"/> Club &amp; Association                 </td> <td style="width: 50%; padding: 2px;"> <input type="checkbox"/> Property Tax  <input checked="" type="checkbox"/> GST  <input type="checkbox"/> S45 Withholding Tax                 </td> </tr> </table>		Please tick ✓ the tax type (What do you want to pay?) *		Income Tax <input type="checkbox"/> Individual <input type="checkbox"/> Corporate <input type="checkbox"/> Club & Association	<input type="checkbox"/> Property Tax <input checked="" type="checkbox"/> GST <input type="checkbox"/> S45 Withholding Tax																
Please tick ✓ the tax type (What do you want to pay?) *																						
Income Tax <input type="checkbox"/> Individual <input type="checkbox"/> Corporate <input type="checkbox"/> Club & Association	<input type="checkbox"/> Property Tax <input checked="" type="checkbox"/> GST <input type="checkbox"/> S45 Withholding Tax																					
Mailing Address of Taxpayer* <input style="width: 95%; height: 35px;" type="text"/>																						
Tax Reference No. (NRIC/FIN/ITR/UEJ)*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0px;"> </td> </tr> </table>																						
<b>My/Our Contact Details</b> Contact No.*: <input style="width: 95%; height: 25px;" type="text"/>																						
Email address: <input style="width: 95%; height: 25px;" type="text"/>																						
(a) I/We hereby instruct the Bank to process IRAS' instruction to debit and credit my/our account. (b) The Bank is entitled to reject IRAS' debit instruction if my/our account does not have sufficient funds and charge me/us a fee for this. The Bank may also at its discretion allow the debit even if this results in an overdraft on the account and impose charges accordingly. (c) This authorisation wi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the Bank's written notice sent to my/our address last known to the Bank or upon the Bank's receipt of my/our revocation through IRAS.																						
Bank Account Details (Account must be held by the taxpayer wholly or jointly with others. Do not use credit card number.) Name of Bank*: <input style="width: 95%; height: 25px;" type="text"/> Account No.*: <input style="width: 95%; height: 25px;" type="text"/>	My/Our Signature(s) / Thumbprint(s)* / Company's Stamp as in Bank's record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0px; width: 100%;"></div>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Please remember to sign in this box. * For thumbprint(s), please go to the Bank's respective branch with your identification document(s).</p> Date: <input style="width: 95%; height: 25px;" type="text"/>																					
My Name/ Our Company Account Name as in Bank's Record*: <input style="width: 95%; height: 35px;" type="text"/>																						
<b>Part 2: FOR IRAS' COMPLETION</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SWIFT BIC</th> <th style="width: 30%;">Originating Bank Account</th> <th style="width: 20%;">Tax Reference No.</th>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center;">D B S S S G S G x x x</td> <td style="text-align: center;">001-023871-0</td> <td> </td> </tr> </table>	SWIFT BIC	Originating Bank Account	Tax Reference No.	D B S S S G S G x x x	001-023871-0																	
SWIFT BIC	Originating Bank Account	Tax Reference No.																				
D B S S S G S G x x x	001-023871-0																					
Note: The above Bank account is solely for tax collection by GIRO. Please DO NOT use this account for any payment / Fund Transfer to IRA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SWIFT BIC</th> <th style="width: 50%;">Account No. to be Debited / Credited</th>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center;"> </td> <td> </td> </tr> </table>	SWIFT BIC	Account No. to be Debited / Credited																				
SWIFT BIC	Account No. to be Debited / Credited																					
<b>Part 3: FOR BANK'S COMPLETION</b>																						
To: IRAS This Application is hereby REJECTED (please tick ✓) for the following reason(s) :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input type="checkbox"/> Signature/Thumbprint # differs from Bank's records  <input type="checkbox"/> Signature/Thumbprint # Incomplete/unclear #  <input type="checkbox"/> Account operated by signature/thumbprint #                 </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input type="checkbox"/> Wrong account number  <input type="checkbox"/> Amendments not countersigned by customer  <input type="checkbox"/> Others : _____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Signature/Thumbprint # differs from Bank's records <input type="checkbox"/> Signature/Thumbprint # Incomplete/unclear # <input type="checkbox"/> Account operated by signature/thumbprint #	<input type="checkbox"/> Wrong account number <input type="checkbox"/> Amendments not countersigned by customer <input type="checkbox"/> Others : _____																		
<input type="checkbox"/> Signature/Thumbprint # differs from Bank's records <input type="checkbox"/> Signature/Thumbprint # Incomplete/unclear # <input type="checkbox"/> Account operated by signature/thumbprint #	<input type="checkbox"/> Wrong account number <input type="checkbox"/> Amendments not countersigned by customer <input type="checkbox"/> Others : _____																					
Name of Approving Officer # Please delete where inapplicable	Authorised Signature	Date																				
		Verified by IRAS																				

**APPOINTMENT OF LOCAL AGENT:**

Under Section 33(1)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Act, an agent resident in Singapore must be appointed as the substituted person of the overseas person (who is applying for GST Registration) to be accountable for any tax or any duties accountable by the overseas person. As such, please give us a Letter of Authorisation from the applicant (i.e. the overseas person) using the applicant's company letterhea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at:

*Overseas Person (Name) hereby appoints Singapore Employee or agent (Name, NRIC/UEN & Address) as 'his/her/its/their agent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his/her/its/their legal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GST and authorises 'him/her/them for this purpose to sign GST Returns and all other documents.*

Name of Overseas Person: \_\_\_\_\_

Full Name of Signatory & Designation: \_\_\_\_\_

Signature & Date: \_\_\_\_\_

Agreed and accepted as of DD/MM/YY. \_\_\_\_\_

Name of Local Agent: \_\_\_\_\_

Full Name of Signatory & Designation: \_\_\_\_\_

Signature & Date: \_\_\_\_\_

\* Delete as appropriate

SAMPLE


If you are a foreign company not incorporated in Singapore, you must provide us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 a.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overseas company, officially translated into English and notarised (containing entity name, date of incorporation, country of incorporation)
- b. Detailed description of your business activity (including how the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in Singapore).
- c. Whether you will be setting up a branch in Singapore. If yes, please provide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f no, please give us the reasons.
- d. Detailed description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your local agent.
- e. Nature of business carried on by your local agent.

### GST F3

## NOTIFICATION OF LIABILITY TO BE GST-REGISTERED: DETAILS OF ALL PARTNERSHIPS AND PARTNERS

The Comptroller of Goods and Services Tax  
55 Newton Road,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1800-356 8633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

**Important Notes**

(1) Submit the Form in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 **Application for GST registration for partnership business (this form must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GST F1)**  
If you have other partnership businesses with the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please give us the date of commencement of each business in the spaces provided below. Please also add the total taxable turnover of these businesses when completing the GST F1. A copy of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Business Profile for each business, if applicable, has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GST F1 and GST F3.
- **Changes in partners**  
You are required to complete and submit the GST F3 form within 30 days of the date on which the change occurs. Please attach the latest copy of the ACRA Business Profile for verification.
- **You have set up additional Partnership Business(es) with the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You are required to notify the Comptroller of GST within 30 days of the formation of any additional partnership business(es) with the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Please attach the latest copy of the ACRA Business Profile and submit this form together with the GST F1.

(2) **Email your application:** Scan and email the completed application and the GST F1 (if you are also applying for GST registration) to [GST\\_form@iras.gov.sg](mailto:GST_form@iras.gov.sg)  
Do not send this application via post or by hand.

(3) **Retain a copy:** Make a copy of this form and retain it for your internal records.

(4) **Have the following information ready:**

- Name, Unique Entity Number (UEN) and Date of Commencement of the Partnership business
- Name and NRIC/Passport/Fin Number of the partners involved

Please list below, in BLOCK LETTERS, the details of all the PARTNERSHIPS with the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and the particulars of all the partners. This form must be duly signed by each and every partner in the space provided.

1. PARTNERSHIP DETAILS

Name

UEN  Commencement date of business   

D D M M Y Y

Contact Person's Name:	<input style="width: 95%; height: 20px;" type="text"/>	E-mail address:	<input style="width: 95%; height: 20px;" type="text"/>
Contact Number:	<input style="width: 95%; height: 20px;" type="text"/>		

2. DETAILS OF PARTNERSHIP WITH THE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Name

UEN  Commencement date of business   

D D M M Y Y

NOTE : PLEASE PHOTOCOPY THIS PAGE IF YOU HAVE MORE THAN 2 PARTNERSHIPS WITH THE SAME COMPOSITION OF PARTNERS.

GST F3

1. PARTNER'S DETAILS	
Salutation	*Mr/Mrs/Mdm/Miss/Ms/Others - specify <input type="text"/>
Full Name	<input type="text"/>
NRIC/Passport/Fin Number	<input type="text"/>
Signature :	_____ Date : _____

2. PARTNER'S DETAILS	
Salutation	*Mr/Mrs/Mdm/Miss/Ms/Others - specify <input type="text"/>
Full Name	<input type="text"/>
NRIC/Passport/Fin Number	<input type="text"/>
Signature :	_____ Date : _____

3. PARTNER'S DETAILS	
Salutation	*Mr/Mrs/Mdm/Miss/Ms/Others - specify <input type="text"/>
Full Name	<input type="text"/>
NRIC/Passport/Fin Number	<input type="text"/>
Signature :	_____ Date : _____

NOTE : PLEASE PHOTOCOPY THIS PAGE IF YOU HAVE MORE THAN 3 PARTNERS.  
Please ensure that this form is fully completed and duly signed before submission.

## V 기타 조세

### 1. 개별소비세

#### 가. 과세대상

싱가포르의 개별소비세(Excise Duty)는 관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관세청에서 관할하고 있다.<sup>233)</sup>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는 싱가포르 내 수입되는 재화에 과세되고, 개별소비세는 싱가포르 내 제조 및 수입되는 재화에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는 증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과세되며,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나. 품목별 세율

싱가포르 개별소비세의 품목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sup>234)</sup>

〈표 II-25〉 개별소비세 품목별 세율

과세대상		세율 또는 세액
주류	알코올음료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SGD 113/kg
	흑맥주, 에일, 과실주(사과주, 샌디) 등	SGD 60/liter
	위스키, 와인, 사케, 증류주 등	SGD 88/liter
담배	시가, 물담배, 코담배, 기타 담배 등	SGD 427/kg
	제조되지 않은 담배, 담배줄기 등	SGD 388/kg
	실담배, 씹는담배 등	SGD 329/kg
	정향 담배, 껌 등	42.7센트/g 또는 개비
자동차	자동차	20%
	오토바이	12%

233)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and-fees/duties-and-dutiable-goods>, 검색일자: 2020. 9. 15.

234)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duties-and-dutiable-goods/list-of-dutiable-goods>, 검색일자: 2020. 9. 15.

〈표 II-25〉의 계속

과세대상		세율 또는 세액
유류	휘발유 (옥탄가에 따라 차등 적용)	SGD 7.1/dal
		SGD 6.8/dal
		SGD 6.4/dal
		SGD 6.3/dal
		SGD 5.6/dal
		SGD 3.7/dal
	경유	SGD 2/dal
천연가스	20센트/kg	

자료: 싱가포르 관세청

## 2. 재산세

### 가. 과세대상

싱가포르 세법상 재산세는 모든 주택(houses), 건물(buildings), 토지(land), 공동주택(tenants)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되었는지, 소유자가 주거하는 중인지, 공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한다. 건물이란 토지 위에 세워진 구조물로서 주거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오두막, 작업장, 지붕이 있는 구조물, 부두, 지하차장탱크 등을 포함한다.

### 나. 과세표준 및 세율<sup>235)</sup>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연간가치(Annual Value)이다. 연간가치란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에 발생할 연간 임대료의 추정치이며, 임대하거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또는 공실이 경우 모두 동일하게 결정된다.

건물의 연간가치는 건물이 임대된 경우 연간 예상 임대료의 총합으로 계산하며, 건물 내 포함된 가구, 유지 장치 및 관리비용은 제외한다. 예상 임대료는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

235)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Property/Property-owners/Learning-the-basics/About-Annual-Value/>, <https://www.iras.gov.sg/IRASHome/Property/Property-owners/Learning-the-basics/About-Annual-Value/>, 검색일자: 2020. 10. 19.

비교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건물의 연간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① 주변 유사 비교대상 부동산의 임대료
- ② 부동산의 크기
- ③ 부동산의 위치
- ④ 부동산의 상태
- ⑤ 기타 물리적 특성

토지 및 개발지구의 연간가치는 토지 소유권의 시장가격 예측치의 5%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터인 토지와 건설 중인 토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유공장, 석유공장, 발전소로 사용되는 특수 부동산의 연간가치는 공식에 따른 계산법과 기타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① 공식에 따른 계산법은 토지 소유권의 자본가치의 5% 기준에서 결정함
- ②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익법(Profit's method) 또는 계약자 테스트(Contractor's test)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함(해당 방법은 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를 위한 원가와 수취금액을 활용하는 것임)

싱가포르 국세청은 부동산의 연간가치를 매년 검토하여 비교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연간가치가 최신 시장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연간가치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이 증대하게 변동되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변동일자부터 부동산의 연간가치를 수정할 수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연간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sup>236)</sup>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연간가치에 따라 0~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로써 대부분의 자가 주거용 부동산은 10%의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가의 주택에 한하여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가 SGD 36,000인 경우에는 첫 SGD 8,000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

236)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Property/Property-owners/Working-out-your-taxes/Property-Tax-Rates-and-Sample-Calculations/>, 검색일자: 2020. 10. 19.

하고 이후 SGD 28,000에 대하여 4% 세율을 적용하므로 총납부할 재산세액은 SGD 1,120이 된다. 더불어 연간가치가 SGD 84,000인 부동산의 경우 첫 SGD 8,000에 대하여 0%, 이후 SGD 47,000에 대하여 4%, SGD 15,000에 대하여 6%, 최종 SGD 14,000에 대하여 8%가 적용되어 총납부할 재산세액은 SGD 3,900이 되므로 총연간가치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것에 비하여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10~20%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단, 아래 제외리스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연간가치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 ① 스포츠클럽 안에 있는 숙박시설
- ② 샬레(Chalet)
- ③ 아동케어센터, 학생케어센터, 어린이집
- ④ 복지시설
- ⑤ 병원, 호스피스, 재활시설, 요양원 등
- ⑥ 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 ⑦ 서비스드 아파트먼트
- ⑧ 재산세법 S6(6)에 따라 면제되는 부동산의 스탭용에 해당하는 부분

주거용 부동산의 특례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26〉 주거용 부동산의 특례세율

유형	과세표준	세율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	첫 SGD 8,000	0%
	다음 SGD 47,000	4%
	다음 SGD 15,000	6%
	다음 SGD 15,000	8%
	다음 SGD 15,000	10%
	다음 SGD 15,000	12%
	다음 SGD 15,000	14%
	SGD 13,000 초과분	16%

〈표 II-26〉의 계속

유형	과세표준	세율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거용 부동산	첫 SGD 30,000	10%
	다음 SGD 47,000	12%
	다음 SGD 15,000	14%
	다음 SGD 15,000	16%
	다음 SGD 15,000	18%
	SGD 90,000 초과분	2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 다. 신고 및 납부

싱가포르 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연간 재산세를 1월 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말 부동산 보유자에게 다음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송부한다.<sup>237)</sup> 부동산의 연간가치를 재평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간가치가 변경되어 국세청장이 추가적인 재산세를 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GIRO(General Interbank Recurring Order)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다.<sup>238)</sup> GIRO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1년간 무이자로 할부하는 방법과 1년치를 한 번에 선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월할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5일 자동으로 출금된다. 그 외 방법으로는 전자적 송금 방법, 신용카드 납부 방법, 전산 납부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37)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Property/Property-owners/Paying-your-taxes/Property-Tax-Payment-Due-Dates/>, 검색일자: 2020. 10. 19.

238)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Property/Property-owners/Paying-your-taxes/How-to-Pay-Tax/>, 검색일자: 2020. 10. 19.

### 3. 인지세

#### 가. 과세대상

싱가포르의 인지세는 인지세법(Stamp Duties Act)에 따라 주식, 부동산 또는 주식,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한다.<sup>239)</sup> 과세대상 문서가 실행되는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자산의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있으며 실물 또는 전자적 문서를 모두 포함한다. 단, 아래 열거하는 문서는 인지세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sup>240)</sup>

- ① 정부가 직접 또는 이를 대신하여 계약한 문서로서 정부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문서
- ② 싱가포르 외부 자산의 양도, 이전, 임대, 저당으로 계약하는 문서
- ③ 싱가포르 외부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문서
- ④ 협동조합법(Co-operative Society Act)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이 직접 또는 이를 대신하여 계약한 문서
- ⑤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당국이 양도, 이전 또는 협상한 증권에 관한 문서
- ⑥ 토지법에 따라 토지세를 징수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 ⑦ 주택구분법(Land Titles (Strata) Act) 제125조, 126조에 따라 등록된 양도문서
- ⑧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 앞으로 발행된 문서
- ⑨ 공적임대제도에 따라 2012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임대계약에 관한 문서

239)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Learning-the-basics/Stamp-Duty-Basics-for-Property/>, 검색일자: 2020. 9. 17.

240)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Claiming-Refunds-Remissions-Reliefs/Exemptions/>, 검색일자: 2020. 9. 17.

나. 과세표준 및 세율

1) 매수인이 납부하는 인지세(Buyer's Stamp Duty, BSD)

가) 임대차거래

연간 임대료가 SGD 1,000을 초과하는 경우 4년의 계약기간까지는 연간 총임대료의 0.4%를 BSD로 납부한다. 계약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간의 연간 평균 임대료의 4를 곱한 금액의 0.4%를 BSD로 납부한다.

나) 부동산의 매매거래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시 거래가액 또는 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BSD로 납부한다. BSD는 매수가격의 첫 SGD 18만은 1%를 적용하며, 다음 SGD 18만은 2%, 그다음 SGD 64만은 3%,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수가격의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BSD를 납부한다.<sup>241)</sup>

다) 주식 등의 매매거래

주식의 매매거래 시 이전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가액 또는 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의 0.2%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BSD로 납부한다. 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저당물의 유형에 따라 저당금액의 0.2% 또는 0.4%를 계산하여 최대 SGD 500까지 납부한다.<sup>242)</sup>

〈표 II-27〉 저당권 유형에 따른 인지세율

유형	과세표준	세율
저당권 설정	저당금액	0.4%
저당 내용의 변경(Variation)	저당금액	0.4%
Equitable mortgage	저당금액	0.2%
저당권의 양도	연체금을 포함한 양도한 저당금액	0.2%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241)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Working-out-your-Stamp-Duty/Buying-or-Acquiring-Property/What-is-the-Duty-that-I-Need-to-Pay-as-a-Buyer-or-Transferee-of-Residential-Property/Buyer-s-Stamp-Duty-BSD-/>, 검색일자: 2020. 9. 17.

242)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Shares/Working-out-your-Stamp-Duty/Mortgaging-Shares/>, 검색일자: 2020. 10. 14.

2) 매수인의 부가 인지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 ABSD)<sup>243)</sup>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시 매수인은 아래 요건을 고려한 세율에 따라 부가 인지세(ABSD)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가) 매수인의 개인 또는 기업 판정

매수인이 개인 또는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ABSD 세율이 달라진다. 여부 판정 시 등록되지 않은 협회, 집합증권투자제도에 따른 신탁, 신탁관리자, 파트너십은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만일 다른 특성의 매수인 여럿이 공동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ABSD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더불어, ABSD 세율은 주거용 부동산의 명목 소유자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에 따라 결정한다.

## 나) 매수인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점에 매수인의 거주자 판정 여부에 따라 ABSD 세율을 결정한다. 만일 매수하는 당시 이민수속 중이나 거주자임을 인정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낮은 ABSD 세율이 적용된다.

## 다) 매수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의 개수 산정

매수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 ① 매매계약서 작성 및 승인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② 부분소유 또는 공동소유 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전체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③ 신탁이 보유한 자산은 해당 신탁의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④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구입하더라도, 각각 부동산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산정한다.
- ⑤ 증여, 상속, 출시, 정산, 신탁의 공표, 권한위임장, 교환에 따라 얻게 되는 부동산도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243)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Working-out-your-Stamp-Duty/Buying-or-Acquiring-Property/What-is-the-Duty-that-I-Need-to-Pay-as-a-Buyer-or-Transferee-of-Residential-Property/Additional-Buyer-s-Stamp-Duty-ABSD-/>, 검색일자: 2020. 9. 17.

- ⑥ HDB 상점으로 거주공간이 함께 있거나, 가정집을 겸한 상점을 보유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⑦ 강제집행에 따른 취득 부동산은 제외한다.
- ⑧ 싱가포르 외부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위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각 경우에 따른 ABSD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28〉 매수인 구분에 따른 ADSD 세율

매수인의 구분		ABSD 세율
싱가포르 시민 (Citizens)	첫 번째 구매	N/A
	두 번째 구매	12%
	세 번째 구매 이상	15%
싱가포르 거주자 (Permanent Residents)	첫 번째 구매	5%
	두 번째 구매 이상	15%
외국인(Foreigners)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20%
기업(Entities)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25% <sup>1)</sup>
		주택개발업자의 경우 5% 가산세율 적용 <sup>2)</sup>

주: 1) 주택개발업자의 경우 25%의 세율이 면제될 수 있음

2) 주택개발업자의 5% 가산세율은 면제될 수 없음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 3) 매도인이 납부하는 인지세(Seller's Stamp Duty, SSD)

#### 가) 주거용 부동산<sup>244)</sup>

매도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인지세(SSD)를 납부하여야 한다. SSD는 실제 거래가액 또는 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2%,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8%,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4%의 세율을 적용한다.

244)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Working-out-your-Stamp-Duty/Selling-or-Disposing-Property/Seller-s-Stamp-Duty-SSD--for-Residential-Property/>, 검색일자: 2020. 10. 8.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SSD 납부를 면제한다.

- ① 주택개발법(the Housing Developers Act)에 따라 인가된 주택개발업자가 주거용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고 매각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이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며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③ 토지취득법(Land Acquisition Act)에 따라 정부에 의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④ 파산에 의한 선고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⑤ 비자발적 해산에 의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⑥ 주거용부동산법(Residential Properties Act)에 따라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⑦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이하 HDB) 주택<sup>245)</sup>으로 재개발 계획(Selective Enbloc Redevelopment Scheme, 이하 SERS)에 선정되었으나 공개시장에 매각한 주거용 부동산
- ⑧ HDB 주택으로 HDB에 다시 매각하는 경우
- ⑨ HDB 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HDB 주택을 상속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하게 된 경우
- ⑩ HDB 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자가 HDB 주택을 상속받아 HDB 주택을 매각하게 된 경우
- ⑪ HDB 주택을 보유한 자가 HDB 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개의 HDB 주택을 매각하게 된 경우

#### 나) 산업용 부동산<sup>246)</sup>

매도인이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인지세(SSD)를 납부하여야 한다. SSD는 실제 거래가액 또는 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5%,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10%,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한다.

245) HDB 주택이란 주택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하여 99년의 임대계약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택으로서,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에 해당한다.

246)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Working-out-your-Stamp-Duty/Selling-or-Disposing-Property/Seller-s-Stamp-Duty--SSD--for-Industrial-Property/>, 검색일자: 2020. 10. 8.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SSD 납부를 면제한다.

- ① 공공기관이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며 산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② 토지취득법에 따라 정부에 의하여 산업용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경우
- ③ 파산에 따른 절차, 비자발적 해산에 따라 산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④ HDB와 주룽타운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JTC)에 의하여 재매입되는 경우
- ⑤ 재개발계획 또는 재매입계획에 따라 JTC에 산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⑥ 산업용 부동산 개발에 의하여 건축된 산업용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자가 매각하는 경우

〈표 II-29〉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과세대상문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임대차거래	임차인	계약기간 4년 이내 연간 총임대료		0.4%
		계약기간 4년 초과 4년간의 연평균 임대료÷4		
주거용 부동산 양도	매수인	거래가액의 첫 SGD 180,000		1%
		다음 SGD 180,000		2%
		다음 SGD 640,000		3%
		나머지		4%
	매도인	Max(거래가액, 시장가액)	보유기간 1년 이내	12%
			1년 초과 2년 이하	8%
			2년 초과 3년 이하	4%
			3년 초과	N/A
비주거용 부동산 양도	매수인	매수가액의 첫 SGD 180,000		1%
		다음 SGD 180,000		2%
		나머지		3%
	매도인	Max(거래가액, 시장가액)	보유기간 1년 이내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3년 이하	5%
			3년 초과	N/A
	주식 양도	매수인	Max(거래가액, 시장가액)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인	저당금액		0.2% or 0.4%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 다. 신고 및 납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며,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문서별로 정해진 조건에 따른다. 인지세는 문서가 싱가포르 내에서 계약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싱가포르 외에서 계약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지연납부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SGD 1만에 이르는 벌금 또는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sup>247)</sup>

### 4. 오락 관련세

#### 가. 도박세

싱가포르 내에서 도박(Betting and Sweepstake)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내무부(the Minister for Home Affairs)에 감면(exemption)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도박이 공서 양속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절차이다. 내무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재무부에서 감면단체로 지정한 운영자는 도박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금액은 도박세법(Betting and Sweepstake Duties Act)에 따라 국세청에 도박세를 납부하여야 한다.<sup>248)</sup>

##### 1) 과세대상<sup>249)</sup>

과세대상 도박의 종류로는 재무부가 지정하는 감면단체가 운영하는 패리뮤추얼 베팅<sup>250)</sup>(스포츠토토, 경마 등), 경품추첨 형식의 도박(sweepstakes) 및 축구 및 스포츠경기에 대한 고정배당률 게임, 현금 및 신용 베팅 등이 포함된다.

##### 2) 과세표준 및 세율<sup>251)</sup>

경마를 포함한 패리뮤추얼 베팅, 스포츠경기에 대한 베팅은 베팅으로 얻은 금액에서 GST

247)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 14. Miscellaneous Indirect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14.&refresh=1609905858302#cta\\_sg\\_s\\_1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_s_14.&refresh=1609905858302#cta_sg_s_14...), 검색일자: 2020. 9. 17.

248)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Betting-and-Sweepstake-Duties/>, 검색일자: 2020. 10. 14.

249) Ibid.

250) 패리뮤추얼베팅이란 경기에서 이기는 팀에 베팅한 자에게 참여자들이 건 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전부를 나누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251)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Betting-and-Sweepstake-Duties/>, 검색일자: 2020. 10. 14.

를 제외한 금액의 25%를 도박세로 납부해야하며, 위를 패리뮤추얼 베팅 및 경품추첨 형식의 도박, 현금 및 신용 베팅 등은 30%를 도박세로 납부해야 한다. 각 도박의 유형별 도박세 산출 방법은 <표 II-30>과 같다.

<표 II-30> 도박 유형별 도박세 산출 방법

유형	과세표준	세율
경마를 포함한 패리뮤추얼 베팅	수취한 베팅금액 - 지급한 상금 - GST <sup>1)</sup>	25%
배당률이 정해진 스포츠경기		
경마를 제외한 패리뮤추얼 베팅(토토 등)	수취한 베팅금액 - GST <sup>1)</sup>	30%
현금 및 신용 베팅		
경품추첨 형식의 도박(sweepstakes)	Sweepstakes에 사용된 금액 - GST <sup>1)</sup>	30%

주: 1) GST = 7/107×(수취한 베팅금액 - 지급한 상금)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3) 신고 및 납부<sup>252)</sup>

과세대상 도박 운영자는 베팅금액을 수취한 계산서와 국세청 납세금액을 작성하여 정해진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도박운영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SGD 5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며, 고의로 계산서를 거짓 또는 누락한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4배 또는 SGD 1천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도박의 유형별 신고납부 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31> 도박 유형별 신고납부기한

유형	신고납부기한
경마베팅	경마경기의 마지막 날 이후 15일 이내
배당률이 정해진 스포츠경기	스포츠경기가 종료된 이후 15일 이내
경품추첨 형식의 도박(sweepstakes)	추첨자가 당첨된 날 이후 15일 이내
기타 베팅(토토 등)	베팅의 결과가 확정된 날 이후 15일 이내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252) Ibid.

## 나. 민간복권세

### 1) 과세대상<sup>253)</sup>

복권(Lottery)이란 추첨을 통해서 금전이 배당되는 게임을 말하며 슬롯머신, 럭키드로우, 톰볼라 등이 포함된다. 민간복권(Private Lottery)이란 도박, 내기, 복권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되지 않은 클럽 및 협회의 회원에게만 판매되는 복권을 의미한다. 해당 클럽이나 협회는 민간 복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민간복권법(Private Lotteries Act)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 금액에 대하여 민간복권세(Private Lotteries Duty)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과세표준 및 세율<sup>254)</sup>

슬롯머신의 경우 복권의 판매로 얻은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매출액의 9.5%를 민간 복권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럭키드로우, 톰볼라 등 복권의 경우 매출액의 30%를 민간복권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최하는 클럽 및 협회 등이 GST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GST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신고 및 납부<sup>255)</sup>

복권사업을 영위하는 클럽 또는 협회는 복권사업을 수행한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난 14일 이내에 민간복권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한다. 단, 1회성 복권을 판매한 경우 복권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민간복권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매 사업연도 말 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조정사항, 민간복권세 납부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의 지연납부이자 가산되며, 납부기한 후 7일이 경과하는 경우 추가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53)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Private-lotteries-duty/Conducting-private-lotteries/What-is-Private-Lotteries-Duty/>, 검색일자: 2020. 10. 14.

254)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Private-lotteries-duty/Filing-private-lotteries-duty/How-to-Compute-Private-Lotteries-Duty/>, 검색일자: 2020. 10. 14.

255)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Private-lotteries-duty/Filing-private-lotteries-duty/Filing-Form-PL-R-and-Other-Documents/-/When-to-File/>, 검색일자: 2020. 10. 14.

## 다. 카지노세

### 1) 과세대상<sup>256)</sup>

싱가포르에서 카지노는 마리나베이 리조트(Marina Bay Sands) 및 센토사 리조트(Resorts World Sentosa)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카지노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카지노세를 부과한다.

### 2) 과세표준 및 세율<sup>257)</sup>

카지노세는 카지노의 총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매달 계산한다. 카지노의 총수입금액(Gross Gaming Revenue)이란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순상금(net wins)에서 카지노 운영자가 납납부하는 GST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순상금이란, 카지노 운영자가 게임에서 수취한 베타팅금액에서 승자에게 지급한 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프리미엄 참가자로부터 수취한 총수입금액은 5% 세율로 과세하며, 일반 참가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15% 세율로 과세한다. 여기에서 프리미엄 참가자란, 카지노 운영자에게 최소 SGD 10만 이상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겨둔 참가자를 의미한다.

### 3) 신고 및 납부<sup>258)</sup>

카지노 운영자는 매달 말일 끝난 이후 15일 이내에 카지노세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프리미엄 참가자 및 일반 참가자로부터 수취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SGD 1만에 달하는 지연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의 가산금과 대상 카지노세의 50%에 해당하는 지연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56)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Casino-tax/>, 검색일자: 2020. 10. 14.

257)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Casino-tax/Computing-Casino-Tax-Gross-Gaming-Revenue-Casino-Tax-Rates-/>, 검색일자: 2020. 10. 14.

258)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Casino-tax/Filing-and-Paying-Casino-Tax/>, 검색일자: 2020. 10. 14.

##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 I. 외국인 투자정책
- II. 진출 확대 방안



## 제3장 |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 I 외국인 투자정책

#### 1. 외국인 투자 환경 및 혜택

##### 가. 투자 환경<sup>259)</sup>

기업 친화적인 정책 지원과 높은 정치적 안정성 및 청렴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세계 우수 기업들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매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등에서 세계 최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sup>260)</sup> 전 세계 선진국 대비 낮은 법인세율(17%)은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미국, 중국, 네덜란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애초에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설립 및 투자와 관련하여 현지의 회사법, 소득세법, 노동법, 산업 관련 법 등을 따른다. 한편, 공익 및 공공성과 관련된 부문(예: 전기·가스·상수도, 전자통신시스템, 무기제조업 등)의 투자는 제한하고 있으며, 신문사, 항공사, 해운회사의 외국인 지분소유도 통제하고 있다.

259) KOTRA 해외시장뉴스, 싱가포르 투자 동향 및 싱가포르의 대한 투자 전망,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1723>, 검색일자: 2020. 10. 7.;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 투자환경,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14>, 검색일자: 2020. 10. 7.

260)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2020.: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2019.; The Heritage Foundation - 2020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s://www.heritage.org/index/ranking>, 검색일자: 2020. 10. 19.; Transparency International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9/results>, 검색일자: 2020. 10. 19.

나. 조세 혜택<sup>261)</sup>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혜택은 경제발전특례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EEIA)<sup>262)</sup> 및 소득세법을 법적 근거로 한다. 조세 혜택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과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협상 과정에서는 주로 총사업비용, 투자금액, 고용창출, 사업 성격(마케팅, 지역본부, R&D, 제조 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조세 혜택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으로부터 조세 혜택이 적용되는 사업 개시 시점부터 적용되며, 경제개발청은 청구된 비용이 사전에 협의된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 후 환급해준다. 조세 혜택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사전에 이행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경제개발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완료 시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대표적인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 시장개척자 특례제도(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PC), 개발 및 확대 특례제도(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DEI)<sup>263)</sup>

싱가포르의 경제 및 글로벌 선도 산업 역량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의 협상을 거쳐 법인세 면제 또는 5%에서 10%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기간은 기업의 추가 계획 이행 책무 또는 약정에 따라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술, 전문성 등을 포함한 고용 창출
- 총사업 지출의 경제 기여 정도
- 기술 및 노하우 등의 역량 강화
- 제조업의 경우 플랜트, 건물, 자산 등의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이행

261)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 투자환경,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14>, 검색일자: 2020. 10. 7.

262)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https://sso.agc.gov.sg/Act/EEIRITA1967>

263) EDB, 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and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https://www.edb.gov.sg/en/how-we-help/incentives-and-schemes.html>, 검색일자: 2020. 10. 7.;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Section 3.

2) 금융·재무센터 특례제도(Finance & Treasury Centre Incentive, FTC)<sup>264)</sup>

싱가포르에 금융·재무센터(FTC)를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재무센터의 특정 소득에 대하여 8%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있으며, 국외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기간은 기업의 추가 계획 이행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특례제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금융·재무센터의 핵심 활동(현금 및 유동성 관리, 기업 재무 자문 서비스, 이자율, 환율 및 신용위험 관리, 기업 전반의 사업 계획 및 투자 분석) 수행 여부
- 기술, 전문지식, 연공서열 등을 포함한 고용 창출
- 총사업 지출의 경제 기여 정도
- 기술 및 노하우 등의 역량 강화
-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재무센터 운영 규모
- 전문 서비스 및 금융 부문에서의 잠재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3) 지적재산권 개발 특례제도(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Incentive, IDI)<sup>265)</sup>

연구개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IP)의 이용 및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적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 또는 10%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세제 혜택 기간은 처음 신청 시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에는 해당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기여나 글로벌 선도 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에 상당한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지원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자산 투자 또는 총사업 지출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64) Income Tax Act Section 43G.; EDB, Finance & Treasury Centre(FTC) Incentive, <https://www.edb.gov.sg/en/how-we-help/incentives-and-schemes.html>, 검색일자: 2020. 10. 7.

265) EDB, Intellectual Property(IP) Development Incentive(IDI), <https://www.edb.gov.sg/en/how-we-help/incentives-and-schemes.html>, 검색일자: 2020. 10. 7.

4) 국제화를 위한 이중세액공제(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Scheme, DTDi)<sup>266)</sup>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시장 진출 및 개발활동과 관련한 적격활동 지출액에 대하여 2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사업 개발 관련 출장
- 해외 투자 연구 관련 출장
- 해외 무역 박람회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또는 싱가포르 관광청(STB)으로부터 승인받은 현지 무역박람회

적격활동 비용에 대하여 SGD 15만까지 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하며,<sup>267)</sup>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기업청에 이중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글로벌 트레이더 프로그램(Global Trader Programme, GTP)<sup>268)</sup>

글로벌 트레이더 프로그램(GTP) 승인 기업은 3년 또는 5년 동안의 거래 소득에 대하여 5% 또는 10%의 법인세율을 인하받을 수 있다. 적격 거래 활동을 통한 수익은 무역 거래 및 중개 수익, 파생상품 거래 수익, 인수·합병 관련 자문료, 금융 수익 등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싱가포르 내에서 핵심 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고용 및 현지 지출 등의 양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현지 은행, 금융 인프라, 물류, 중재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인력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266) 싱가포르 국세청,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Scheme, <https://www.iras.gov.sg/iras/home/Schemes/Businesses/Double-Tax-Deduction-for-Internationalisation-Scheme/>, 검색일자: 2020. 10. 19;

267)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적격 비용에 한함.

268) Enterprise Singapore, Global Trader Program, <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tax-incentives/tax-incentives/global-trader-programme>, 검색일자: 2020. 10. 7.;

Income Tax Act Section 43P.;

2021년 3월 31일 이후로는 해당 법안에 따른 승인이 허용되지 않음.

## 다. 투자 지원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각각 EDBI와 SEEDS Capital 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기금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소비자, 신형 기술, 의료, ICT 및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 Startup SG Equity<sup>269)</sup>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싱가포르 정부와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공동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5년 미만의 유한 회사
- SGD 5만 이상의 납입 자본금
- 제품 또는 서비스가 혁신적인 지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음
-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장성 및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독립적인 제3의 투자자가 있음
- 법규나 공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음
- 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 회사가 아님

### 2) Startup SG Tech<sup>270)</sup>

스타트업 기업의 독점 기술에 대한 솔루션 개발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독점 기술에 대한 개념증명(Proof-Of-Concept) 또는 가치증명(Proof-Of-Value) 프로젝트와 관련한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sup>271)</sup> 신청 자격은 5년 미만의 기업으로 지분의 30% 이상이 현지 투자자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이

269) Startup SG, Startup SG Equity, <https://www.startupsg.gov.sg/programmes/4895/startup-sg-equity>, 검색 일자: 2020. 10. 19.

270) Startup SG, Startup SG Tech, <https://www.startupsg.gov.sg/programmes/4897/startup-sg-tech>, 검색 일자: 2020. 10. 19.

271) 독점 기술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또는 공중보건의기관에서 파생될 수 있는 프로세스, 상호 관련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조합을 의미함. 독점 기술은 지적재산 또는 지적자산을 포함해야 하며, 이 기술은 개인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 소유해야 함.

SGD 1억 이하이거나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핵심 기업 활동이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젝트는 다음 영역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 첨단제조기술 / 로봇공학
- 생명과학 및 의료
- 청정기술
- 정보 통신 기술
- 새로운 산업
- 정밀 엔지니어링
- 운송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서비스
- 식품과학 및 기술

### 3) 스타트업을 위한 특별 상황 기금(Special Situation Fund for Startups, SSFS)<sup>272)</sup>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특별 기금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 승인 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EDBI 및 SEEDS Capital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다. 신청 자격은 10년 이하의 유한회사로서, 본사 및 핵심 부가가치 활동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혁신적인 지적재산 콘텐츠를 소유함
- 제품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입증 가능함
- 글로벌 시장으로의 잠재적 확장성을 입증 가능함
- 유료 고객 또는 파트너를 확보함
- 코로나19 이전에 상당한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
- 경영진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및 비즈니스 통찰력을 갖추며, 투자자의 가이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272) Enterprise Singapore, Special Situation fund for Startups(SSFS), <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investments/investments/special-situation-fund-for-startups>, 검색일자: 2020. 10. 7.

#### 4) 기업 개발 보조금(Enterprise Development Grant, EDG)<sup>273)</sup>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목표로 기업의 핵심 기능(예: 사업 전략 개발, 재무 관리, 인적자원개발, 고객 서비스,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개발), 혁신 및 생산성(예: 자동화 기술, 사업 프로세스 재설계, 혁신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장 접근성(예: 인수 합병, 해외 마케팅, 파일럿 프로젝트 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한다. EDG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에서 등록 및 운영되는 사업체임
- 최소 30%의 현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재정적으로 프로젝트의 시작 및 완료가 가능한 상황임

## 2. 투자 진출 형태 및 절차<sup>274)</sup>

### 가. 투자 진출 형태

싱가포르는 기업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이 적으며 기업 설립 및 운영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및 사업 영역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은 낮은 법인세율(17%)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싱가포르 진출 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이용되며, 개인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조합, 합자회사 등 법적으로 구분되는 네 가지의 법인 형태 모두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은 싱가포르 진출 시 유한책임회사 혹은 지사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고용비자 소지자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개인회사를 설립하기가 어렵고 사업 실패 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르는 데 반해 유한책임회사는 개인이 100% 주주로 설립해 고용비자를 받거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3) Enterprise Singapore, Enterprise Development Grant(EDG), <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grants/for-local-companies/enterprise-development-grant/overview>, 검색일자: 2020. 10. 7.

274)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 투자진출방식,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17>, 검색일자: 2020. 10. 7.

## 나. 투자 절차

싱가포르에서의 일반적인 투자진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투자 준비(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 ② 투자 예비상담 및 허가 신청(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인센티브 확인)
- ③ 기업명칭 온라인 신청
- ④ 회사설립(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 ⑤ 제출된 서류 심사, 등록 허가
- ⑥ 회사 관련 정보 컴퓨터 시스템 입력
- ⑦ 회사설립증명서(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싱가포르의 회사등록 절차는 크게 회사명(상호)의 승인과 회사등록신청의 두 단계로 나뉘며, 모든 절차는 싱가포르의 회계기업관리청(ACR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BizFile ([www.bizfile.gov.sg](http://www.bizfile.gov.sg))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사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회사등록 이후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상호 및 주소 등의 각종 변경사항 등록 등도 Bizfile을 통해 이루어진다.

## II 진출 확대 방안<sup>275)</sup>

### 1. 시장 및 소비자 특성

#### 가. 시장 특성

##### 1) 개방형 경제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해왔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주류, 담배 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등에 무관세 정책을 시행,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사업하기 좋은 환경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는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정책, 친기업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싱가포르 내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7%의 낮은 법인세율,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7,000여 개의 다국적기업 60% 이상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 3) 낮은 문화적 진입장벽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및 기타(3.2%)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불교(33.3%), 기독교(18.3%), 무교(17.0%), 이슬람교(14.7%), 도교(10.9%), 힌두교(5.1%) 및 기타(0.7%)로 다양한 형태이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30%(영주권자 포함할 경우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될 정도로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문화적 진입장벽이 낮다. 또한 싱가포르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국적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75) 이하 본 장의 내용은 KOTRA의 『2020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및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23>)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나. 소비자 특성

### 1) 소비 인구<sup>276)</sup>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인구는 570만 3,6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6만 4,900명(1.2%) 증가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세 이상~64세 이하 소비인구가 2019년 기준 65%에 달하여 안정적인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2019년 싱가포르 여행 및 관광업 수입이 작년 대비 2.8% 상승해 277억미국달러에 달하고, 국제방문객이 싱가포르 인구수의 약 3배인 1,910만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객의 소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GDP는 2019년 기준 6만 3,987미국달러이다. 이는 세계금융기구(IMF)에서 발표한 국가별 1인당 명목GDP 중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소비자 성향 및 관습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부진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주춤한 반면 온라인 유통망(e-commerce) 시장이 급속 성장 중이다.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온라인 시장 소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트렌드와 함께 제품의 지속가능성 및 브랜드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싱가포르 소비자 또한 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트랜스지방 사용 규제, 설탕세 등의 도입과 함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싱가포르인들은 제품 가격에 대단히 민감한데, 이는 싱가포르가 전통적으로 중계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 소비자 구매 선호도

싱가포르는 일찍이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하여 해외 브랜드의 싱가포르 시장 진입이 잦았

276) 싱가포르 통계청, <https://www.singstat.gov.sg>(2019년 기준, 2020년 최신 자료).

다. 이에 싱가포르인들은 외국 브랜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데, 일류 브랜드는 비싼 가격을 주고 기꺼이 사지만 인지도가 없는 제품은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 다. 진출 시 유의사항

〈표 Ⅲ-1〉 국내기업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명확화	대금결제 관련 변경요청에 대한 수·출입자 간 유선 확인 필수
<p>(현황) End user 미입금 사유로 대금 지급 거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수입자(중계무역자)가 물품을 한국에서 멕시코 End-user에게 선적하게 한 후, 멕시코 수입자의 입금지연을 사유로 대금 미지급</li> <li>- 계약서(P/O)상에 대금 지급 의무가 멕시코 수입자에게 있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거절</li> </ul> <p>(대응전략) - 계약서(P/O등)에 대금 지급 의무 대상 명시화 및 사고 대비 무역보험 가입</p>	<p>(현황) 대금결제 계좌 변경요청 E-mail 수취 후 송금하였으나, 해킹된 메일로 밝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수입자 A는 수출자 B로부터 대금결제 계좌를 변경해달라는 E-mail 수취 후 변경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해킹에 따른 사기로 밝혀짐</li> <li>- 수입자는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던 이메일이라 별다른 의심이나 유선 확인 없이 송금 진행</li> </ul> <p>(대응전략) - 대금결제 관련 변경사항은 수출입자가 유선상으로 상호 확인할 필요. 약정 및 사고 대비 무역보험 가입</p>

자료: KOTRA의 『2020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및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0&commItemSn=4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싱가포르 시장 분석 및 전략 도출

### 가. 싱가포르 시장 SWOT 분석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허브로 부상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나, 작은 내수시장, 높은 물가, 치열한 경쟁, 인력관리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표 III-2〉 싱가포르 시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개방경제 시장</li> <li>• 정치·사회적 안정성</li> <li>• 지리적 이점(물류 허브)</li> <li>• 기업하기 좋은 환경</li> <li>• 선진화된 인프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내수 시장</li> <li>• 저출산·고령화</li> <li>• 높은 물가, 비싼 임대료 및 인건비</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시장 진출의 관문</li> <li>• 정부의 양자·다자 FTA 적극 참여</li> <li>• 정부 주도산업 육성 정책</li> <li>• 고소득층 인구 증가 전망</li> <li>• 긍정적 한류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li> <li>• 외국 인력에 대한 규제</li> <li>• 높은 대외의존도</li> <li>• 지속가능성 정책 도입 증가</li> <li>• 소비세(GST) 인상 예정</li> </ul>

자료: KOTRA, 『2020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2020, p. 26.

### 나.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 공략

##### 가) 시장 여건

2018년 싱가포르 총인구 중 14.4%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 보건부는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장기요양등급의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될 위험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싱가포르 정부는 ‘헬스케어 2020 마스터플랜’을 통해 의료시설 확대, 공공분야 의료 전문

가 육성, 의료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 지출이 1인당 평균 3천미국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 대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원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총 61억싱가포르 달러가 쓰일 계획이며, 1950년대생을 일컫는 메르데카 세대(Merdeka Generation) 약 50만 명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저축계좌 메디세이브(Medisave)에 매년 2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의료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다)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개인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어 싱가포르 내 보건의료 시장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진출 희망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노인을 대상으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대상 의료상품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이 유망하다. 로얄필립스가 발표한 미래보건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의학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률이 28%로 조사대상 15개국 중 중국(45%)과 사우디아라비아(34%)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으며, 이 외에도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각종 디지털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높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이 유망하다. 향후에도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발,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등의 산업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예의 주시

#### 가) 시장 여건

싱가포르 건설/인프라 산업은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건설 수요로 향후 10년간 평균 성장률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400만싱가포르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2021년에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싱가포르 건설업 분야에서 0.5%의 저성장이 예상되

나, 창이국제공항 제5터미널과 MRT남북선 등 대형 건설프로젝트 진행으로 장기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개발 계획은 창이국제공항 제5터미널 건설과 창이이스트 산업지구(Changi East Industrial Zone, CEIZ) 구축, Thomson-East Coast Line(TEL)의 지하철 노선 확대 등으로 공항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남방 해안 프로젝트(Greater Southern Waterfront)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는 센토사섬과 브라니섬을 총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대규모 관광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이며, 공사 첫 단계가 2022년 완료될 전망이다. 센토사와 주변 조경 조성을 위해 약 9천만싱가포르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 다)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정부 조달 프로젝트를 예의 주시하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간척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토의 총면적을 76,600헥타르(766km<sup>2</sup>)로 확대할 계획(현재 국토면적 722.5km<sup>2</sup>)이므로 토지 매립 등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표한 육상교통 마스터플랜 2040에 따르면, Jurong Regional 지하철노선과 Cross-Island 지하철노선의 추가로 기존 229km의 노선을 2040년까지 360km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하철 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철 차체 및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까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건강' 키워드로 소비재 시장 공략

#### 가) 시장 여건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2013년부터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최대 2%까지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다.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는 6개의 현지 식품제조업체 및 슈퍼마켓은 정부의 트랜스지방 규제 정책(2021년 실시 예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규제 도입 기한 1년 전인 2020년까지 트랜스지방 함유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 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싱가포르 보건부는 2021년까지 트랜스지방의 주요 원재료인 정제가공유지(PHOs)를 함유

한 모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 규제는 싱가포르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방침으로 수입제품 및 가공식품 또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당뇨병의 발병을 줄이기 위해 음료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규제하는 설탕세의 도입도 고려 중에 있다. 싱가포르 음료 제조업체 7개사는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12% 이하로 낮추기로 약속하였다.

#### 다)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식품 관련 각종 규제·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각종 식품 관련 규제가 도입되며, 맛과 영양소를 고루 갖춘 웰빙 이미지의 한식을 찾는 싱가포르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식품 생산 시 성분에 유의하여 싱가포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천연 화장품, 생활필수품 등 각종 소비재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 이외에도 건강과 셀프케어에 관심이 많은 싱가포르 소비자들에게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제품과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싱가포르 온라인 시장의 잠재성을 감안하여 현지 대표 온라인 유통망 입점을 통해 진출하면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친환경 선박기자재 수요 기대

#### 가) 시장 여건

싱가포르항은 다국적 선사, 쉽 매니지먼트사, 기자재 중개업체 등 조선해양 산업군과 관련하여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상주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해양 산업이 유가 회복으로 인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항은 2018년 전 세계 최고의 물류 환적량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기항 선박 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IMO 해양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조선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수리 목적으로 기항한 선박 수는 3,762척(2016)에서 3,507척(2017)으로 감소하였으나, 시장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여 2017년 싱가포르 선박 수리 규모는 56억싱가포르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1.4% 증가하였다.

싱가포르 조선해양 산업 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활용이 가속되고 있다. 현재 Keppel Offshore & Marine(Keppel O&M)는 싱가포르 항만청으로부터 약 150만싱가포르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싱가포르의 첫 자율운항선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65톤 예인선은 2020년 4분기에 첫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업은 현지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M1과 협업하여 4.5G를 활용한 선박-육상 간 해상 통신 지연시간(latency) 최적화 방안도 개발 중에 있다.

다)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환경규제로 인해 싱가포르의 한국 선박부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IMO 황산화물 규제로 인해 LNG 엔진 개조 및 스크리버 장착 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며, 선주사 비용부담 증가로 일본, 독일의 비싼 제품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중국 및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싱가포르 선박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현지 선주사 및 조선소 대상 사업 설명회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 3. 유관기관

〈표 III-3〉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	연락처	주소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 <a href="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http://overseas.mofa.go.kr/sg-ko/index.do</a> )	+65-6256-188	47 Scotts Road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싱가포르 한인회 ( <a href="http://www.koreansingapore.org">http://www.koreansingapore.org</a> )	+65-6299-8966	71B TANJONG PAGAR ROAD #03-01 SINGAPORE 088492&nbsp;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 <a href="http://www.korchamsg.org/">http://www.korchamsg.org/</a> )	+65-6220-2220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 <a href="https://www.kotra.or.kr/KBC/singapore/KTMUI010M.html">https://www.kotra.or.kr/KBC/singapore/KTMUI010M.html</a> )	+65-6426-7200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1, Singapore 038987
한국 KEB 하나은행 지점 ( <a href="https://global.1qbank.com/lounge/singapore/et/main.html">https://global.1qbank.com/lounge/singapore/et/main.html</a> )	+65-6536-1633	30 Cecil Street #24-03/08 Prudential Tower Singapore 049712
한국춘 ( <a href="http://www.hankookchon.com/main">http://www.hankookchon.com/main</a> )	+65-6738-5760	#03-18,150 Orchard Road, 238841

## 참고문헌

### 제1장 총론

세계법제정보센터, 『싱가포르의 법률체계』, 2016.

Andrew Halkyard and Stephen Phua Lye Huat, “Common law heritage and statutory diversion – Taxation of Income in Singapore and Hongkong,”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aculty of Law), 2007, pp. 1~10.

#### [웹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kotra.or.kr>

외교부, <http://www.mofa.go.kr>

#### [웹사이트 자료원]

Hawksford - Guide Me Singapore, <https://www.guidemesingapore.com>

Histry SG, <https://eresources.nlb.gov.sg>

### 제2장 주요 세법

전병hil·정재호·송은주·마정화, 『주요국의 조세제도 - 싱가포르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 34.

Wolters Kluwer Editorial Staff Publication, *Global Master Tax & Business Guide*, CCH Incorporated and its affiliates - Wolters Kluwer, 2018, pp. 765~777.

Tan H. Teck, Jimmy Oed,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20/21*, Wolters Kluwer, 2020, pp. 708~709.

Congress of the Philippines, “Revised Corporation Code - REPUBLIC ACT No. 11232,” Manila Bulletin and Business Mirror, 2019.

#### [법률]

Singapore Income Tax Act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ct

**[웹사이트]**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index.asp>

Dollars and Sense, <https://dollarsandsense.sg>

**[웹사이트 자료원]**

IBFD, Country Tax Guides, Singapore- Tax Risk Managemen,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rmtp\\_sg\\_chaphead](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rmtp_sg_chaphead)

IBFD, Country Tax Guides - Singapore- Corporate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g)

IBFD, Singapor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refresh=1605163601477#ita\\_sg\\_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g_s_1.&refresh=1605163601477#ita_sg_s_1)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g>

싱가포르 국세청(IRAS), <https://www.iras.gov.sg>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KOTRA, 『2020 국별 진출전략 싱가포르』, 2020.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2020.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2019.

**[법률]**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Income Tax Act Section

**[웹사이트]**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

싱가포르 통계청, <https://www.singstat.gov.sg>

EDB, <https://www.edb.gov.sg/en>

Enterprise Singapore, <https://www.enterprisesg.gov.sg>

Startup SG, <https://www.startupsg.gov.sg>

The Heritage Foundation - 2020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s://www.heritage.org/index/ranki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9/results>



## 신흥국의 세정연구 싱가포르

---

발행	2020년 12월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TEL: (044)414-2114(代)
홈페이지	<a href="http://www.kipf.re.kr">www.kipf.re.kr</a>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주)프리비
I S B N	979-11-6655-011-9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